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8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CONTENTS

I EU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 | | |
|-------------|----|
| 1. 주요 개요 | 06 |
| 2. 제도 및 절차 | 08 |
| 3. 사례 및 시사점 | 39 |

II 터키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 | | |
|-------------|----|
| 1. 주요 개요 | 44 |
| 2. 제도 및 절차 | 46 |
| 3. 사례 및 시사점 | 65 |

III 일본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 | | |
|-------------|----|
| 1. 주요 개요 | 70 |
| 2. 제도 및 절차 | 72 |
| 3. 사례 및 시사점 | 92 |



IV 베트남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 | | |
|-------------|-----|
| 1. 주요 개요 | 98 |
| 2. 제도 및 절차 | 100 |
| 3. 사례 및 시사점 | 116 |

V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 | | |
|-------------|-----|
| 1. 주요 개요 | 122 |
| 2. 제도 및 절차 | 124 |
| 3. 사례 및 시사점 | 140 |

VI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 | | |
|-------------|-----|
| 1. 주요 개요 | 144 |
| 2. 제도 및 절차 | 146 |
| 3. 사례 및 시사점 | 155 |



I

EU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개요
 2. 제도 및 절차
 3. 사례 및 시사점
- 

1

주요 개요

EU는 총 2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 1위 경제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무역구제조치 활용도는 높지 않다. 특히 FTA 체결국들에 대해서는 무역구제조치를 거의 발동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 규제 및 조사중인 수입규제 건수는 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6건으로, 양국 간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EU와 한국 양국은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WTO-plus Rules¹을 다수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1995년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최근 22년 동안 총 502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WTO 출범 이후 2006년까지는 반덤핑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조사개시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EU의 산업별 제소현황을 살펴보면 비금속 및 관련제품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화학제품이다. 상계관세의 경우 22년 동안 79건의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이 중 38건(48.1%)에 대해서 상계관세조치를 취했다.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WTO 출범 이후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총 5건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이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경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조치가 부과되는 반면, 세이프가드는 해당품목에 대한 EU의 수입 전부에 부과되므로, 그 정치적, 경제적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¹ 한-EU 양국은 반덤핑조사 개시 전 15일 전까지 상대국에게 서면통보 해야 하며, 최소부과원칙 도입 및 반 덤핑관세 부과 결정 시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도표] 한-EU 간 도입한 WTO-plus 규정들

통지	협의	영어서문	제로잉	미소마진	누적평가	가격이행약속	공공이익	최소부과	재심종료 후 조사제한
○	○	○	-	○	○	-	○	○	○

출처: 한국의 기타결 FTA의 반덤핑 규정 비교 및 분석, KIEP 2014

도표 EU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5~2017)

(단위: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 계
반덤핑	33	25	41	22	65	32	28	20	7	30	24	35	9	19	15	15	17	13	4	14	11	14	9	502
상 계 관 세	-	1	4	8	19	-	6	3	1	-	3	1	-	2	6	3	4	6	5	2	2	1	2	79
세이프 가 드	-	-	-	-	-	-	-	1	1	1	1	-	-	-	-	1	-	-	-	-	-	-	-	5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EU의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 대상국은 중국으로, 전체 502건 중 132건, 26.3%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인도 38건(7.6%)에 이어 31건(6.2%)의 조사가 개시되었다.

도표 조사대상국별 EU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7.12)

(단위: 건)

국 가	중국	인도	한국	대만	러시아	태국	말레이 시아	인도네 시아	미국	터키	우크라 이나	기타	총계
건 수	132	38	31	27	25	21	17	16	16	16	16	147	502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도표 EU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번호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규제시작일
1	철강제품(Steel Products)	SG (조사 중)	2018-03-26	
2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AD (규제 중)	2016-02-18	2017-05-04
3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AD (규제 중)	2014-08-14	2015-10-29
4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 우회덤핑	AD (규제 중)	2009-08-12	2010-05-11
5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 우회덤핑	AD (규제 중)	2006-04-20	2007-01-19
6	철강제 관열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AD (규제 중)	2001-06-01	2002-08-04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KITA 종합

2

제도 및 절차

가) EU 국내법

EU의 무역구제제도는 WTO 규범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WTO 회원국들과 유사한 무역구제제도를 지니고 있으나,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덤핑 및 보조금의 존재가 입증되고, EU 산업의 피해 및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EU 공동체의 이익(EU public interest)에 반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공동체이익심사라고 한다. 만약 조치가 공동체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정치나 환경적 요소는 고려되지 않는다. 둘째, EU는 필요 수준 이상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덤핑마진 및 보조금 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시행하고 있다.

① 반덤핑

EU(당시 EC) 최초의 반덤핑규약은 1968년 4월 채택된 “非유럽공동체 국가의 덤핑과 보조금 제재를 위한 규칙(Council Regulation on Protection Against Dumping or the Granting of Bounties or Subsidies by Countri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입법안으로,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 반덤핑규칙인 (EU) 2017/2321과 2018/825에 이르게 되었다. EU 반덤핑법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기존의 기본규칙은 이사회규칙(Council Regulation (EC) 1225/2009)으로, 이는 1996년 3월 6일 발효된 이사회규칙 (EC) 384/96를 기반으로 입법(codify)된 것인데, 이후 기본규칙의 명확성(clarity)과 합리성(rationality)을 위해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② 상계관세

EU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까지 비회원국에 대한 반덤핑조사와 보조금 조사를 함께 규율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EU는 두 규칙을 분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WTO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협정에 규정된 제 기준에 비추어 그 절차를 명료하게 하고, 조치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반덤핑규칙 및 보조금규칙으로 분리하였다².

² 채형복, “EU 반덤핑법”, 2009, pg33.

보조금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법적 방향을 제시한 최초 이사회규칙은 (EC) 3284/94으로, 1997년에 이사회규칙 (EC) 2026/97로 대체된 뒤 EU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후 2002년의 (EC) 1973/2002와 2004년의 (EC) 461/2004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안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최종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에는 (EC) 597/2009로 입법되었는데, 최근 반덤핑규칙 (EU) 2017/2321과 2018/825에서 기존 상계관세규칙 (EU) 2016/1037을 일부 개정하였다.

③ 세이프가드

EU의 세이프가드조치는 1994년 12월 발효된 이사회규칙 (EC) 3285/94를 법적 근거로 한다.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09년도에는 (EC) 260/2009로 입법되었는데, 최근에는 기존 세이프가드규정이 (EU) 2015/478로 개정되었다.

나) 유관기관

①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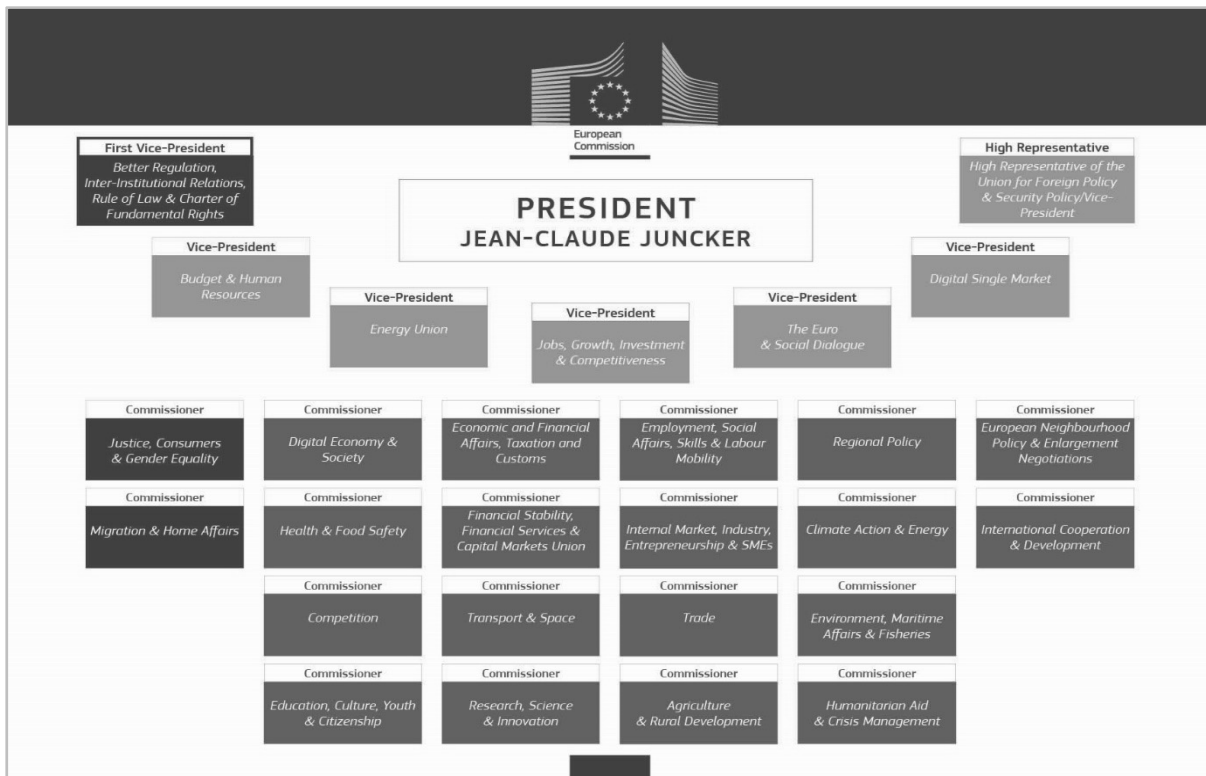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기구로써 유럽연합의 공동체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EU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자국 정부나 이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이사회와 권한에 대해서도 공동체적 균형을 형성한다. 위원회는 상당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약을 수호하고 이사회에 입법을 제안하며 이사회와 결정을 수행하고 집행한다. 이 외에도 각종 정책을 관리하고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실현을 위한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2004년 5월까지 위원회는 총 20명의 위원들로 구성³되어 있었으나 이후 니스 조약이 발효되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2007년 1월부터는 총 2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직원은 약 34,000명으로 이들은 지원부서와 총 49개의 총국(Directorates-General, 이하 DG)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 무역구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통상총국(DG Trade)이다. 통상총국은 통상담당 집행위원 산하에 통상총국장과 부총국장, 그리고 8개 국(Directorate)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H국(Directorate H)의 “무역구제(Trade Defence)” 부서에서 무역구제조치 업무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무역구제조치법 시행에 대해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³ 규모가 큰 회원국들(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UK)에서는 2명의 집행위원을 임명하고, 나머지 규모가 작은 회원국들(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에서는 1명의 집행위원이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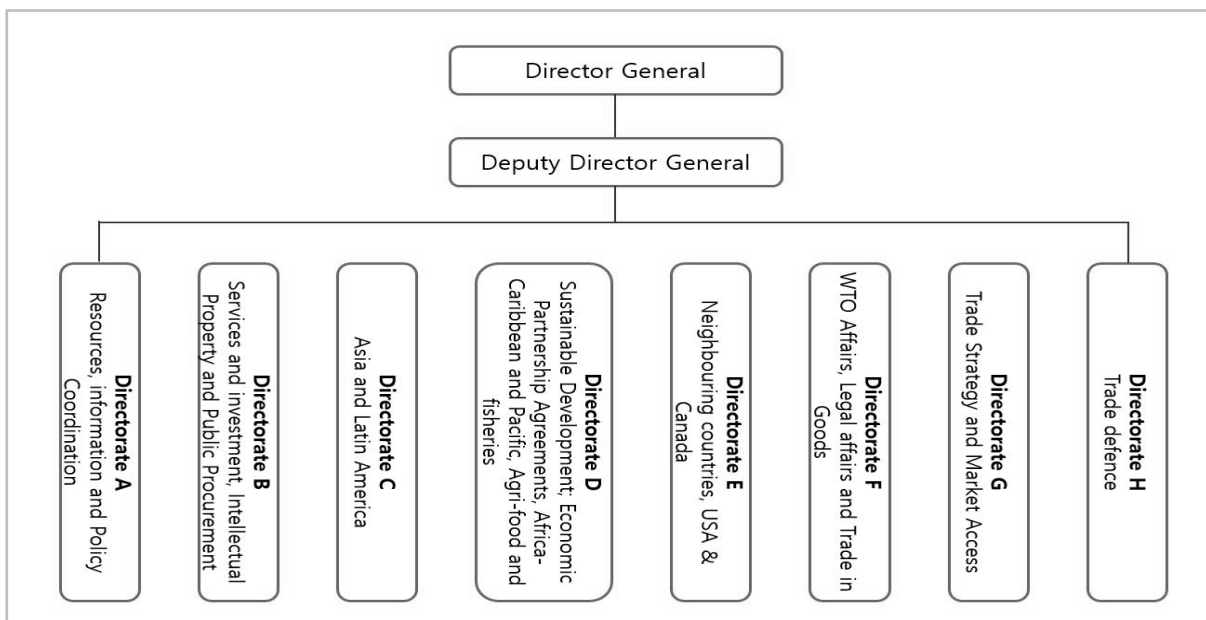
-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및 종료
- ✓ 잠정조치 부과
- ✓ 가격약속 수락
- ✓ 최종판정에 대한 권고

도표 집행위원회 조직도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nfo/index_en)

도표 통상총국 조직도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nfo/index_en)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② 이사회(The Council) 또는 각료 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이사회는 EU의 주요 입법 기관으로 중대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이다.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1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자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집행위원회와는 다르게 회원 각국을 대표하고 자국의 국익을 대변한다. 이사회의 주요 역할은 EU의 일반적인 정책 방향과 우선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며 회원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EU 전체의 이익실현을 추구한다. 각 국가마다 누구를 이사회에 파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진다.

반덤핑과 상계관세조치에 있어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종적인 관세를 부과한다. 이사회는 위원회가 부과한 잠정관세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위원회의 제안을 따른다. EU의 반덤핑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 협의된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이사회는 보통 단순 과반수(by simple majority)에 의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⁴, 이들의 상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 최종적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 ✓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및 폐지
- ✓ 무역장벽조치의 채택
- ✓ 이사회규칙 제정 및 수정
- ✓ 잠정관세의 확정징수권한

③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또는 반덤핑위원회

“반덤핑위원회”로 널리 알려진 자문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특정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함께 협의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각국의 대표와 집행위원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⁵, 의장이 소집할 때 회합한다. 특히 반덤핑절차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⁶.

- ✓ 덤핑의 존재와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법
- ✓ 피해의 존재 및 정도
- ✓ 덤핑된 수입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 ✓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그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

사실상 자문위원회의 견해는 단지 자문적이나 만약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자문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위해 이사회에 환송된다는 점에서 자문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부당한 결정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⁷.

⁴ 기본규칙 제9.4조.

⁵ EU Regulation 182/2011, 제3조.

⁶ 기본규칙 제15.4조.

⁷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trade_import2/front/coutrend/tradehelpCouEu.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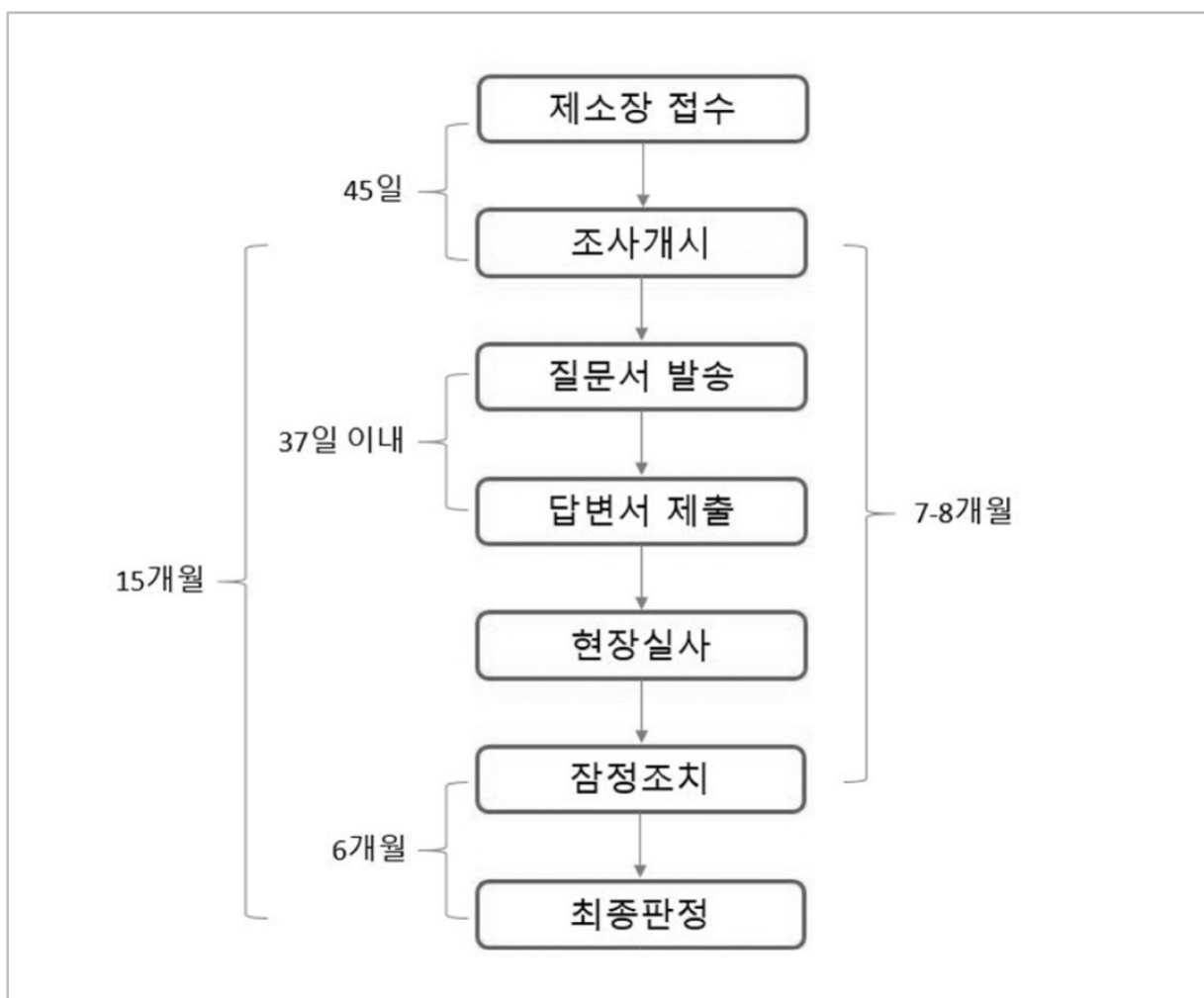
④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입법 및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5년마다 국민들이 직접선거(direct elections)를 통해 의원들을 선출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에너지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 입법할 뿐만 아니라 제3국과 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다. 더불어 협의된 협정이 유럽연합 내부 정책 및 규칙과 양립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함께 책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무역 협정을 거부할 수 있는 큰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⁸.

다) 반덤핑 조사절차

미국이 산업피해 조사 보고서와 덤핑사실 조사 보고서를 분리하여 각각 공시하는 데 반해, 나머지 국가들은 최종보고서 하나에 이 둘을 모두 다루고 있다. EU 역시 덤핑 조사와 산업피해 조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통합된 절차를 따른다.

도표 반덤핑 조사절차



⁸ Van Bael & Bellis, "EU Anti-Dumping and Other Trade Defence Instruments", pg 9.

⑤ 제소장 접수

반덤핑 조사신청서('Complaint', 공식 문서상에는 'lodge a complaint'라는 표현으로 '조사신청'을 표현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제소장 Petition' 혹은 '신청서 Application'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함)는 개인, 법인, 또는 유럽연합 역내 산업을 대표하는 조합에 의해 제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회, 또는 공동체 생산자 연합에 의해 제출된다. 제소장에는 덤핑의 증거와 산업의 피해, 그리고 덤핑된 수입품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 제소장을 접수하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
- ✓ 제품, 수출국, 생산자 및 수입자
- ✓ 덤핑마진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생산비, 수출가격 또는 재판매 가격)
- ✓ 피해의 사실 (덤핑 제품의 수입량 및 유럽연합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소장은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에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개 집행위원회로 제출한다. 집행위원회는 덤핑이나 피해 혹은 위협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와 함께 아래의 내용에 대해 협의한다.

- ✓ 덤핑의 존재 및 덤핑마진 산정 시 허용되는 방법
- ✓ 피해의 존재 및 중요성
- ✓ 덤핑 수입품 및 피해 간 인과관계
- ✓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에 적절한 조치 및 조치의 적용방법

이 단계에서는 제소장 접수 시점이 중요하다. 이는 당해 공식 접수일로부터 반덤핑조사 개시 혹은 거절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 45일의 기한을 계산하는 기산일이 되기 때문이다. 충분한 증거를 통해 조사개시가 확정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i) 관보(Official Journal)에 조사개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ii) 수출자, 수입자, 공동체 생산자에게 동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공고 내용에는 관련상품, 관련국, 정보에 대한 개요,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간이 포함된다. 공식 관보는 EUR-Lex 홈페이지(<https://eur-lex.europa.eu/homepage.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표 EU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The screenshot displays the EUR-Lex website, which provides access to European Union law. The header includes the EUR-Lex logo and navigation links such as 'About EUR-Lex', 'Site map', 'A-Z', 'FAQ', 'Help', 'Links', 'Legal notice', 'Cookies', 'Contact', and a language selector set to 'English (en)'. Below the header, there is a search bar with a 'Quick search' prompt and a 'SEARCH' button. To the left of the search bar, there are 'Quick links' and a 'My EUR-Lex' section with options to 'Sign in' or 'Register'.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European Semester 2018: Spring Package' section with a 'Find results by' filter. This filter includes options for 'Document number', 'CELEX number', 'Year', 'Number', and 'Type' (All, Regulation, Directive, Decision, EU court case, COM and JOIN documents, SEC or SWD documents). Below the filter, there is a 'Recently published' section listing several legislative acts, including Regulations and Directives from May 2018. The right sidebar contains 'Predefined RSS feeds', 'Webservice registration', 'Online tutorials', 'Statistics', and a 'We'd like to hear from you' section with social media icons for Twitter, Facebook, and YouTube.

⑥ 조사개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공동체의 조사당국으로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덤핑과 피해에 대한 조사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조사 대상 기간은 절차 개시 이전 최소 6개월을 포함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1년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설정한다. 기존 반덤핑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조사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15개월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⁹. 규정상의 기간이 1년에서 15개월로 연장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종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아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조사가 개시된 가장 최근 순으로 게재되어 있다.

⁹ WTO 반덤핑협정 제5.10조에서는 조사기간은 특별 상황을 제외하고 1년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가 시작된 후 18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Commission and its priorities Policies, information and services

European Commission English EN Search

European Commission > Trade > Policy > Accessing markets > Trade defence

Trade

Policy

Policy making

EU position in world trade

EU and WTO

Countries and regions

Accessing markets

Goods and services

Public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Investment

Trade defence

Actions against imports into the EU

Investigations

Notices

Anti-dumping

Anti-subsidy

Safeguards

Help for SMEs

Actions against exports from the EU

Dispute settlement

Import and export rules

Trade policy and you

Investigations

Ongoing investigations Investigation search Refund decisions

Ongoing investigations are investigations that are pending a decis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or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Investigations are listed chronologically with the most recent initiation first.

RSS feed of cases newly initiated

Pages: 1 2 3

Case number	Product	Countries	Type	Initiation	History
R688	Bicycles	People's Republic of China	Expiry Review, Article 11(2)	04 June 2018	
R685	Tungsten electrodes	People's Republic of China	Expiry Review, Article 11(2)	31 May 2018	
AD593a	Biodiesel	Argentina , Indonesia	Re-opening, Article Re-opening	28 May 2018	
AD647	Steel sheet piles (hot-rolled)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l Investigation, Article 5	24 May 2018	
AD648	Solar glass	Malaysia	Initial Investigation, Article 5	23 May 2018	
R694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India	Expiry Review, Article 18	22 May 2018	
R605a	Glass fibres (certain open mesh fabrics of glass fibres)	India , People's Republic of China	Re-opening, Article Re-opening	18 May 2018	
R687	Tableware and kitchenwar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piry Review, Article 11(2)	15 May 2018	
R692	Malleable tube fittings (threaded, of cast iron)(MTF)	Thailand , People's Republic of China	Expiry Review, Article 11(2)	08 May 2018	
DC60	Seamless tubes and ...	Ukraine	Draft interim review ...	07 May 2018	

Latest news

07 Jun 2018
EU trade defence: stronger and more effective rules enter into force

31 May 2018
Malmström met Japanese Minister and US Trade Representative in Paris

31 May 2018
European Commission reacts to the US restrictions on steel and aluminium affecting the EU

18 May 2018
EU publishes list of US products for potential re-balancing duties

[More headlines in News archive](#)

Related links

Factsheet: solar panels update December 2015

Factsheet: How the European Commission investigates subsidised imports

Latest documents

31 May 2018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trade.ec.europa.eu/tdi>

위 화면의 두 번째 탭인 “Investigation search”를 선택하면 다양한 기준으로 연관 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 제품, CN Code, 국가, 무역구제제도 유형(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그 외), 조치 상태(만료/관세 부과 중/조치 부과 없이 종결), 조치 유형(종가세, 수입할당, 종량세, 추가관세), 조사상태(조사 중, 조사종료), 그리고 사건 번호 별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과거 사건 역시 동 위치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표 기준 별 검색을 통해 조사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Commission and its priorities | Policies, information and services

European Commission | English EN

Search

European Commission > Trade > Policy > Accessing markets > Trade defence

Trade

Policy

Policy making

EU position in world trade

EU and WTO

Countries and regions

Accessing markets

Goods and services

Public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Investment

Trade defence

Actions against imports into the EU

Investigations

Notices

Anti-dumping

Anti-subsidy

Safeguards

Help for SMEs

Actions against exports from the EU

Dispute settlement

Import and export rules

Trade policy and you

Investigations

Ongoing investigations | **Investigation search** | Refund decisions

Information is available here on all completed and on-going investigations. Completed investigations are investigations where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or the European Commission has already made a final determination and the investigation has either been terminated or a measure has been imposed. Ongoing investigations are investigations that are pending a decis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or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Use the search criteria to refine your search.

For investigations initiated before 2003, see the [Archive document](#)

Search criteria

Product name:

CN code:

Country:

Type of proceeding:

Measures:

Type of measure:

Status:

Case number:

Search

2003년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카이빙된 공간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Latest news

07 Jun 2018
EU trade defence: stronger and more effective rules enter into force

31 May 2018
Malmström met Japanese Minister and US Trade Representative in Paris

31 May 2018
European Commission reacts to the US restrictions on steel and aluminium affecting the EU

18 May 2018
EU publishes list of US products for potential re-balancing duties

[More headlines in News archive](#)

Related links

Factsheet: solar panels update December 2015

Factsheet: How the European Commission investigates subsidised imports

Latest documents

31 May 2018
Joint Statement on Trilateral Meeting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trade.ec.europa.eu/tdi>

⑦ 질문서 발송

조사개시 후 집행위원회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질문서(questionnaire)를 발송하는데 이는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수출자에게는 질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답변서 제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통상 수출자에게 발송되거나 수출국의 외교관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37일 기간을 채택하고 있다.

질문서는 공동체 생산자, 역외 수출자 및 생산자, 수입자에 따라 다른 유형의 질문서가 제공되는데, 대상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도 달라진다. 역외 수출자 및 생산자용 질문서는 Section A부터 N까지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와 관련된 매출액,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의 판매, 생산, 생산량, 고용, 주식, 그리고 과거 3년 간의 투자 현황이 요구된다. 조사대상제품의 생산원가 및 수익성과 같은 국내 및 유럽연합 시장에 대한 상세 판매 거래 내역도 제공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당사자들은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도표 EU 수출자용 반덤핑 질문서 구성

Section	Title	Sub Title
A	General Information 회사 일반	회사명 및 연락처, 법정대리인, 기업 정보
B	Product Description 제품	조사 범위, 제품 규격
C	Operating Statistics 기업 운영 현황	매출액, 판매수량 및 판매액, 생산 및 생산량 통계, 주식, 고용, 투자, 총 수출, 구매
D	Domestic Sales of the Like Product 동종제품의 수출국 내수 판매	유통채널 등 일반 사항, 비관계사 및 관계사에 대한 판매, 비관계사 판매와 관계사 판매의 비교
E	Export Sales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to the European Union 조사대상 제품의 수출 판매	수출 절차 및 고객 현황 등 일반 사항,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 관계사를 경유한 수출
F	Cost of Production 생산비	원가 계산 방식 등 회계제도와 정책, 조사대상제품의 생산공정 및 원가, 수출국에 관한 특수성
G	Profitability 수익성	
H	Allowances - Fair Comparison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1. 수출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할인, 환불 및 수량의 차이 ii. 운송, 보험, 취급, 적재 및 보조 비용의 차이 iii. 수출세, 관세 및 수입세 iv. 포장비 차이 v. 판매에 부여된 신용 비용의 차이 vi. 법 또는 판매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워런티, 보증, 기술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의 직접 비용 차이 vii. 외화환산 viii. 은행 수수료 ix. 기타 요인들 2. 내수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물리적 특성의 차이 ii. 수입세 또는 간접세 iii. 수량 차이에 대한 할인 및 환불 차이 iv. 무역 규모의 차이 v. 운송, 보험, 취급, 적재 및 보조 비용의 차이 vi. 포장비 차이 vii. 판매에 부여된 신용 비용의 차이 viii. 법 또는 판매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워런티, 보증, 기술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의 직접 비용 차이 ix. 고려중인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된 수수료의 차이 x. 은행 수수료 xi. 기타 요인들

Section	Title	Sub Title
I	Computerised Information Required 전산화된 정보의 제출	전산화 일반 지침, CD-R에 제출할 파일
J	Certification 확약서	
Annex I	수출자 및 역외 생산자와 특수 관계 지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질문서	수출자 및 역외 생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의 Section K~N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K	General Information 회사 일반	회사명 및 연락처, 법정대리인, 매출액, 기업 정보, 회계 제도 및 정책, 고용
L	Information Relating to Purchase Prices and Stocks 구매가격 및 주식 관련 정보	구매 - 수입 주식
M	Information Relating to Resale Prices 재판매 가격 관련 정보	일반 사항,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 특수 관계자 판매, 추가 정보
N	Certification 확약서	
Annex II	용어 사전	
Annex III	질문서 작성을 위한 지침	

⑧ 현장실사(Verification visits)¹⁰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과 해당 국가 정부가 공식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제3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검증하고 현장 실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만약 당사자가 현장실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예비 보고서 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장실사는 일반적으로 2명의 공무원이 참여하며, 필요 시에는 회원국 또는 제3국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다. 기업당 3일가량이 소요되고, 현장실사 전 서한을 통하여 방문일시, 검증할 유형의 정보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통지한다.

현장실사의 목적은 기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있다. 조사관은 답변서에 기재된 답변과 기업의 회계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 이 때 회계 기록의 원천이 되는 정보와 거래의 실질에 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사 중 조사관이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 실사

- ✓ 송장(Invoices)
제출된 답변서의 판매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으로 내부 경리대장과 수출판매 비교, 지불, 운송비, 관세와 같은 거래내역 확인이 이루어짐. 조사관은 수 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확인하므로 모든 판매 대금기록(매매계약서, 송장, 경리대장)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
- ✓ 매출원장(Sales ledger)
배제된 송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
- ✓ 회사 회계 장부(Company books)
매출원장이 회계상 매출액으로 어떻게 기록되고 연결되는지 확인
- ✓ 매출조정(Allowances)
순판매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조정항목들 역시 각 비용원장 및 회계자료와 일치해야 함

생산원가 실사

- ✓ 회사 내부 기록(Company internal records)
조사관은 회사 자체적으로 계산한 생산원가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데, 원가 배부 대상의 집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배부기준과 당해 배부기준의 설정 및 측정방식을 포함한 모든 계산 요소가 설명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송장(Invoices)
원가의 발생 사실(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의 구매 내역과 그에 상응하는 송장 및 대금지급 증빙이 있어야 함

¹⁰ Regulation (EU) 2016/1036, 제16조.

⑨ 잠정조치 부과

예비조사에서 덤핑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존재를 규명하였거나, 공동체 이익이 조사기간 중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종의 개입을 요구하는 경우 잠정조치가 부과된다. 잠정조치는 조사개시 후 60일 이후부터 부과할 수 있으며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 보다 낮은 관세가 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잠정관세는 덤핑마진보다 적게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¹¹, 이를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라고 한다. 잠정조치는 6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으며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관련 무역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집행위원회의 통보에 반대여사가 표명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9개월간 부과할 수 있다. 잠정조치 부과가 결정되면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및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사회는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상이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⑩ 조사의 종결

조치 부과 없는 종결

다음의 경우에는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 ✓ 신청이 철회되거나 공동체 이익에 반하지 않을 때
- ✓ 덤핑이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부정(negative) 판정이 내려져 조치가 불필요할 때
- ✓ 덤핑마진이나 수입량이 미소(de minimis)기준에 해당할 때, 즉 수출가격 대비 2% 미만일 때

반덤핑관세 부과

덤핑이나 그로 인한 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 긍정(positive) 판정이 내려진 경우, 그리고 공동체 이익이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에 의해 최종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협의 후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단순다수결로 위원회의 제안을 채택할 지 거절할 지 결정한다. 잠정조치가 발효 중인 경우에는 동 조치가 만료되기 최소 한 달 전에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잠정조치와 마찬가지로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며 Lesser Duty Rule 역시 적용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EU 무역구제제도에서 특이한 점은 반덤핑조사 시 ‘공동체이익심사’를 거치는 것인데, 이는 덤핑, 피해 및 그의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¹¹ Regulation (EU) 2016/1036, 제7.2조에서는 이를 권고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반드시 잠정관세가 덤핑마진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The amount of the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shall not exceed the margin of dumping as provisionally established, but it should be less than the margin if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Union industry.”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최종적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전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 당했는지 심사를 진행하는데 공동체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반덤핑관세 절차는 바로 종결된다. 이는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재량으로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가격이행약속(Price Undertaking)

덤핑 및 피해에 대한 긍정(affirmative) 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수출자가 집행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자발적 약속(satisfactory voluntary undertaking)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수출 가격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출중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협의 후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가 제거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가격약속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 이 때 가격인상은 덤핑마진을 제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수준 보다 높아서는 안되며, 덤핑마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격약속은 위원회에서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데 수출자가 동 약속의 제안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업체의 수가 너무 많아 가격이행약속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일반 정책적 이유를 포함한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가격이행약속의 제안을 거절한다. 제안이 거절된 경우 수출자는 거절 사유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 받을 수도(may be given an opportunity) 있다.

수출자 또는 위원회 양쪽 모두 가격이행약속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가격이행약속의 조건이 위반되었다는 증거가 있거나, 약속이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는 경우, 또는 모니터링 및 집행에 있어 어려움 발생한 경우, 가격이행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 분기 동안 유럽연합에 대한 매출이 없고 가까운 미래에 동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 또는 회원국은 일단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제출함으로써 가격이행약속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가격이행약속이 철회되는 경우, 당해 가격이행약속으로 인해 부과가 중단 혹은 보류되었던 잠정관세 또는 확정반덤핑관세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후속 평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구체적 요청이 있는 경우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⑪ 재심(Reviews)

최종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후 덤핑 및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으면 최초 반덤핑관세의 부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만료된다. 이해관계자들 특히, 역내 생산자들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의 만료로 인해 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신청할 수 있다. 5년의 경과 시점에 종료 재심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반덤핑 조치는 당해 종료재심의 최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유효하다. 최초 반덤핑명령 혹은 직전 재심에서 결정된 반덤핑관세율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해관계자는 중간재심(Interim Review)을 신청하여 새로운 관세율을 결정 받을 수 있다. 최초 조치 혹은 직전 재심 당시, 당해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기업들은 기타의 반덤핑관세율(all others rate)을 적용받게 되는데, 동관세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신규기업들은 신규수출자재심(New Exporter Review)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이 개시되면 위원회는 즉시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기존 반덤핑조사절차와 동일하다. 이사회 규칙에 따라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한 기존과 동일한 조사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질문서 발송, 현장실사, 청문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종료재심(Expiry Review)¹²

종료재심은 공동체산업의 요청 또는 집행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데, 반덤핑조치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종료재심의 신청은 조치가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지속적인 덤핑 및 피해가 존재
- ✓ 부과중인 반덤핑조치로 인해 피해가 제거되었다는 증거
- ✓ 수출자 또는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덤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재심은 개시 후 15개월 이내로 종결되어야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덤핑조치는 유효하다. 기존의 반덤핑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는 중간재심과 다르게 종료재심은 검토결과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종료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만약 조사가 기한 내에 끝나지 않는다면 조치는 종결되고, 조치 만료에 대한 통지가 관보에 게재된다.

아래 [도표]는 한국산 철강제 관열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조사의 실제 일정들을 표시한 것이다. 2002년 최초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취해진 이래로 2회에 걸쳐 연장이 되었으며, 최근 3번째 종료재심이 개시되었다.

¹² Regulation (EU) 2016/1036, 제11.2조.

도표 철강제 관열결구류 사건 반덤핑 조사 일정

사 례	사 건	개 요
'01.04.17	제소장 접수	제소장 접수
'01.06.01	조사개시	제소장 접수 후 45일 이내 조사개시
'02.02.07	잠정관세 부과	조사개시 후 9개월 이내 잠정관세 부과
'02.08.24	반덤핑 최종판정	조사개시 후 15개월 이내 최종판정
'07.05.23	종료재심 신청 접수	조치만료 3개월 전까지 접수
'07.08.18	종료재심 개시	
'08.10.16	종료재심 최종판정	조사개시 후 15개월 이내 최종판정
'13.02.08	만료예정 통보	
'13.06.26	종료재심 신청 접수	조치만료 3개월 전까지 접수
'13.10.15	종료재심 개시	
'14.12.03	종료재심 최종판정	조사개시 후 15개월 이내 최종판정 -'18.01.29까지 반덤핑 조치 연장
'15.02.18	부분 중간재심 개시	
'16.03.04	부분 중간재심 최종판정	조사개시 후 15개월 이내 최종판정
'17.10.25	종료재심 요청 접수	조치만료 3개월 전까지 접수
'18.01.27	종료재심 개시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trade.ec.europa.eu/tdi>)

도표 EU의 종료재심 개시 공고

C 31/16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7.1.2018
<p style="text-align: center;">V (Announcements)</p> <p style="text-align: center;">PROCEDUR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p> <p style="text-align: center;">EUROPEAN COMMISSION</p> <p style="text-align: center;">Notice of initiation of an expiry review of the anti-dumping measures applicable to imports of certain tube and pipe fittings originating in Turkey, Russia, Korea and Malaysia (2018/C 31/08)</p> <p>Following the publication of a Notice of impending expiry⁽¹⁾ of the anti-dumping measures in force on the imports of certain tube and pipe fittings originating in Turkey, Russia, Korea and Malaysia, the European Commission ('the Commission') has received a request for review pursuant to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²⁾ ('the basic Regulation').</p> <p>1. Request for review</p> <p>The request was lodged on 25 October 2017 by the Defence Committee of the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 ('the applicant') on behalf of Union producers representing ca. 51 % of the total Union production of certain tube and pipe fittings.</p> <p>2. Product under review</p> <p>The product subject to this review is tube or pipe fittings (other than cast fittings, flanges and threaded fittings), of iron or steel (not including stainless steel), with a greatest ex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609,6 mm, of a kind used for butt-welding or other purposes, currently falling within CN codes ex 7307 93 11, ex 7307 93 19 and ex 7307 99 80 (TARIC codes 7307 93 11 91, 7307 93 11 93, 7307 93 11 94, 7307 93 11 95, 7307 93 11 99, 7307 93 19 91, 7307 93 19 93, 7307 93 19 94, 7307 93 19 95, 7307 93 19 99, 7307 99 80 92, 7307 99 80 93, 7307 99 80 94, 7307 99 80 95 and 7307 99 80 98) ('the product under review'), and originating in Turkey, Russia, Korea and Malaysia.</p> <p>3. Existing measures</p> <p>The measures currently in force are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imposed by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283/2014⁽³⁾, as amended by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306⁽⁴⁾, against imports from Korea and Malaysia and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imposed by Council Implementation Regulation (EU) No 78/2013⁽⁵⁾ against imports from Russia and Turkey.</p>			

중간재심(Interim Review)¹³

반덤핑조치의 지속적 부과 필요성에 대한 재심으로,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뒤부터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은 위원회의 발의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출자, 수입자 또는 공동체 생산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될 수도 있다. 재심 검토는 15개월 이내로 종결되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증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 ✓ 덤핑을 상쇄시키는데 조치의 지속적 부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 ✓ 조치가 제거되거나 변경되어도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며,
- ✓ 현존하는 조치가 피해의 원인인 덤핑을 상쇄시키는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충분한 증거가 제공된 경우 위원회는 재심을 개시하게 된다. 중간재심을 통해서는 조치의 불필요성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종료재심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둘은 기본적인 의도 자체가 상반된 것이다. 즉, 종료재심은 반덤핑 조치의 만료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치를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인 데 반해, 중간재심은 반덤핑 조치 자체 혹은 조치의 수준이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중단 혹은 조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수출자재심(New Exporter Review)¹⁴

신규수출자재심이란 반덤핑 조사 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후 신규로 수출을 개시함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된 자가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이다. 신규수출자로서 별도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조사 기간 중 관련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였고,
- ✓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 ✓ 조사 기간 이후에 수출을 시작했거나, 또는 상당한 양을 공동체로 수출해야 하는 취소할 수 없는 계약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재심은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종결되며, 재심 결과 수출업자에 대한 덤핑 사실이확인되면 반덤핑관세는 재심의 개시일로 소급하여 부과된다.

¹³ Regulation (EU) 2016/1036, 제11.3조.

¹⁴ Regulation (EU) 2016/1036, 제11.4조.

⑫ 관세 환급¹⁵

덤핑이 제거되었거나 또는 그 수준이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면 수입자는 관세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입자는 반덤핑관세의 최종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상품이 자유롭게 유통되던 영역의 회원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관세환급은 최종 반덤핑관세 및 잠정조치로 인해 부과되었으나 확정 징수된 반덤핑관세에 대해서만 요청할 수 있는데, 신청 시 요구하는 반덤핑관세 환급 금액과 동 관세액의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세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를 즉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덤핑마진이 제거되었거나 감소되었다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세환급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최종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회원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된다.

라) 상계관세 조사절차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으로는 (1) EU이사회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정의에 해당되고, (2) 제4.2조~4.4조에서 명시하는 특정성(specific)을 가져야 한다.

EU규칙에서 정의하는 보조금의 존재에 부합하더라도 당해 보조금이 특정성을 갖지 않는다면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보조금 정의¹⁶

EU이사회규칙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이란, (1) 원산지 또는 수출국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있거나 또는 GATT1994 제16조에서 의미하는 소득 또는 가격지원 형태가 존재하며, (2) 그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 존재한다. 여기서 규정하는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는 아래와 같다.

- ✓ 정부로부터 민간기업으로의 자금의 직접적 이전(예: 무상지원금(grants), 대출(loans), 투자금 유입(equity infusion)) 또는 자금이나 채무의 잠재적인 직접 이체(예: 대출보증)
- ✓ 징수되어야 할 세금 및 부과금의 감면
- ✓ 일반적인 공공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아닌 상품,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
- ✓ 자금조달제도(funding mechanism)에 지불된 기여 또는 위에서 언급된 사항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민간기관에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¹⁵ Regulation (EU) 2016/1036, 제11.8조.

¹⁶ Regulation (EU) 2016/1037, 제3조.

특정성(specific)¹⁷

정부에 의한 재정적 지원 및 그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특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 또는 산업 내에서 특정성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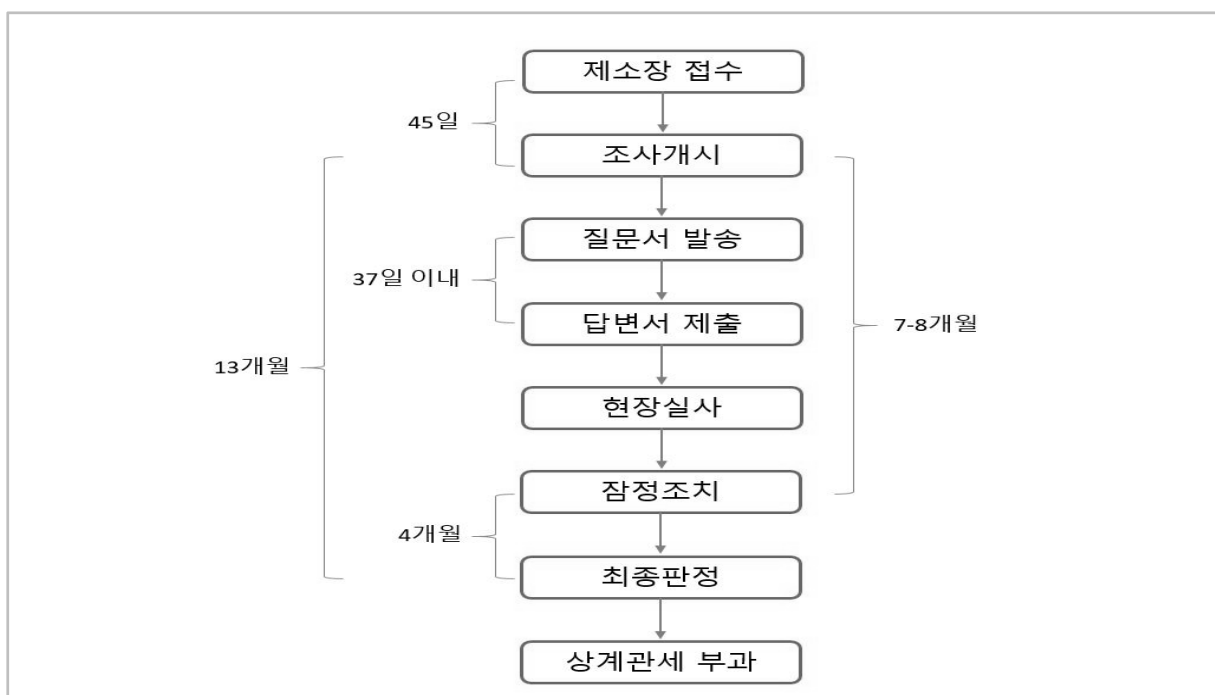
- ✓ 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에 명백하게 제한하는 경우 특정성이 있음
- ✓ 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자격과 금액을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 또 그러한 수혜자격이 자동적이고 엄격하게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이 없음

위 사항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준의 적용 결과 특정성이 없다하더라도, 당해 보조금에 사실상의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다른 요인들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은 그러한 추가 고려사항을 예시한 것이다.

- ✓ 제한된 수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프로그램 사용
- ✓ 특정 기업의 지배적인 이용
- ✓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보조금 지급
- ✓ 보조금 제공결정에 있어 권한 부여당국의 재량권 행사

특정성에 대한 모든 결정은 명백한 증거에 기초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도표 상계관세 조사절차



¹⁷ Regulation (EU) 2016/1037, 제4.2조.

② 제소장 접수

상계관세조사는 반덤핑조사와 피해 및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개념을 공유한다. 거기에 더하여, 보조금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부담이 제소자에게 있다. 반덤핑조사는 수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상계관세는 특성상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제소장이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 위원회는 조사대상국 정부에 즉시 알리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의 절차를 거친다.

③ 조사개시

제소장이 접수된 후 45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반덤핑 조사와 동일하게 관보를 통해 통지한다. 조사는 보조금의 존재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반덤핑 조사기간인 15개월에 비해 2개월 짧은 13개월 내에 조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보조금과 그에 따른 피해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조사신청은 기각된다. 수입품이 시장점유율의 1% 미만고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공동체 전체 수입 물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사는 개시되지 아니하고 기각된다.

④ 질문서 발송

조사가 개시되면 수출국 정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질문서가 발송된다. 반덤핑 조사절차와 동일하게 질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당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⑤ 잠정조치

보조금 수혜를 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EU의 공동체 이익이 피해를 막기 위해 위원회의 개입을 요구하는 경우, 잠정조치가 부과된다.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할 수 없으며, 조사 개시일로부터 9개월 내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다. 부과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는 조사기간이 반덤핑 조사기간 대비 2개월 짧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반덤핑 잠정조치의 기간보다 2개월 더 짧은 기간이다.

회원국이 위원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했고 최소관세 부과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위원회는 최대 5일 이내에 잠정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⑥ 최종판정

조사 결과 (1) 상계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이 존재하고, (2) 보조금으로 인해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EU 산업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며, (3) EU의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협의 후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1개월 이내에 단순다수결(by a simple majority)로 제안 수락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잠정조치가 발효 중인 경우 확정조치를 위한 제안은 잠정조치 만료일 1개월 전에는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상계관세는 공동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하다면 상계보조금의 총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만약 최종 상계관세 금액이 잠정조치 때부터 더 높다면 금액은 재산정 된다.

⑦ 재심

재심 및 관세 환급의 조사절차와 기간은 반덤핑과 거의 유사하나 중간재심과 신속재심에 있어 상이한 점이 있다.

중간재심(Interim Review)

상계관세의 지속적인 부과가 상계가능 보조금 및 그에 따른 피해를 상쇄하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기존 상계관세조치가 상계가능 보조금을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중간재심이 개시될 수 있다. 또한 상계관세가 상계관세 보조금액보다 적게 부과되고 있는 경우, 공동체 생산자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증거 제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증거라 함은 상계관세조치의 부과 전-후를 비교했을 때 수출가격이 하락하였거나 또는 수입품의 재판매 가격에 있어 불충분한 변동이 있었던 경우 또는 변동이 아예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조사 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상계관세가 인상된다.

상계관세의 중간재심은 반덤핑의 반흡수재심(anti-absorption) 조항과 비교할 수 있는데, 반흡수 조항은 본질적으로 덤핑마진에 대한 단순화되고 가속화 된 검토라면, 상계관세의 중간재심은 연합 기관들이 피해를 제거하는데 있어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마진을 재산정하고 상계관세를 인상시키기 위함이다¹⁸.

¹⁸ Van Bael & Bellis, "EU Anti-Dumping and Other Trade Defence Instruments", pg 713.

신속재심(Accelerated Review)

신속재심이란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원래의 조사기간 중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상계관세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출자에 대한 재심으로, 자문위원회와 협의하고 공동체 생산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진 후에 개시된다. 반덤핑 절차에 있어 신규수출자 재심과 유사하다.

마)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EU 규칙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 EU 역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동종(like)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directly competitive) 수입품의 급격한 증가가 있어야 하고,
- ✓ 그러한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EU 역내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야기하거나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threat of serious injury)이 우려되고,
- ✓ 세이프가드조치가 EU 공동체 이익(interests of the Community) 반하지 않아야 한다.

도표 EU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① 제소장 접수

세이프가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달리, EU 역내 생산자 또는 생산자협회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 회원국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자체 발의로 협의가 개최될 수 있으므로,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는 회원국을 통해 제기되어야 한다. 신청시에는 수입동향에 관한 정보 및 피해를 입증하는 정보를 증거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된 정보는 위원회를 통해 각 회원국에 회람되고, 정보 수령 후 8일 이내에 협의가 개시된다. 구성원은 자문위원회, 각 회원국 대표, 그리고 위원회 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입조건과 상황, 수입동향, 그리고 쟁점 물품에 관한 경제·산업적 상황의 다양한 방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협의결과는 5~8일 이내에 회원국에 통보한다.

EU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야기하는 수입상황 및 수입동향의 검토사항에는 다음 요인들이 포함된다¹⁹.

- ✓ 수입량, 특히 EU 생산 및 소비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
- ✓ 수입품의 가격, 특히 EU 내의 동종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여부
- ✓ 생산, 생산설비, 재고, 판매, 시장점유율, 가격,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고용과 같이 특정 경제적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EU 생산자들에 대한 결과적 영향
- ✓ 관련 EU 생산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었던 수입동향 외의 요소 등

② 조사개시

회원국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는 조사개시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조사를 정당화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세이프가드조사를 개시하고 관보에 동 사실을 게재한다. 공고 내용으로는 접수된 정보에 대한 개요,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할 모든 관련 정보, 당사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간 및 정보 제출 기간, 그리고 공청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개시된 철강 세이프가드의 경우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가 매우 넓어, 아래 [도표]와 같이 별도로 부록에서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¹⁹ Regulation (EU) 2015/478, 제9.1조.

도표 EU 공식 관보에 게재된 철강세이프가드의 조사대상 제품 목록 중 일부

26.3.2018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111/33
ANNEX			
Products Concerned			
Product number	Product category	CN Codes	
1	Non Alloy and Other Alloy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7208 10 00, 7208 25 00, 7208 26 00, 7208 27 00, 7208 36 00, 7208 37 00, 7208 38 00, 7208 39 00, 7208 40 00, 7208 52 99, 7208 53 90, 7208 54 00, 7211 14 00, 7211 19 00, 7212 60 00, 7225 19 10, 7225 30 10, 7225 30 30, 7225 30 90, 7225 40 15, 7225 40 90, 7226 19 10, 7226 91 20, 7226 91 91, 7226 91 99	
2	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	7209 15 00, 7209 16 90, 7209 17 90, 7209 18 91, 7209 25 00, 7209 26 90, 7209 27 90, 7209 28 90, 7209 90 20, 7209 90 80, 7211 23 20, 7211 23 30, 7211 23 80, 7211 29 00, 7211 90 20, 7211 90 80, 7225 50 20, 7225 50 80, 7226 20 00, 7226 92 00	
3	Electrical Sheets (other than GOES)	7209 16 10, 7209 17 10, 7209 18 10, 7209 26 10, 7209 27 10, 7209 28 10, 7225 19 90, 7226 19 80	
4	Metallic Coated Sheets	7210 20 00, 7210 30 00, 7210 41 00, 7210 49 00, 7210 61 00, 7210 69 00, 7210 90 80, 7212 20 00, 7212 30 00, 7212 50 20, 7212 50 30, 7212 50 40, 7212 50 61, 7212 50 69, 7212 50 90, 7225 91 00, 7225 92 00, 7226 99 10, 7226 99 30, 7226 99 70	
5	Organic Coated Sheets	7210 70 80, 7212 40 80	
6	Tin Mill products	7209 18 99, 7210 11 00, 7210 12 20, 7210 12 80, 7210 50 00, 7210 70 10, 7210 90 40, 7212 10 10, 7212 10 90, 7212 40 20	
7	Non Alloy and Other Alloy Quarto Plates	7208 51 20, 7208 51 91, 7208 51 98, 7208 52 91, 7208 90 20, 7208 90 80, 7210 90 30, 7225 40 12, 7225 40 40, 7225 40 60, 7225 99 00	

위원회는 조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와 협의 후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입업자, 무역업자, 중개업자, 생산자, 무역협회 등과 함께 이러한 정보들을 검토할 수 있다²⁰. 이해당사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에 한해 자신의 이익 방어에 도움이 되고, 비밀이 아니며, 이미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에 의해 사용된 모든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²¹.

²⁰ Regulation (EU) 2015/478, 제5.2조.

²¹ Regulation (EU) 2015/478, 제5.4조.

③ 답변서 제출

조사개시 후 위원회는 EU 내 동종상품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 생산자 및 생산자 협회에 질문서를 발송한다. 질문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이해관계자들은 21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국 생산자, 수입자, 조사대상제품 사용자, 그리고 협회 역시 그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표명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기존의 질문서와 다르게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들 역시 EU 역내 생산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관보에 게재된 날을 기준으로 21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잠정조치²²

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지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공된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으면 조치 철회시 환급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관세 수준을 인상하는 형식으로 취해야 하고, 잠정조치 부과 기간은 20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잠정조치는 철회되며, 그러한 경우 조치 적용과정에서 징수된 관세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환급되어야 한다.

⑤ 최종판정

최종판정은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내려야 되는데 예외적인 상황에서 연장기간과 이유를 명시함으로써 최대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가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U관보에 조사종료 공고와 함께 1개월 이내에 조사가 완료된다.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기간은 심각한 피해를 예방 또는 개선하고, 공동체 생산자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제한으로 잠정조치를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세이프가드조치는 연장이 가능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총 부과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²² Regulation (EU) 2015/478, 제7조.

⑥ 재심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국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발의로 조치 적용기간의 중간지점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조치에 대한 자유화의 적절성 및 방식, 그리고 조치의 적용이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후 세이프가드조치가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데, 이사회에 의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동 조치를 철회 또는 수정할 것인지 이사회에 제안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결정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세이프가드조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²³.

바) EU 무역구제법 개정(1) - 시장왜곡

EU는 기존 반덤핑규칙에서 수출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해왔다. WTO 회원국 여부 및 경제 개혁 정도에 따라 비시장경제국을 분류해왔는데,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여겨지던 근거인 WTO 가입의정서 제15항이 2016년 12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별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중국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 받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EU와 미국은 반대 입장을 취하였는데, EU는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에 적용하는 덤핑마진 산정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기존 반덤핑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과거 비시장경제국으로 사전 정의된 몇몇 국가에 국한되던 처리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도표 EU의 기존 비시장경제국가 목록²⁴

	구 분	국 가
1	경제개혁의 정도에 비추어 향후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2	반덤핑조치의 목적상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WTO 회원국인 국가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몽골
3	그 외의 비시장경제 국가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북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²³ Regulation (EU) 2015/478, 제20.2조.

²⁴ Van Bael & Bellis, "EU Anti-Dumping and Other Trade Defence Instruments", pg 144-145.

2016년 5월, EU는 반덤핑규칙에서 규정하는 시장경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위원회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새로운 반덤핑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개정의 구체적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²⁵.

-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의 만료에 대한 대응 및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들 고려
- ✓ EU 무역구제제도의 지속적인 효과성 보장
- ✓ 중국 및 다른 비시장경제국의 지속적인 왜곡에 대한 효과적 대응
- ✓ 덤핑/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구제 수단 확보
- ✓ EU 무역상대국과의 강한 유대관계 유지

이에 따라 2016년 12월, 반덤핑규칙 2017/2321이 개정 및 발효되었는데, 기존의 시장경제국 및 비시장경제국의 개념을 없애고 '심각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s)'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EU 반덤핑규칙 2017/2321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심각한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의 정상가치 산정방식

새로이 도입된 제2.6조 (a)항은 수출국에 '심각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s)'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가격 산정 시 다음의 방식에 따라 정상가치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 ✓ 수출국의 경제 발전과 비슷한 수준의 적절한 대표 국가의 생산 및 판매비용. 만약 그러한 국가가 2개 이상이라면 사회 및 환경 보호 수준이 적절한 국가가 선호됨
-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왜곡되지 않은 국제가격, 비용, 또는 기준가격(benchmark)
- ✓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고 적절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수출국 국내비용이 사용될 수 있음

② 심각한 왜곡을 판단하기 위한 6가지 요소

제2.6조 (b)항에서는 '심각한 왜곡'을 판단하는 6가지 요소들을 제공하였다.

- ✓ 시장이 수출국 당국의 소유, 통제, 또는 정책 감독 및 지시 하에 운영되는 기업에 의해 상당한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 ✓ 가격과 비용 관련하여 기업에 대해 국가 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 ✓ 공공정책 또는 조치가 국내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차별화하거나 또는 자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파산법, 기업법 또는 재산법의 부재 또는 부적절한 집행 적용 여부
- ✓ 인건비의 왜곡 여부
- ✓ 공공정책 목적을 수행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기관에 의해 승인된 재정 지원

²⁵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Possible change in the calculation methodology of dumping regar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other non-market economies)", pg. 21.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november/tradoc_155080.pdf

③ 조사 및 보고서

제2.6조 (c)~(e)항에서는 위원회가 (b)항에 따라 ‘심각한 왜곡’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경우, 그에 기반하여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해당사자들은 이를 입증할 기회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d)항에서는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EU업체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업체가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 훨씬 용이해지므로 무역구제조치의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새로운 반덤핑규칙 발효와 함께 중국에 대한 ‘심각한 왜곡’ 보고서²⁶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EU의 무역구제조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서는 총 46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범분야 왜곡, 생산요소에서의 왜곡,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의 왜곡으로 이루어져있다.

도표 중국에 대한 ‘심각한 왜곡’ 보고서 구성

	목 차	내 용
1	Introduction	‘심각한 왜곡’ 의미, Part I, II, III 소개
Part I: Cross-Cutting Distortions		
범분야 왜곡		
2	Social Market Economy 사회주의 시장 경제	중국의 기업법, 재산법, 국유 기업 관련 법, 사회주의 시장의 구성 요소
3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	공산당의 리더십, 국가와 당 사이의 관계, 정책과 계획에서의 공산당 역할
4	The System of Plans 계획 시스템	계획 시스템 구조, 중국 2025, 인터넷+, 중국의 제 13 차 5 개년 계획, 계획의 이행 등
5	State Owned Enterprises (SOE) 국유기업	중국 경제에서의 SOE 비중, SOE 개혁, 법률 구조, SOE 에 대한 정부 통제
6	Financial System 금융시스템	중국 금융시스템 개요, 중국 은행, 채권시장, 주식시장, 투자 기금, 수출보증시장에서의 국가 존재, 파산 절차
7	Public Procurement Market in China 중국의 공공조달시장	정부조달법, 입찰법, 왜곡
8	Investment Restrictions for Chinese and Foreign Companies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 제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및 정책 문서, 투자 승인 과정을 통한 중국의 산업 정책 목표
Part II: Distortions in the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요소에서의 왜곡		
9	Land 토지	토지사용권 거래 규칙, 토지사용권 획득, 가격

²⁶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7/december/tradoc_156474.pdf

	목 차	내 용
10	Energy 에너지	에너지 시장 개요, 계획, 규제 기관, 가격, 생산과잉
11	Capital 자본	자본의 접근, 자본 가격, 기업의 부채
12	Raw Materials and Other Material Inputs 원재료 및 부수자재	원자재 관련 5 개년 계획, 분쟁, 수출 제한, 가격 설정, SOE 등
13	Labour 노동	노동법, 국제노동기준, 급여 및 수당, 임금교섭, 법 집행

Part III: Distortions in Selected Sectors

특정 분야에서의 왜곡

14	Steel Sector 철강 분야	규제, 국가지원조치, 원재료 및 부수자재 왜곡, 철강시장 현황(공급 과잉 문제)
15	Aluminum Sector 알루미늄 분야	규제, SOE, 정부지원조치, 공급 과잉
16	Chemical Sector 화학 분야	중국의 화학 시장(중국의 세계적 위치, 생산, SOE, 공급과잉), 규제, 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시장 왜곡
17	Ceramic Sector 세라믹 분야	중국의 세라믹 산업(생산, 수출, 공급 과잉), 규제, 정부지원조치, 정부 개입

본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공급 과잉, 높은 비중의 SOE,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및 혜택, 불투명한 절차 등을 지적하였고, 다음 대상으로 러시아를 지목했다.

④ 비시장경제국의 처리방식에 관한 기존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 변경

기존 반덤핑규칙²⁷ 제2.7조에서는 WTO 회원국/비회원국 여부와 무관하게 EU가 규정하는 모든 비시장경제국을 대상으로 특별한 방식의 정상가치 계산방식이 적용되었던 반면, 개정된 반덤핑 규칙²⁸ 제2.7조에서는 WTO 비회원국(not members of the WTO)만을 대상으로 적용 되도록 대체하였다. 그에 따라 기존의 NME 계산방식은 비회원국들에게 여전히 적용된다.

⑤ 기 진행 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규정

EU반덤핑규칙 2016/1036 제11.3조의 중간재심 및 제11.4조의 신규수출자재심과 관련하여 이미 부과 중인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당해 개정 법률의 발효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재심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유효하다.

²⁷ Regulation (EU) 2016/1036

²⁸ Regulation (EU) 2017/2321

사) EU 무역구제법 개정(2) - 최소부과원칙 적용 배제

EU는 우리나라와 같이 Lesser Duty Rule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Lesser Duty Rule 혹은 최소부과원칙이란, 덤핑마진과 피해마진(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가격과 실제 수출가격 간 차이) 중 적은 금액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덤핑마진을 한도로 관세를 부과되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만 부과하자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덤핑마진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덤핑마진보다 피해마진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EU는 반대로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매우 큰 것이 보통이다. Lesser Duty Rule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덤핑마진 만큼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관행으로 굳어져왔다. 다만, EU의 경우에도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조사의 경우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과 베트남 같은 과거 비시장경제국가들은 일반적인 덤핑마진 계산방법을 따르지 않고 대체가격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덤핑마진이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Lesser Duty Rule은 모든 조사에 있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법 개정안에 대해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지난 2018년 5월 30일, 이를 승인했다.²⁹ 동 개정은 2018년 6월 7일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6월 8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2018년 6월 8일 이후에 조사개시 공고문이 게재되는 모든 조사에 적용된다.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서는 더 이상 Lesser Duty Rule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덤핑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에 구조적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Lesser Duty Rule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상황들이 원재료 왜곡을 구성할 수 있다.

²⁹ Regulation (EU) 2018/8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amending Regulation (EU) 2016/103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Regulation (EU) 2016/103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 dual pricing schemes	이중 가격 체계
✓ export taxes	수출세
✓ export surtax	수출시 추가 징수
✓ export quota	수출 쿼터
✓ export prohibition	수출제한
✓ fiscal tax on exports	수출액에 대한 법인세
✓ licensing requirements	허가요건
✓ minimum export price	최소 수출가격
✓ value added tax refund reduction or withdrawal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감소 혹은 환급취소
✓ restriction on customs clearance point for exporters	수출 통관상의 제약
✓ qualified exporters list	수출이 허가된 자 명단
✓ domestic market obligation	내수시장에서의 의무
✓ captive mining if the price of a raw material is significantly lower as compared to prices in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markets	국제시장 가격 대비 원재료 가격이 현저히 국제시장 가격 대비 원재료 가격이 현저히 특정했는지 여부
✓ other raw material distortions in the OECD list	원재료 수출제한 대상인 재고 리스트와 같이 OECD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단일 원재료 혹은 전기료 같은 에너지가 총생산원가의 17% 이상인 경우, 원재료 왜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이들에 대해서는 왜곡되지 아니한 국제시장가격을 사용한다.

ILO가 집행하는 임률 기준으로 피해마진을 계산할 경우,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기 전 수익성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이윤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수익성은 총원가와 투자, 연구개발과 혁신 등의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이렇게 도출해 낸 목표이윤율이 6%에 미달하는 경우 6%를 이윤율로 결정한다. 목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정한 임률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3

사례 및 시사점

가) 고순도 테레프탈산 (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에 대한 반덤핑 조사

① 쟁점사항: 미소마진과 협력의 정도

EU 위원회는 EU에 파견된 한국 대표단에게 관련 수출자 명단과 함께 협조 여부를 문의하였고, 5개사 모두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3개사만 샘플로 선정되어 조사에 응하게 되었다. 이들 3개사 중 1개사만 3.5%의 덤핑마진율이 도출되었고, 나머지 두 개사는 미소마진이 결정되었다. EU는 이들 3개사가 전체 EU 수입액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수출자 모두 협조에 응하였고, 3개사는 매우 높은 수준의 협조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all others rate을 3.5%가 아닌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샘플링 된 기업들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값이 0.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All others rate은 본래 미소마진과 협조의무 불이행에 따라 AFA(adverse facts available)가 적용된 덤핑마진율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동 사건에서도 역시 제조자는 이러한 처리에 반론을 제기했으나, EU는 다음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 ✓ the high level of cooperation,
- ✓ the high level of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and also
- ✓ the fact that only one of the sampled exporters had a dumping margin above de minimis.

이에 따라 all others rate 뿐 아니라 country wide rate을 미소마진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산업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었다. 한국 기업들과 정부의 협력과 대응 노력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수입규제조치가 중소기업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비용부담 등 문제로 조사당국의 조사에 대한 협조 등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서도 수입규제 조치 수준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 철강 세이프가드

① 쟁점사항(1): 세이프가드의 발동 원인, 무역전환효과

미국이 2018년 3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이하, '232 조치')를 취한 이후 EU, 중국 등 당해 조치의 규제대상국들을 WTO에 동 사안에 대해 제소를 함과 동시에 각기 보복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EU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조치에 더하여, 2018년 3월 26일, 총 28개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기존에 미국으로 수출되던 물량이 미국의 232 조치로 인해 EU로 흘러 들어 올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미국에서 촉발된 철강 제재에 더하여 EU 세이프가드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무역자유화를 위해 함께 했던 그간의 가치가 훼손되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EU 집행위는 총 28개 품목 중 잠정조치 대상 23개 품목군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급증했다고 판단하였다.

③ 쟁점사항(2): 글로벌 쿼터 vs 국별 쿼터

EU는 2018년 7월 19일부터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23개 품목에 대하여 TRQ(Tariff Rate Quota) 방식으로 잠정조치를 취하였다. 2015-2017 3개년 평균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가 없으나, 동 쿼터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쿼터의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쿼터량을 정한 것이 아니라, EU 역내로 반입된 전체 수입에 대해 쿼터를 정하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취하였다.

④ 시사점 및 대응방안(2)

미국과 EU라는 거대 소비시장과 원거리에 위치한 한국은 지리상의 이유로 국별 쿼터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시장과 인접한 여타 수출국들이 쿼터를 우선적으로 채워나갈 경우 기 확보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 기업관 협력하에 수입국 및 타 국가 제품보다 한국산 제품이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입 양국에 이해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II

터키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개요
2. 제도 및 절차
3.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개요

터키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1995년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최근 22년 동안 총 221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다. 상계관세는 총 2건 개시되었는데, 인도를 대상으로만 상계관세 조치를 취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과는 달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계관세는 자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세이프가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 말까지 총 23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터키의 수입규제는 총14건 중 반덤핑 9건, 세이프가드 5건으로¹⁾, 특히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한국에 대해 총 7건의 반덤핑조사와 총 4건의 세이프가드조사를 개시함으로써 터키의 對한국 수입규제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도표 터키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5~2017)

(단위: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 계
반덤핑	-	-	4	1	8	7	15	18	11	25	12	8	6	23	6	2	2	14	6	12	16	17	8	221
상 계 관 세	-	-	-	-	-	-	-	-	-	-	-	-	-	1	-	-	-	-	-	-	1	-	-	2
세이프 가 드	-	-	-	-	-	-	-	-	-	5	-	5	3	1	1	-	1	-	1	3	1	-	2	23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WTO 출범 이래 터키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221건 중 81건,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인도로 14건(6.3%), 세 번째는 태국과 한국이 13건(5.9%)을 기록하며 인도와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이 11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도표 조사대상국별 터키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7)

(단위: 건)

국 가	중국	인도	태국	한국	대만	인니	말련	러시아	베트남	미국	이스라엘	루마니아	기타	총계
건 수	81	14	13	13	11	9	8	6	6	4	4	4	48	221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U>)

¹ 현재 조사 중이거나 규제 중인 건 모두 포함.

도표 터키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구 분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규제시작일
1	철강제품	SG (조사중)	2018-04-27	
2	아크릴모드 (Modacrylic Fiber)	AD (조사중)	2018-03-22	
3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SG (조사중)	2018-02-23	
4	칫솔(Toothbrushes)	SG (규제중)	2017-05-03	2017-10-17
5	디옥틸 테레프탈레이트 (DOTP: Dioctyl Terephthalate)	AD (규제중)	2016-11-23	2017-10-20
6	디옥틸프탈레이트 (DOP: Dioctyl Phthalate)	AD (규제중)	2016-07-21	2017-10-20
7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AD (규제중)	2016-04-17	2017-03-31
8	콘크리트 펌프카 (Concrete pump)	AD (규제중)	2016-02-06	2017-07-12
9	벽지 (Wallpaper and Similar Wallcoverings)	SG (규제중)	2014-12-12	2015-08-06
10	장식체인 (Articulated link chain and parts thereof) *반우회덤핑	AD (규제중)	2012-12-14	2013-12-12
11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SG (규제중)	2011-03-11	2011-06-11
12	금속드리사 (Metallized Yarn)	AD (규제중)	2004-02-07	2004-09-24
13	합성필라멘트섬유 (synthetic filament yarn)	AD (규제중)	2000-10-31	2002-02-13
14	폴리에스터 단섬유 (polyester staple fiber)	AD (규제중)	1999-04-04	2000-03-13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터키 경제부, KITA 종합

2

제도 및 절차

가). 터키 국내법

터키의 대외 무역 정책은 WTO 협정과 EU와의 관세 동맹으로부터 구체화되었고, EU와 나란히 하기 위해 무역 체제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왔다.

① 반덤핑 및 상계관세

터키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수입 대체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외국 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였다. 1984년 수입 자유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관세 및 규제폐지를 통해 국내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수입 자유화 정책 채택 후,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로 인해 1989년 터키는 국내 첫 반덤핑 법안을 제정하였다. 터키의 반덤핑 법은 수입 불공정 경쟁 방지법(Law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Importation) 제3577호로 규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No. 23861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기술적 및 공식적 절차를 규제하고 있는 GATT의 동경라운드 반덤핑협정의 조항에 따라 공식화되었다. 현재 터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구성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Decree란 각료이사회 결정에 관보에 공표한 것으로, 수입 및 수출 체제, 세이프가드조치, 관세 쿼터 관리, 수입에 대한 불공정 경쟁 방지 모두 이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 ✓ 수입 불공정 경쟁 방지법 제3577호² (Law)
- ✓ 수입 불공정 경쟁 방지 규정 제23861호³ (Regulation)
- ✓ 수입 불공정 경쟁 방지 법령 99/13482 (Decree)

②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의 준거법은 Decree No. 2004/7305 이며, 상세한 조치의 정의나 절차에 관해서는 Regulation on Safeguard Measures for Imports 에서 명시하고 있다.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 The Decree on Safeguard Measures for Imports No. 2004/7305
- ✓ The Regulation on Safeguard Measures for Imports (2013년에 개정)

² Law No. 3577 on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Imports (1989년도 제정 및 1999년 개정).

³ OG, 30 October 1999, No. 23861, (2002, 2005, 그리고 2006 년에 개정)

나). 유관기관

①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Board of Evalua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Importation)

터키의 덤핑 및 보조금 조사당국은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 및 무역부 수입국 산하의 덤핑 조사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7개의 서로 다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대표하는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 결정적 권한을 행사한다. 위원회가 수행하는 상세 기능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 징수는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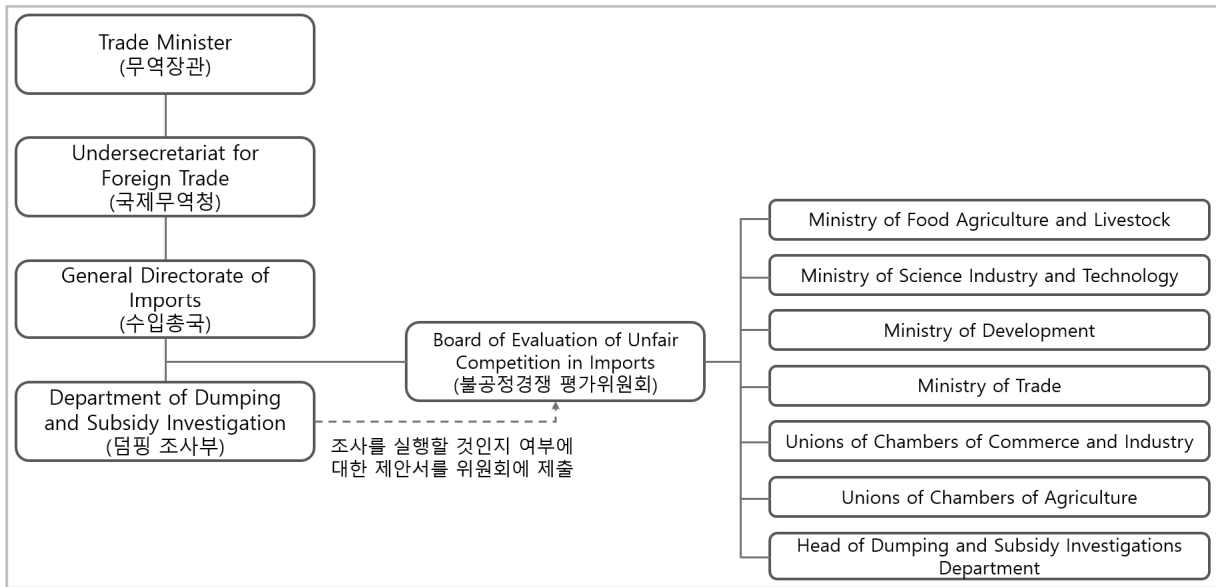
- ✓ 덤핑 및 보조금 조사의 개시 및 종료
- ✓ 가격약속 수락
- ✓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결정

덤핑 조사부(Department of Dumping and Subsidy Investigation)

덤핑 조사부는 무역부의 수입총국 산하기관으로, 터키의 무역 규제 조치를 관리한다. 조사부는 국내 산업의 불만 사항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사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덤핑 및 보조금 조사 신청의 수락
- ✓ 덤핑 또는 보조금의 지급 사실 및 산업피해 결정
- ✓ 이해관계인 통보
- ✓ 예비 판정 및 최종 판정
- ✓ 잠정조치
- ✓ 최종판정에 따른 권고

도표 반덤핑 및 보조금 담당기관



②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평가위원회(Board for the Evaluation of Safeguard Measures for Im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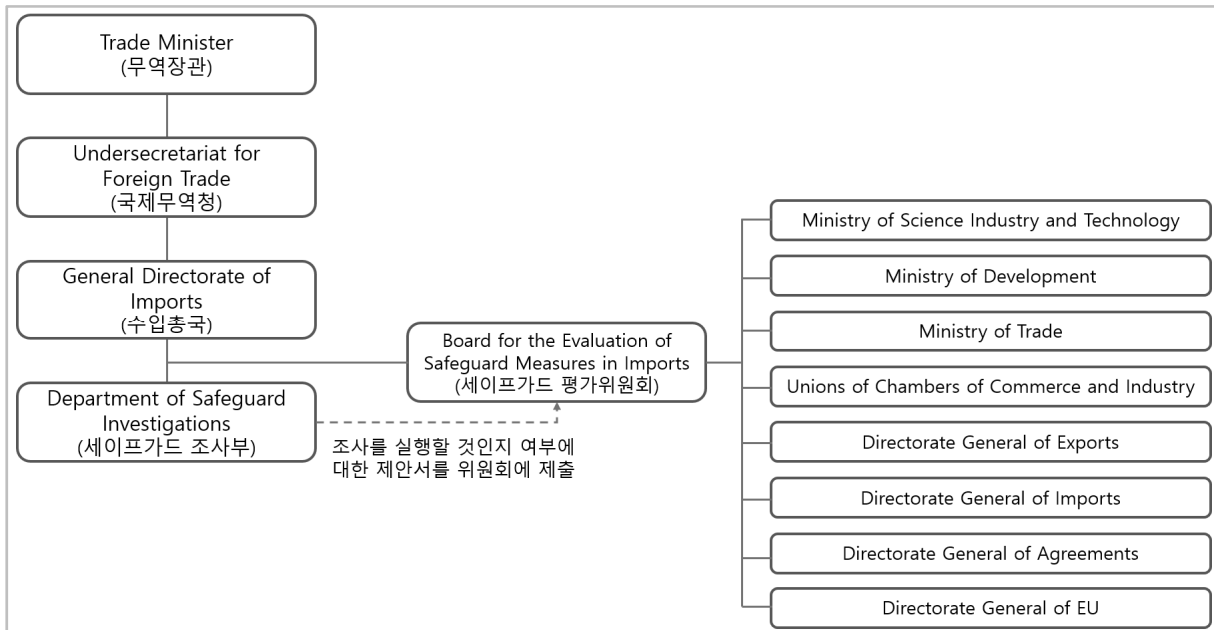
세이프가드의 조사당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부서만 다를 뿐 구조는 유사하다.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세이프가드 평가위원회는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관세인상 및 추가 관세 조치의 승인은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에서 담당한다.

세이프가드 조사부(Department of Safeguard Investigation)

무역부의 수입총국 산하기관인 세이프가드 조사부는 국내 산업의 조사신청으로 사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덤핑 조사부와 유사하게 세이프가드 조사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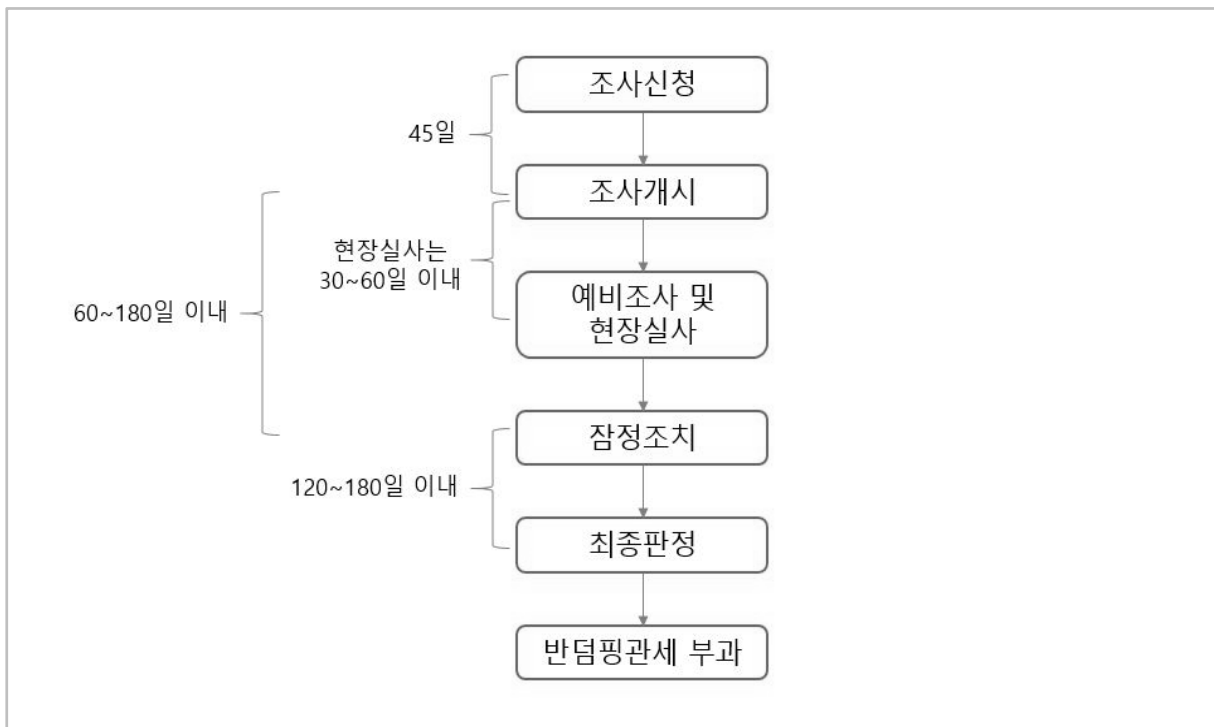
- ✓ 세이프가드 신청의 수락 및 결정
- ✓ 이해관계인에 통보
- ✓ 잠정조치
- ✓ 최종판정에 대한 권고

도표 세이프가드 담당기관



다) 반덤핑 조사절차

도표 반덤핑 조사절차



① 제소장 접수

국내 산업은 수입품의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소장을 덤핑 조사부(Department of Dumping and Subsidy Investigation, 이하 Department)에 제출한다. 외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과 그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내용이 충분히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덤핑 조사부는 해당 수출 국가의 정부에 통보하고 평가위원회(Board of Evalua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Imports, 이하 Board)에 보고할 제안을 준비한다.

② 조사개시

제소장이 접수되고 최대 45일 간의 사전 분석을 완료한 다음 덤핑 조사부는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제안을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위원회는 반덤핑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가 개시되면 공고문(communique)이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된다. 동시에 덤핑 조사부는 제소장 공개본 및 질문서를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 그리고 수입업체에 발송하고, 터키 경제부 홈페이지(www.tpsa.gov.tr/)에 게시한다. 한-터키 FTA는 반덤핑 조사 개시일로부터 15일 전에 수출 국가에 조사 개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답변서 제출

질문서는 조사개시일로부터 7일 뒤 수령한 것으로 보며,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즉, 관보에 공고가 게재되는 시점으로부터 3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함으로써 1~3주 가량의 연장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답변을 영어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모든 답변과 Exhibit을 터키어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답변 작성 시 번역에 소요될 시간을 감안해서 답변을 준비하여야 한다. 산업피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initial comments)은 덤핑 답변서 제출시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나, 일부 문서의 누락에 따른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한다.

덤핑조사의 질문서는 Section A~H와 답변서 작성지침,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지침에 따르면, 조사당국에 제출할 모든 정보는 전자매체(CD/DVD 또는 휴대용 메모리) 및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invoice examples는 전자 파일로만 제출해도 무방하다. 단, 전자파일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no cooperation”, 즉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서류를 제대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국에 연락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질문서와 자료는 터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답변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그에 관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또한 조사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추가 정보와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표 터키 반덤핑 질문서 구성

SEC.	Title	Sub Title
지침	Gener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Questionnaire Answered 답변서 작성 지침	일반, 정보 및 문서, 검증, 시간 제한 및 비협조, 기밀 정보, 비준, 언어, 기타 사항
A	General Information 일반사항	회사명 및 연락처, 기업 정보, 회사 경영 정보, 시스템 관련 정보
B	Product Description 제품 설명	조사 범위, 제품 특징, 수출국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의 비교
C	Annual Data 연간 데이터	매출액, 총 판매량 및 판매액, 생산규모 및 생산능력, 주식, 고용, 투자
D	Domestic Sales of Product Subject to Investigation 조사대상 제품의 내수 판매	내수 판매 프로세스, 내수 판매량 및 금액, 중개상을 통한 내수 판매, 내수 판매의 조정항목
E	Product Exports to Turkey 터키로의 제품 수출	수출 프로세스, 수출 판매, 중개상을 통한 수출, 수출 판매의 조정항목
F	Exports to Third Countries 제3국으로의 수출 판매	제3국 수출
G	Production Cost 생산 원가	회계 시스템 및 정책, 제조 원가 및 조사 대상 제품
H	Requested Form for Computer 컴퓨터 파일 제출 양식	H-1 리스트 및 테이블, MS엑셀 파일 작성 지침

터키 조사당국은 워드 형식의 질문서 외에 다음과 같이 엑셀 테이블(Appendix)을 제시하고 있다.

도표 터키 반덤핑 엑셀 테이블(Appendix) 구성

No.	Appendix	내 용
A-2.2	Share Structure	주주구성
A-2.7	List of Related Company	관계사 목록
B-2.2	TURKOD	터키로 수출되는 제품 유형
B-2.3	ICKOD	내수 판매하는 제품
B-3.1	Comparison of Sales	판매 비교
C-1.1	Company Turnover	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C-1.2	Consolidated Turnover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
C-2.1	Sales Amount/Unit Price	매출액 및 판매가격
C-3.1	Production and Capacity	생산 및 생산능력
C-4	Inventory	재고
C-5	Jobs	고용인원
C-6	Investment	투자
D-2.2	Domestic Sales	국내 판매
D-2.3.b	ICSAT	국내 판매 거래 내역
D-3.2	Internal Market Sales Through Related Companies	관계사를 통한 국내 시장 판매
E-2.3	Total Exports to Turkey	터키로의 전체 수출
E-2.4	Calculate "TURSAT"	터키로 수출하는 상품 송장 계산
E-3.1	Related Companies' Export Sales To Turkey	관계사의 터키 수출
F-1.1	Total Issued Sales to Third Country	제3국으로의 총 판매
G-2.7	Gain/Loss Statement of Manufactures and Exporters	제조사 및 수출자 손익계산서
	Consolidated Profit/Loss Statement	연결 손익 계산서
	Unit Based Profit/Loss Statement for the Previous Year	전년도 손익계산서를 판매 단위 별로 구분하여 표시
	Unit Based Profit/Loss Statement for the Investigation Period	조사기간 손익계산서 판매 단위 별로 구분하여 표시
G-2.8	Certain Types of Production Cost	특정 유형의 생산 비용
G-2.9	ICIM	조사 기간 판매 상품 생산 비용 (D-2.3.b 및 E-2.4의 상품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
G-2.10	Round I	조사 기간 미판매 상품 생산 비용 (D-2.3.b 및 E-2.4의 상품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
G-2.11	Purchase of Raw Materials	원재료 구매

Appendix B 제품 정보

Appendix B는 터키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과 한국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코드, 제품명, 용도, 판매량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 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유형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전체 제품을 나열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자료가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터키 정부의 조사기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Appendix G-2.7 각종 손익계산서

향후 실사시 주된 질문의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고 관련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G-2.7의 4개 항목이다. 이들은 각각 다음의 상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회사의 회계시스템으로부터 추출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추출 및 작성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간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거나 다른 답변과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표 Appendix G-2.7.i 회사별 손익계산서 상세

계정 과목	직전 년도	조사대상기 간	내수				터키향 수출				제3국향 수출			
			비관계사항		관계사항		비관계사항		관계사항		비관계사항		관계사항	
			대상 제품	비대상	대상 제품	비대상	대상 제품	비대상	대상제품	비대상	대상제품	비대상	대상제품	비대상
매출액														
...														

상기 Appendix G-2.7.i 는 터키 수출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들 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생산법인과 1개의 판매법인, 그리고 그룹 계열사 중 하나가 터키 수출에 관련되어 있다면, 총 3개의 법인이 각각 상기 표를 작성해야 한다.

1차적인 어려움은 직전 년도와 조사대상기간 손익계산서의 비교이다. 조사대상기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결산 단위가 '월'이어야 한다. 결산을 누계 기준으로, 예를 들어, 1월 결산은 1월 한 달만, 2월 결산은 1월 결산을 취소하고 1~2월 누계 기준으로 결산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 손익계산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작성했다 하더라도 누계 기준 결산서를 직전 누계 기준 결산서에서 차감하는 과정에서 음수 값이 등장하는 등 소명해야 할 정보들이 많아지게 된다.

두 번째 어려움은 조사대상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내수와 터키향 수출, 그리고 제3국 수출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들이 국가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작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 손익계정에 대해 작성하지 않고 매출액 등 특정 계정에 대해서만 구분할 수 있어 개별 손익항목들을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매출원가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항목으로 배분이 아니라 추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재고수불부와 엮여 있어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매출액은 매출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사(trading company)를 통한 매출의 경우 최종 매출처가 어디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세 번째 어려움은 가장 설명이 난해한 항목인 이들 간 비교이다. 덤핑 조사에서 조사당국이 핵심적인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제품을 내수 시장에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했는지, 그리고 동 기간 동안 터키 시장에는 얼마의 가격에 판매 하였는지이다. 그럼에도 조사당국은 직전 연도의 정보와, 비대상 제품의 정보, 그리고 제3국 판매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는 일종의 기준점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분석적 검토(analytical review)라고 한다. 이들 기준점과 관심 대상 정보 간 차이가 큰 경우 조사당국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도표 Appendix G-2.7.ii 연결손익계산서의 자회사별 구분

계정과목	직전 회계연도 연결손익계산서	조사대상 회사	기타회사A	기타회사B	연결조정
매출액					
...					

Appendix G-2.7.ii 는 직전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1회만 작성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것은 요구하지 아니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결조정 관련 조서의 일부를 요청하여 수취해 두는 것이 좋다.

도표 Appendix G-2.7.iii 및 iv 손익계산서의 측정 단위별 구분

계정과목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조사대상물품의 측정단위	기타단위A	기타단위B	기타단위C
매출액					
...					

Appendix G-2.7.iii 및 iv 손익계산서의 측정 단위별 구분에서 특이한 점은 제품의 측정단위(UOM: Unit of Measure) 별로 손익계산서를 구분하여 제출토록 한 점이다. 예를 들어, 톤(Metric Tons) 단위로 판매하는 제품과 Drum 단위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④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조사가 시작되고 60일이 경과한 이후, 덤핑과 그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에 대해 긍정 예비판정(Preliminary affirmative conclusion)이 내려진 상황에서 조사 중에 발생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잠정조치의 기간은 4개월이지만 국내 생산기업의 요청에 따라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⑤ 현장실사(Verification)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의 제조업체 그리고 터키 국내 생산자에 대해 현장실사가 이루어진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상 실사일이 정해진것이 아니어서 현지 자문사를 통해 조사당국과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실사기간은 보통 2~3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분석적 검토에 따른 답변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조사관을 설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제출한 답변서 및 Appendix의 정보가 현장실사시 열람하는 전산시스템상의 데이터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의 회계 정보에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만 있을 뿐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형태의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아 상당 부분 합리적인 배분과 추가적인 조사, 또는 기타 보조원장의 데이터를 부수적으로 사용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동 변환 과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데이터 불일치를 이유로 이용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조사관이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현장실사기간 내에 제공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역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회사의 실무 담당자가 실사 기간 중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청회

조사기간 중 언제든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구두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공청회는 조사기간 중간이나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 국내산업의 대표들과 이해 관계자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덤핑계산의 기밀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회사 별 회의 요청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공청회에서는 반덤핑 조사의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최종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 내용이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개가 되는데, 이 때 당사자들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반덤핑 조사 절차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공청회에서 제기된 찬반론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고려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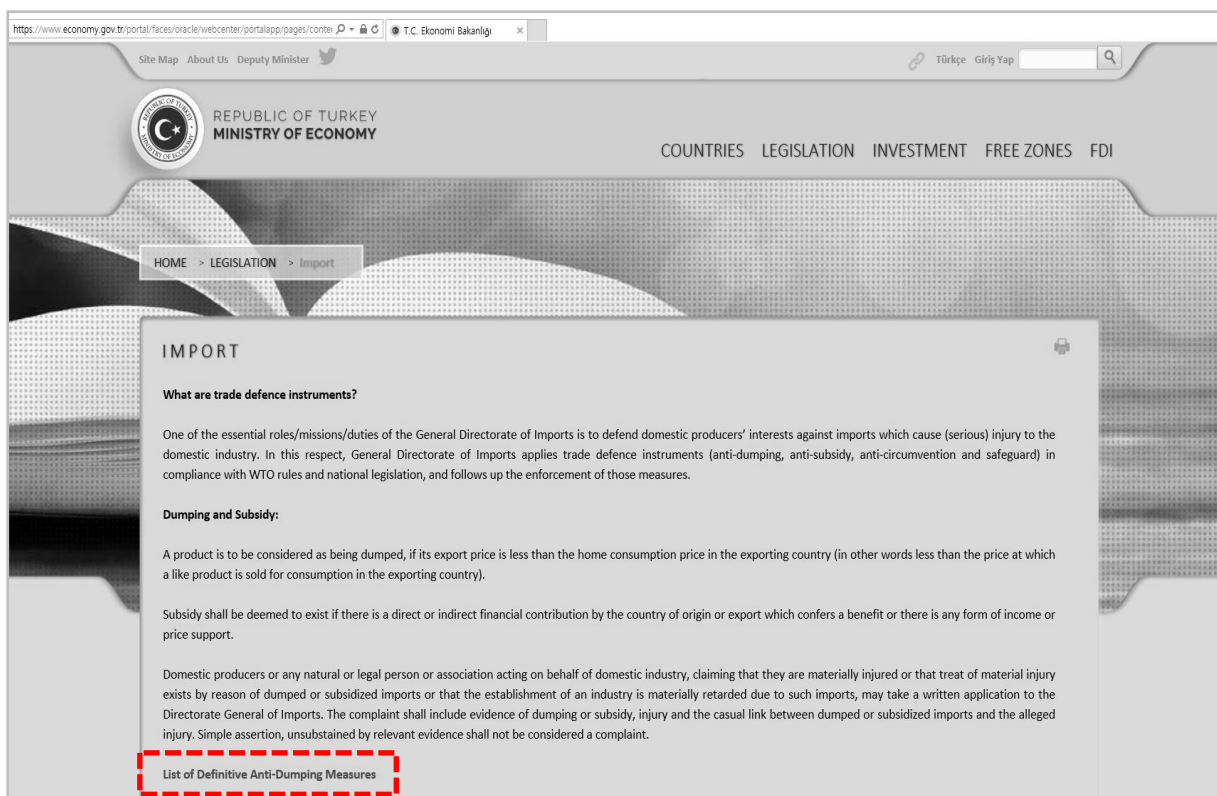
⑦ 최종판정 및 관세부과

덤핑 조사부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덤핑 조사부의 조사 결과와 제안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관보에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후 무역부장관이 승인하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최종적으로 부과된다.

조치 현황 조회

터키 무역부 홈페이지(www.trade.gov.tr/)의 "Legislation" 내 "Import → Trade Defence Policy" 메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반덤핑 조사를 조회할 수 있다.

도표 현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든 case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위 화면의 "List of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엑셀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다. 동 파일에는 Case 번호, 산업, 상품명, CN Code⁴, 국가, Communique 번호, 최종 조치일, 관보 번호, 관세율, 조치 유형, 만료일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⁴ CN Code에 따라 터키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도표

List of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1/2)

A	B	C	D	E	F	G	H	I	J	K	L	M
	T.C. EKONOMİ BAKANLIĞI İTHALAT GENEL MÜDÜRLÜĞÜ DAMPİNG VE SÜBVANSİYON ARAŞTIRMA DAİRESİ	R.T. MINISTRY OF ECONOMY GENERAL DIRECTORİAT FOR IMPORT DUMPİNG AND SUBSIDY INVESTIGATION DEPARTMENT	DAMPİNG VE SÜBVANSİYON ÖNLEMLERİ LİSTESİ* / LIST OF ANTI-DUMPİNG & SUBSIDY MEASURES									
DOSYA NO	SEKTÖR	MADDE İSMİ	MADDE İSMİ	G.T.İ.P.	ÜLKE	ÜLKE	ÖNLEM TEBLİĞ NO	ÖNLEM RG TARİHİ	ÖNLEM RG NO	ÖNLEM ORANI (CIF%) / MİKTARI	ÖNLEM TÜRÜ	NORMAL SÜRE DOLU TARİHİ
CASE NUMBER	INDUSTRY	COMMODITY	COMMODITY	CN CODE	COUNTRY	COUNTRY	COMMUNIQUE NO.	FINAL MEASURE DATE	NO. OF OFFICIAL GAZETTE	MEASURE RATE (CIF%) / AMOUNT	MEASURE TYPE	NORMAL EXPIRY DATE
NGS.147.02.2012	TK	Mensucat - 55 Grubu Sentetik ve Suni Devamsız Liflerden Dolunmuş	Woven Fabrics of Synthetic and Artificial Stable Fibers	55.13 55.15	Çin Halk Cumhuriyeti	China, P.R	2012/10	2013-05-05	28638	87%	DK	2018-05-05
DMS.221.00.2012	MM	Paslanmaz Çelik Borular	Welded Stainless Steel Tubes, Pipes & Profiles	7306.40.20.90.00 7306.40.80.90.00 7306.61.10.00.00	Çin Tayvanı	Chinese Taipei	2013/4	2013-03-15	28588	% 7,98 - %14,05	DK	2018-03-15
DMS.221.00.2012	MM	Paslanmaz Çelik Borular	Welded Stainless Steel Tubes, Pipes & Profiles	7306.40.20.90.00 7306.40.80.90.00 7306.61.10.00.00	Çin Halk Cumhuriyeti	China, P.R	2013/4	2013-03-15	28588	%13,82 - %25,27	DK	2018-03-15
DMS.218.00.2011	PK	İplikler - Vulkanize Edilmiş Kauçuktan İplik ve İpler	Vulcanised rubber thread and cord	4007.00	Tayland	Thailand	2012/23	2012-11-27	28480	% 4,37 - %8,75	DK	2017-11-27
NGS.180.01.2011	MM	Boru Bağlantı Parçaları - Demir veya Çelikten	Fittings	7307.19	Bulgaristan	Bulgaria	2012/10	2012-05-22	28300	400 \$/Ton	DK	2017-05-22
NGS.180.01.2011	MM	Boru Bağlantı Parçaları - Demir veya Çelikten	Fittings	7307.19	Endonezya	Indonesia	2012/10	2012-05-22	28300	253-400 \$/Ton	DK	2017-05-22
NGS.180.01.2011	MM	Boru Bağlantı Parçaları - Demir veya Çelikten	Fittings	7307.19	Hindistan	India	2012/10	2012-05-22	28300	305-400 \$/Ton	DK	2017-05-22
NGS.180.01.2011	MM	Boru Bağlantı Parçaları - Demir veya Çelikten	Fittings	7307.19	Tayland	Thailand	2012/10	2012-05-22	28300	147-400 \$/Ton	DK	2017-05-22
NGS.180.01.2011	MM	Boru Bağlantı Parçaları - Demir veya Çelikten	Fittings	7307.19	Brezilya	Brazil	2012/10	2012-05-22	28300	400 \$/Ton	DK	2017-05-22

Excel 자료를 옆으로 넘기면 건 별 최초의 덤핑조치부터 중간재심, 종료재심, 우회덤핑, 그리고 추가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면 각 건에 대해 관보에 게재된 공고와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도표

List of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2/2)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3	ORJİNAL DUMPİNG ÖNLEMİ / ORIGINAL DUMPİNG MEASURE			ARA GÖZDEN GEÇİRME / INTERIM REVIEW			NİHAİ GÖZDEN GEÇİRME / EXPIRY REVIEW			ÖNLEMLERİN ETKİSİZ KILINMASI / CIRCUMVENTION			SÜBVANSİYONA KARŞI ÖNLEM / ANTI-SUBSIDY MEASURE		DİĞER İLGİLİ TEBLİĞLER / OTHER RELATED COMMUNIQUE		
4	ACILIS TEBLİĞİ ile RG TARİHİ ve NO	MEASURE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KESİN ÖNLEM TEBLİĞİ ile RG TARİHİ ve NOS	ACILIS TEBLİĞİ ile RG TARİHİ ve NOS	KAPANIS TEBLİĞİ ile RG TARİHİ ve NO	ARA GGS SONUCU	ACILIS TEBLİĞİ ile RG TARİHİ ve NO	KAPANIS TEBLİĞİ ile RG TARİHİ ve NOS	NİHAİ GGS SONUCU	ACILIS TEBLİĞİ ile RG TARİHİ ve NOS	GEÇİCİ ÖNLEM TEBLİĞİ ile RG TARİHİ ve NOS	KAPANIS TEBLİĞİ ile RG TARİHİ ve NOS	OEKS SONUCU	ACILIS TEBLİĞİ ile RG TARİHİ ve NOS	MEASURE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TEBLİĞİ ile RG TARİHİ ve NOS	(YENİ İHRACATÇI, DEĞİŞİKLİKLER GİBİ)
5	INITIATION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MEASURE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DEFINITIVE MEASURE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INITIATION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RESULT OF INTERIM REVIEW	INITIATION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RESULT OF EXPIRY REVIEW	INITIATION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PROVISIONAL MEASURE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RESULT OF CIRCUMVENTION INVESTIGATION	INITIATION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MEASURE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MEASURE COMMUNIQUE NO and DATE & NO of O.G.	NEW EXPORTERS, CHANGES etc.
2008/8- RG.30/9/2008-24186			2001/2- RG.15/2/2001-24319				2012/13- RG.13/06/2012-28322	2013/10- RG.05/05/2013-28038	Önlemin aynı şekilde devam etmesi								
2012/9- RG.19.04.2012-28269			2013/4- RG.15.03.2013-28269														
2012/9- RG.19.04.2012-28269			2013/4- RG.15.03.2013-28269														
2011/23- RG.28/11/2011-28127			2012/23- RG.27/11/2012-28480														
2005/10- RG.27/4/2005-25798			2006/24- RG.07/09/2006-26282				2011/11- RG.10/06/2011-27960	2012/10- RG.22/05/2012-28300	Önlemin aynı şekilde devam etmesi								
2005/10- RG.27/4/2005-25798			2006/24- RG.07/09/2006-26282				2011/11- RG.10/06/2011-27960	2012/10- RG.22/05/2012-28300	Önlemin aynı şekilde devam etmesi								
2005/10- RG.27/4/2005-25798			2006/24- RG.07/09/2006-26282				2011/11- RG.10/06/2011-27960	2012/10- RG.22/05/2012-28300	Önlemin aynı şekilde devam etmesi								
2005/10- RG.27/4/2005-25798			2006/24- RG.07/09/2006-26282				2011/11- RG.10/06/2011-27960	2012/10- RG.22/05/2012-28300	Önlemin aynı şekilde devam etmesi								
98/4- RG.13.07.1999-23754			2000/2- RG.27/4/2000-24032				2011/11- RG.10/06/2011-27960	2012/10- RG.22/05/2012-28300	Önlemin aynı şekilde devam etmesi								Orjinal önlemin sona ermesinde beraber çalışan ile NGS/GS.07/09/2006 tarih ve 28282 sayılı Resmi Gazete ile yayımlanan 2005/23 sayılı Tebliğ ile sona erdirilmiştir.
98/4- RG.13.07.1999-23754			2000/2- RG.27/4/2000-24032				2011/11- RG.10/06/2011-27960	2012/10- RG.22/05/2012-28300	Önlemin aynı şekilde devam etmesi								Orjinal önlemin sona ermesinde beraber çalışan ile NGS/GS.07/09/2006 tarih ve 28282 sayılı Resmi Gazete ile yayımlanan 2005/23 sayılı Tebliğ ile sona erdirilmiştir.
99/3-			2000/2-				2011/11-	2012/11- RG.	Önlemin aynı şekilde devam etmesi								Orjinal önlemin sona ermesinde beraber çalışan ile NGS/GS.08/09/2006 tarih ve 28283 sayılı Resmi Gazete ile yayımlanan 2005/23 sayılı Tebliğ ile sona erdirilmiştir.

반덤핑관세는 specific duty 또는 종가세(ad valorem) 방식(수입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반덤핑관세 부과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덤핑 및 산업피해를 다룬 가장 최근의 검토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

⑧ 중간재심(Interim Review)⁵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공동체 생산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는 조치의 지속적인 부과 필요성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간재심 진행 이후 반덤핑관세는 철회될 수도 있으며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이 유지되거나 증액 또는 감소될 수 있다.

⑨ 종료재심(Expiry Review) 또는 일몰재심(Sunset Review)⁶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치는 5년 간 유효하며, 동 기간이 만료되면 덤핑 및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터키에서의 종료재심은 국내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위원회의 주도로는 개시될 수 없다. 국내 생산자는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 지속적인 덤핑과 피해가 있고
- ✓ 현재 부과중인 반덤핑조치에 의해 피해가 제거되었고,
- ✓ 반덤핑조치가 만료된다면 추후 덤핑과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

반덤핑조치가 시행 중인 마지막 해에는 관보를 통해 조치가 만료될 것이라는 통지가 게재되는데, 국내 생산자가 종료재심 검토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치가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

종료재심 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개시 공고문을 발표하고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검토는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만 상황에 따라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종료재심에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종료재심 검토는 조치의 종료,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 지속 또는 증액 및 감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 다시 5년 간 연장된다. 재심 검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비협조를 사유로 기존 현행 반덤핑관세율이 증가될 수 있다⁷.

⑩ 신규수출자재심(New Exporter Review)⁸

신규수출자재심이란 기존 반덤핑조사 당시에는 수출실적이 없어 All Others Rate을 적용 받게 된 신규 수출자가 고유의 덤핑마진율을 적용 받아 반덤핑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 신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써의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⁵ 불공정 경쟁 방지법 (Regulation) 제34조

⁶ 불공정 경쟁 방지법 (Regulation) 제35조

⁷ Trade Remedies Consulting, "Expiry Review Investigations".

(http://www.traderemedies.com/uygulama_detay/Expiry_Review_Investigations/14)

⁸ 불공정 경쟁 방지법 제36조

- ✓ 원심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한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 ✓ 원심 조사기간 이후에 수출했거나, 또는 터키로의 수출량이 상당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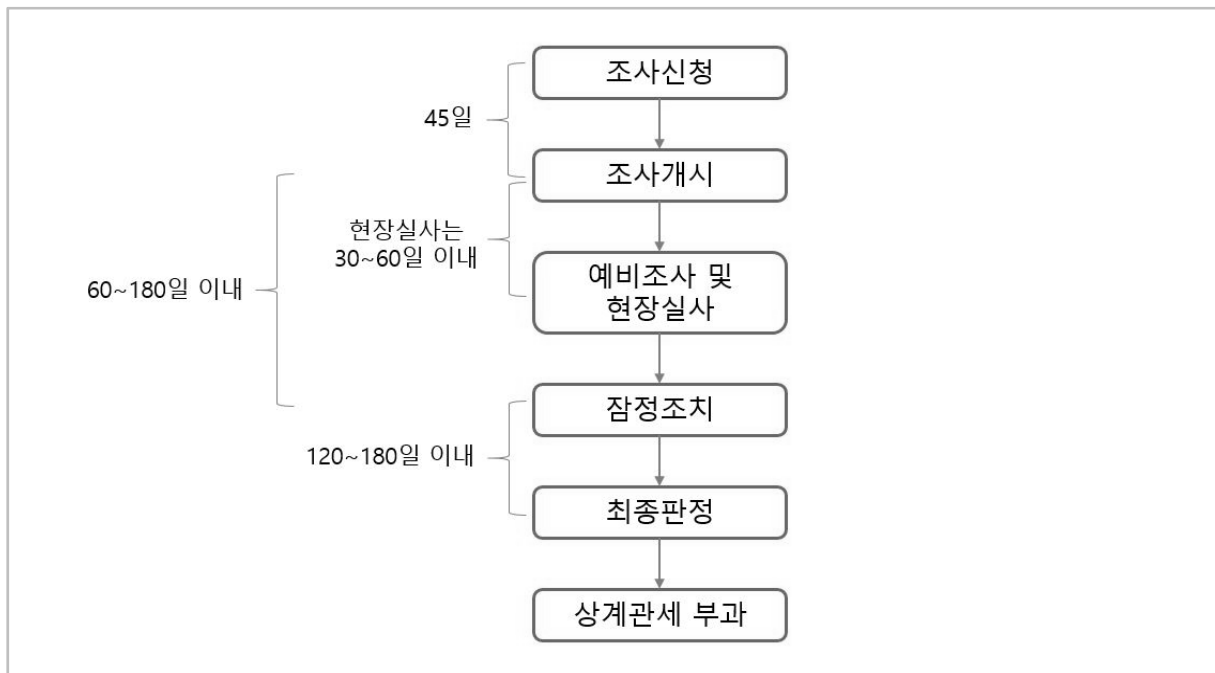
⑪ 우회덤핑⁹

터키 국내제조업자들은 반덤핑관세의 효력이 수출자들의 우회 행위로 인해 상실되고 있는 경우, 수입총국에 우회덤핑 조사 개시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입총국의 직권 조사가 개시될 수도 있다.

라) 상계관세 조사절차

터키는 현재까지 단 두 차례만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인도와 중국에 대해 각각 2008년과 2015년에 개시한 것인데, 인도의 PET 필름에 대해서만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없이 조사가 종료 되었다. 2009년부터 부과된 상계관세는 종료재심에 따라 2020년 9월까지 연장되었다.

도표 상계관세 조사절차



⁹ 불공정 경쟁 방지법 제38조

① 제소장 접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피해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내 생산자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법인 또는 협회는 조사부에 서면으로 제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소장에는 보조금 지급사실에 대한 증거와 그에 따른 피해, 또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한다.

② 조사개시

조사부는 4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조사 개시 여부를 평가위원회에 제안하게 된다. 보조금이 지급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위원회가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문을 게재한다. 공고문에는 조사개시일, 해당제품, 수출국, 보조금 수입에 대한 주장 및 피해의 원인이 되는 근거, 그리고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기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보조금의 지급 규모나 당해 보조금이 지급된 물품의 수입량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가 개발도상국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따른다. 개발도상국인 경우 그 '개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소 보조금률을 완화해 주었으며, 중진국과 선진국에는 허용하지 않는 미소 물량 기준을 추가하였다.

- ✓ 보조금율이 1% 이하일 때
- ✓ 개발 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보조금율이 2% 이하
 - ii. 당해 개도국이 전체 대상물품 수입의 4% 미만을 차지하거나, 여러 개도국이 연루된 경우 개도국들이 각각 4% 미만을 차지하면서 개도국들로부터의 대상물품 수입액 총합이 전체 대상물품 수입총액의 9% 미만인 경우

③ 답변서 제출

상계관세조사는 정부의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국 정부에도 질문서가 발송된다. 질문서는 우편으로 송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계관세는 동일한 보조금에 대해 기업과 정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양측의 정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대응해야 한다.

④ 잠정조치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터키 무역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된 보조금율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이하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사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과되며, 기간은 4개월로 한정되어 있지만, 국내 생산기업 요청과 평가위원회의 판단 및 장관의 승인에 따라 6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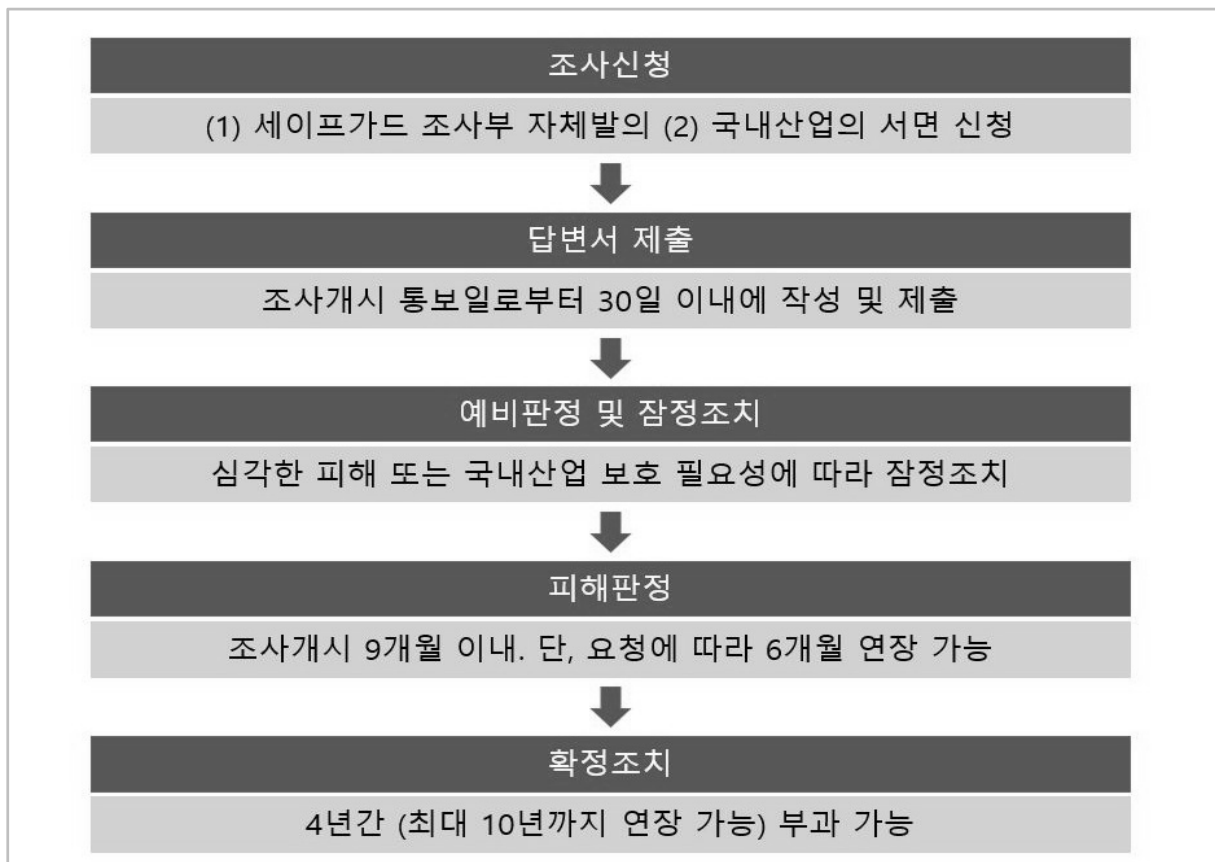
⑤ 최종판정 및 관세부과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그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해 긍정(affirmative; 혐의 존재) 판정이 내려지면 그 보조금 금액에 상응하는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이하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최종판정금액이 잠정조치로 인해 제공된 담보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최종판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 중 발생한 담보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마)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터키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세이프가드 조사절차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의 진행과정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도표 터키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① 조사신청

수입총국 산하에 있는 세이프가드 조사부(Department of Safeguard Investigations, 이하 Department)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 터키 국내산업의 서면신청으로 개시할 수도 있다. Decree No. 2004/7305 제1조에서는 수입량의 증가가 터키 국내에서 직접 경쟁하는 물품 또는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피해의 위협 야기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답변서 제출

조사개시가 발표된 후 당해 조사와 관련된 자들은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질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ID와 Password가 주어지는데 이는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의 수 년 동안의 재무, 판매 및 비용 데이터를 요청한다.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한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 자주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답변서는 웹상에서 직접 작성하지 말고, 별도의 파일로 작성을 완료한 뒤, 옮기면서 수시로 중간 저장을 하기를 권한다. 모든 답변과 증빙 자료는 터키어로 제출되어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개별 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자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③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

예비판정에서 수입 증가로 인해 동종물품이나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부는 각료 이사회에 잠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터키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은 일반적으로 WTO 규정과 부합하지만, 잠정 조치의 적용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¹⁰.

④ 피해판정

무역부 장관은 해당 제품이 다량으로 수입되었고 이로 인해 동종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거나 동 위협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후, 최종적으로 터키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¹⁰ The International Trade Law Review. 2017.

⑤ 확정조치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여부가 결정되는데, 산업피해 판정에 있어 부정(Negative) 판정을 받은 경우 조사가 종료된다. 긍정(affirmative) 판정이 내려진 경우 '관세인상, 수량제한 및 관세율쿼터'의 방식으로 확정조치를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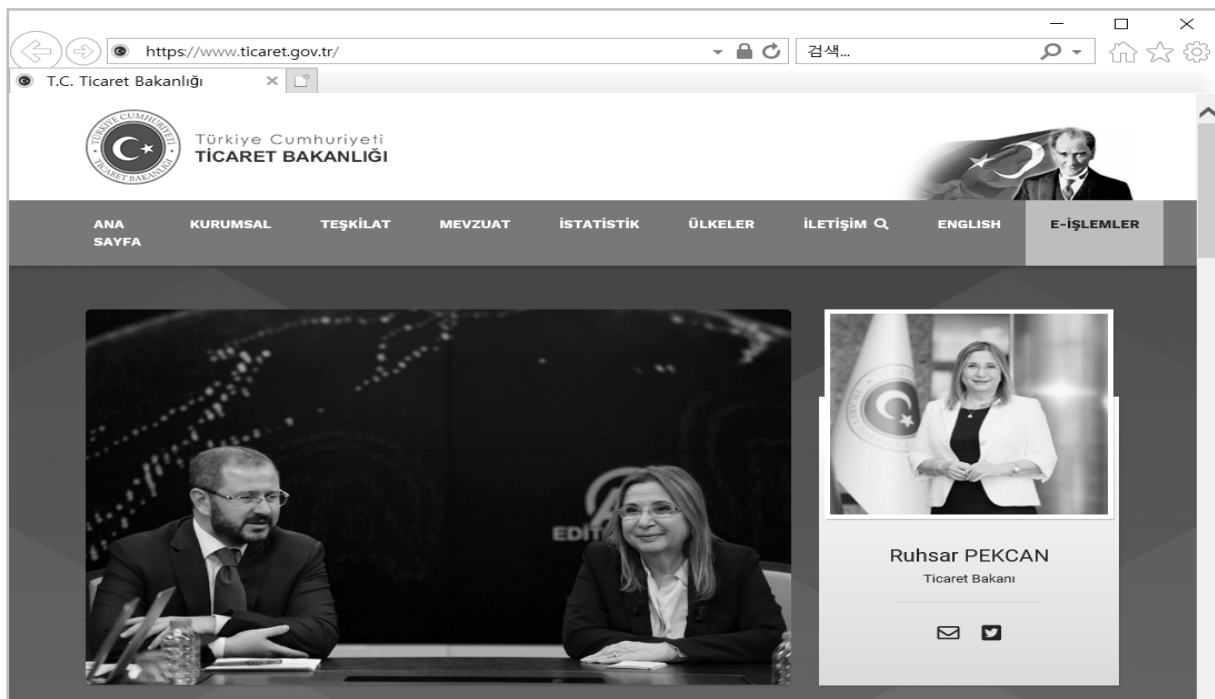
- ✓ 관세인상
- ✓ 수량제한
- ✓ 관세율쿼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지속 기간은 4년으로, 추후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국내생산자가 내부 시장의 조건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를 입증할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WTO 회원국에 대해 총 적용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터키경제부 홈페이지 쉽게 알기

터키경제부 홈페이지는 영어로 구성된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영어 버전의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면 메뉴가 상이하고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터키어 버전으로 접속했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터키어 버전의 웹페이지로 접속하여 웹페이지 번역기를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

도표 터키 경제부 홈페이지(1)



위 “TEŞKİLAT(Organization)” 메뉴의 좌측 중간 부분의 “İthalat Genel Müdürlüğü(General Directorate of Import)”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제공된다.

도표 터키 경제부 홈페이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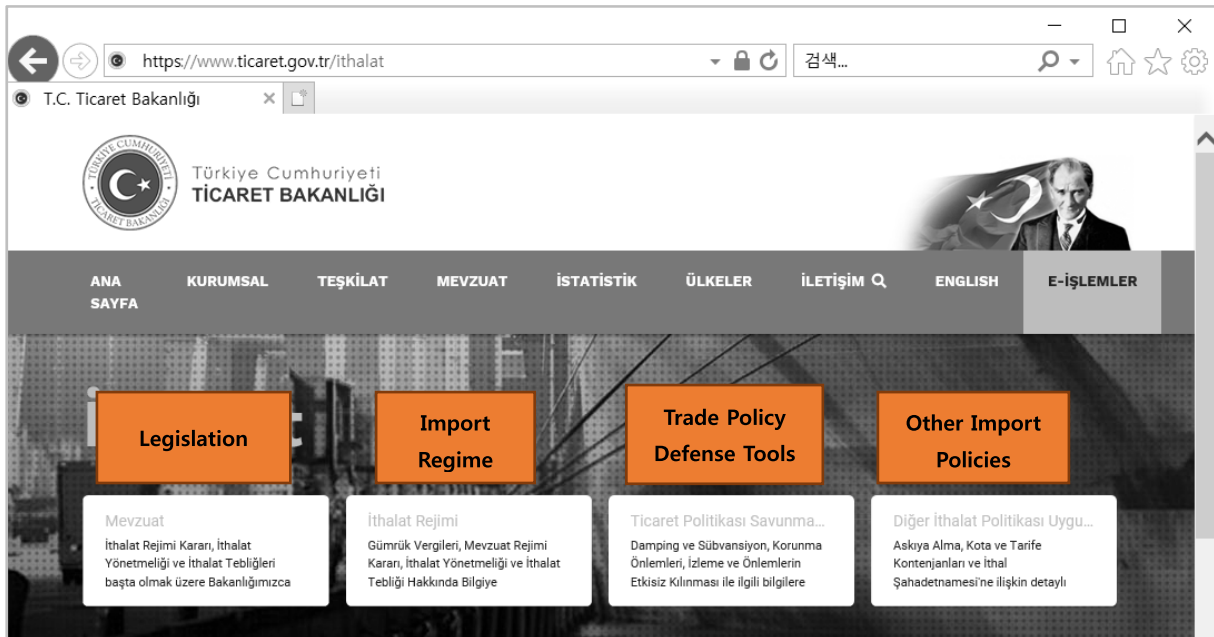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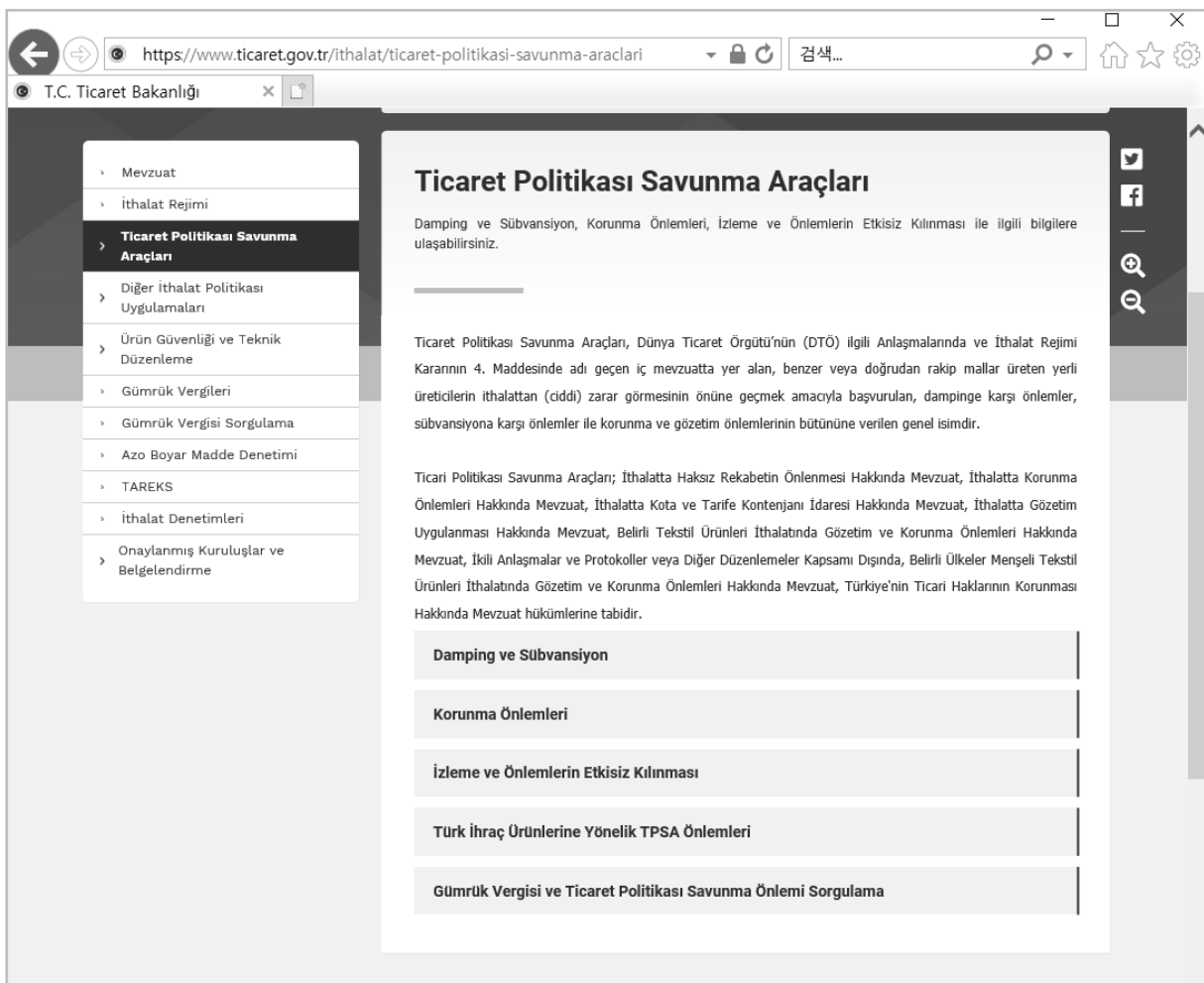


도표 터키 무역부 홈페이지(3)



3 사례 및 시사점

가) 고순도 테레프탈산 (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에 대한 반덤핑 조사

① 쟁점사항

터키 당국은 한국, 벨기에, 스페인산 PTA에 대해 2017년 2월 23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제조자는 1965년 설립된 종합석유화학회사인 Petkim Petrokimya Holding (이하, 'PETKIM')으로 터키 내 단일 생산자의 위치에 있었다. PETKIM은 이미 2012년 말 PTA (PET병의 주원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그에 따라 2014년 4월 11일부터 세이프가드로 인한 추가 관세가 1년차에 4%, 2년차에 3.75% 부과되었으나 2년에 걸친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일반관세가 6.5%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2013년 FTA발효로 인해 0%가 적용됨에 따라, 세이프가드로 인한 수입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세이프가드가 만료된 직후, PETKIM사는 반덤핑 조사를 재신청하였다. 터키 내 독점적 지위와 세이프가드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터키 조사당국은 2018년 6월 1일, 한국 2.76~12.37%, 스페인 7.12~9.79%, 그리고 벨기에에는 3.65~6.75%로 결정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반덤핑조치가 확정되는 듯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PETKIM사가 제소를 취하함으로써 당해 반덤핑조사는 조치 없이 종결되었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PETKIM사는 연일 높은 이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다수의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한 번 세이프가드를 통해 보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대한 반감이 터키 내 수요업체들로부터 크게 제기되었다. 이 사례는 터키 내부에서의 수입 수요에 대한 필요성과 단일의 생산자가 수입규제로 인해 얻게 될 독점이익 대비 하방산업 및 소비자 후생의 침해가 더 큼을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터키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역시 터키인으로서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수출자의 주장보다는 내국인인 소비자 혹은 수요산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휴대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① 쟁점사항

터키의 2대 가전회사인 Vestel사의 신청으로 2014년 12월,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됐다. 당시 약 1천만대 규모의 터키 휴대폰 시장에서 우리 기업은 약 6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미 스마트폰 제품이 주력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터키 국내산업은 여전히 피쳐폰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어 수입제품과 국내 생산 제품 간에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한 터키 경제는 1980년 이후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외무역이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GDP 6% 수준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한 긴축 정책과 더불어, 터키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위기 지속이 터키 성장을 둔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 정부는 2023년을 목표로 정보통신 기술의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터키 국내 기업들 뿐 아니라 외국 정부(특히, 무역불균형이 가장 큰 한국)에 터키 내 직접투자를 증대시켜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던 중이었다.

우리 업계는 자체적인 대응과 더불어 협회(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및 정부의 협조를 구하였다. 우리 업계는 당시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도 생산하고 있었는데, 각국의 수출자 자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였으며, 또 터키 수입자 자격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협회 차원에서는 조사 대상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 대만 4개국 협회 공동 명의로 터키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터키 경제부 장관과의 면담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주터키 대사와 외교부 담당자가 터키 정부를 수시 방문, 조사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와 정보를 공유했다. WTO 세이프가드 정례회의에서도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다각도로 긴밀하게 대응하였다. 그 결과, 조사개시로부터 15개월 만인 2016년 3월 4일, 수입물품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치 없이 조사가 최종 종결되기에 이르렀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수입국 국내산업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구 노력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 제도를 활용하고, 수출기업 역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함으로써 대응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수입규제 조치들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별 기업차원의 대응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영업부서 뿐 아니라, 연구개발부서와 전략기획부서, 회계부서가 합심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조사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과 협회, 우리나라와 다른 수출국들, 우리 정부와 현지 대사관, 수출자와 현지 소비자 간의 협업을 통해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III

일본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개요
2. 제도 및 절차
3.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개요

일본은 수입규제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경제산업성에서 재무성, 산업소관성청과 공동으로 수입규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로 수입규제 관련 상담을 접수 받고 있다. 아울러,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관계성청, 수입규제관련 정보 및 WTO의 각 수입규제조치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WTO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기타 국가들에 비해 수입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국기업이 수입규제제도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점이 확인된다.

화면 수입규제조치 관련 링크집¹

MENU

- 貿易救済措置とは /パンフレット
- 申請手続き・課税までの流れ
- モデル申請書
- アンチ・ダンピング関税 (AD) 措置
- 相殺関税 (CVD) 措置
- セーフガード (SG) 措置
- ニュースレター
- 最近の調査開始・発動事例
- 最近の制度改正
- よくある質問
- 説明会のご要望
- リンク集

リンク集

- 国内関係省庁
 - 経済産業省 産業構造審議会貿易経済協力分科会 特殊貿易措置小委員会
 - 財務省 関税・外国為替等審議会関税分科会 特殊関税部会
 - 財務省税関 特殊関税制度
 - 農林水産省 セーフガード関連情報
 - 経済産業省 対外経済通商政策総合サイト(WTO関連情報)
 - 外務省 外交政策経済外交サイト(WTO)
- 世界貿易機関(World Trade Organization:WTO)
 - 世界貿易機関(WTO)トップページ
 - 世界貿易機関(WTO)アンチ・ダンピング関税措置
 - 世界貿易機関(WTO)補助金相殺関税措置
 - 世界貿易機関(WTO)セーフガード措置

MENU

- 무역구제조치란?/ pamphlet
- 신청수속·과세까지의 흐름
- 모달신청서
- 반덤핑관세(AD)조치
- 상계관세(CVD)조치
- 세이프가드(SG)조치
- 뉴스레터
- 최신의 조사개시·발동사례
- 최신의 제도개정
- 자주있는 질문
- 설명회의 요망
- 링크집

링크집

- 국내관계성청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무역경제협력분과회 특수무역조치소위원회
 - 재무성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
 - 재무성 세관 특수관세제도
 - 농림수산성 세이프가드 관련정보
 - 경제산업성 대외경제통상정책종합사이트(WTO관련정보)
 - 외무성 외교정책경제외교사이트(WTO)
- 세계무역기관(World Trade Organization:WTO)
 - 세계무역기관(WTO)홈페이지
 - 세계무역기관(WTO)반덤핑관세조치
 - 세계무역기관(WTO)보조금상계관세조치
 - 세계무역기관(WTO)세이프가드조치

¹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link.html

도표 일본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5~2017)

(단위: 건)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계
반덤핑	-	-	-	-	2	-	-	-	-	-	4	-	-	-	-	1	-	1	2	1	2	13
상 계 관 세	-	-	-	-	-	-	-	1	-	-	-	-	-	-	-	-	-	-	-	-	-	1
세이프 가 드	-	-	-	1	-	-	-	-	-	-	-	-	-	-	-	-	-	-	-	-	-	1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은 WTO 출범 이래 15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그 중 반덤핑이 1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도표 조사대상국별 일본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7)

(단위: 건)

국 가	중국	호주	한국	대만	남아공	인도네시아	스페인	총계
건 수	5	1	3	1	1	1	1	13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13건 중 5건(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4건(30.8%)으로 두 번째이며, 대만, 남아공, 인도네시아, 스페인이 각각 1건을 기록하고 있다.

도표 일본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번 호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규제시작일
1	철강제 관연결구류	AD (규제중)	2017-03-31	2018-03-31
2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AD (규제중)	2015-05-26	2016-08-09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2

제도 및 절차

가) 관련 법령

일본은 수입규제조치의 조사개시 및 관세부과 요건에 대해서 관세정률법 및 정령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과세신청, 조사개시, 가격약속, 잠정조치 등 조사절차와 운용지침을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에 대해 「부당염매관세」라는 국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세정률법 8조」, 「부당염매관세에 한 정령」,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수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으며, 상계관세조치의 경우 「관세정률법 7조」, 「상계관세에 관한 정령」, 「상계관세에 관한 수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크게 수량제한조치와 관세조치로 나뉘는데 수량제한조치의 경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화물수입의 증가 시 긴급조치 등에 관한 규정」, 「화물수입의 증가 시 긴급조치에 관한 수속에 대한 가이드」, 관세조치의 경우 「관세정률법 9조」, 「긴급관세에 관한 정령」, 「긴급관세에 관한 수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조치를 법률로써 규정 및 운영하고 있다.

도표 수입규제조치 관련 일본 국내법령²

번 호	구 분	법 령
1	반덤핑관세	1. 관세정률법 8조 2.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정령 3.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수속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2	상계관세	1. 관세정률법 7조 2. 상계관세에 관한 정령 3. 상계관세에 관한 수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3	세이프가드관세	1. 관세정률법 9조 2. 긴급관세에 관한 정령 3. 긴급관세에 관한 수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²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kaisei.html

일본은 2000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정령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는데, 조사신청자의 의무 축소, 질문장 등 증거자료의 표준양식 설정, 조사개시요건 완화 등 국내의 이해관계자가 수입규제조치를 신청함에 있어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조사수속의 원활화 및 투명화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항목을 보면, 2004년 3월 이루어진 개정을 통해, 정령에서 정한 「국내 생산자」의 정의가 수정되었는데 동종 화물 등을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입한 생산자에 대해서, 「국내 생산자」 범위로부터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기존의 형태를 개정해, 그 주된 사업이 국내생산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2009년 4월 이루어진 개정을 통해, 수입규제관세의 과세요청과 조사개시의 수속, 잠정조치 등의 전제가 되는 「가결정」의 수속에 대해 명확화하고 국내생산자의 증거 제출양식과 조사 당국의 질문장의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과세요청 제출서면 작성을 개정하는 등 조사수속의 투명성향상과 조사업무의 원활화를 가능케 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세 차례의 추가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반덤핑관세의 조사신청과 관련한 국내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1년 4월에 이루어진 개정을 통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조사개시요건을 완화했다. 해당 개정 전의 제도에서는, 조사개시의 요건(지지의 상황)으로서, 조사신청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액」이 「반대자, 찬반불명자 및 수입생산자 등의 생산액」의 합계를 상회할 필요가 있었으나, 해당 개정을 통해 「찬반불명자」를 지지의 상황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도표 조사개시 요건 개정



2016년 5월 개정을 통해서도 반덤핑관세와 관련, 생산자단체에 의한 과세신청요건이 완화되었다. 개정 전에는, 단체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조사신청에 관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생산자일 필요가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당해 단체의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당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생산자이면 과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자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2017년 4월의 개정에서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조사신청 및 개시의 수속과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조사신청자는 신청 시 국내산업의 상당한 부분(총 생산액의 대략 50% 이상)의 손해지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과세신청의 지지가 반대를 상회하고 있음(조사개시의 요건)을 확인해 신청서에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범위의 손해지표를 제출하면 되고 조사신청자가 지지상황에 의한 조사개시의 요건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에 조사신청자를 대신해 산업소관성청이 과세신청에 대한 지지상황을 국내생산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사신청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신청·조사개시의 요건확인 시 수입생산자(국내생산과 동시에 조사대상화물의 수입도 하는 자)를 포함해 판단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신청·조사개시의 요건확인 시, 수입생산자를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했다. 이로써, 국내생산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개시하게 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최종발동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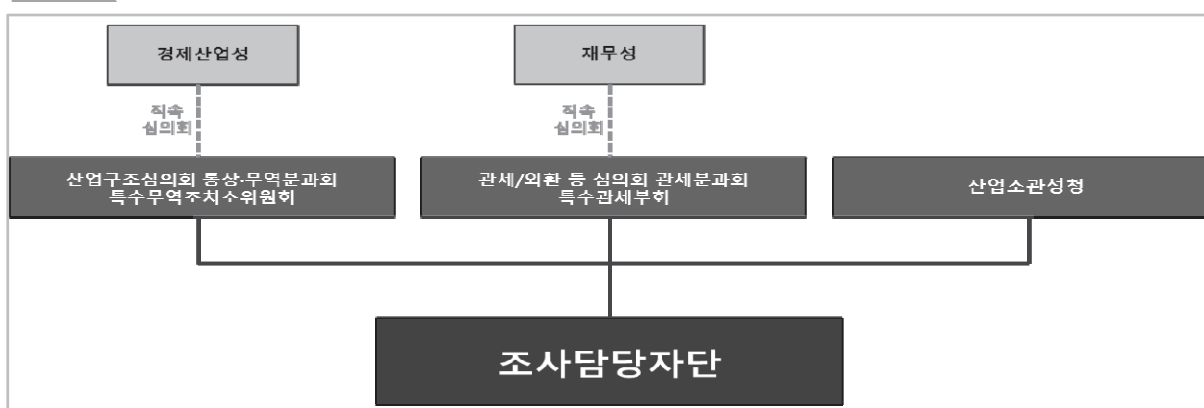
도표 2000년 이후 수입규제 국내법령 개정일자 및 주요 내용

번호	개정일자	주요 내용
1	2017.04	신청서의 기재사항, 조사신청 및 개시의 수속과 요건 완화
2	2016.05	생산자단체에 의한 과세신청요건 완화
3	2011.04	조사개시의 요건(지지의 상황) 완화
4	2009.04	조사개시 및 가결정의 수속 명확화, 질문장의 표준양식 마련
5	2004.03	국내 생산자의 정의 수정

나) 유관기관

일본의 경우, 수입규제조치를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경제산업성에서 재무성, 산업소관성청과 조사담당자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조사신청에 근거한 수입규제조치의 조사를 실시한다.

도표 일본의 수입규제 유관기관



①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특수무역조치소위원회

경제산업성은 총 13개의 직속 심의회를 두고 있고 통상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산업구조심의회를 개설하고 있다. 특히 2013년 7월, 산업구조심의회법 제6조를 근거로 통상을 포함한 대외경제정책을 심의하는 통상·무역분과회가 설치되었으며 담당 기능은 아래와 같다.

- ✓ 통상과 관련한 시책 및 기타 통상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심의
- ✓ 무역과 관련한 시책 및 기타 무역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심의

② 재무성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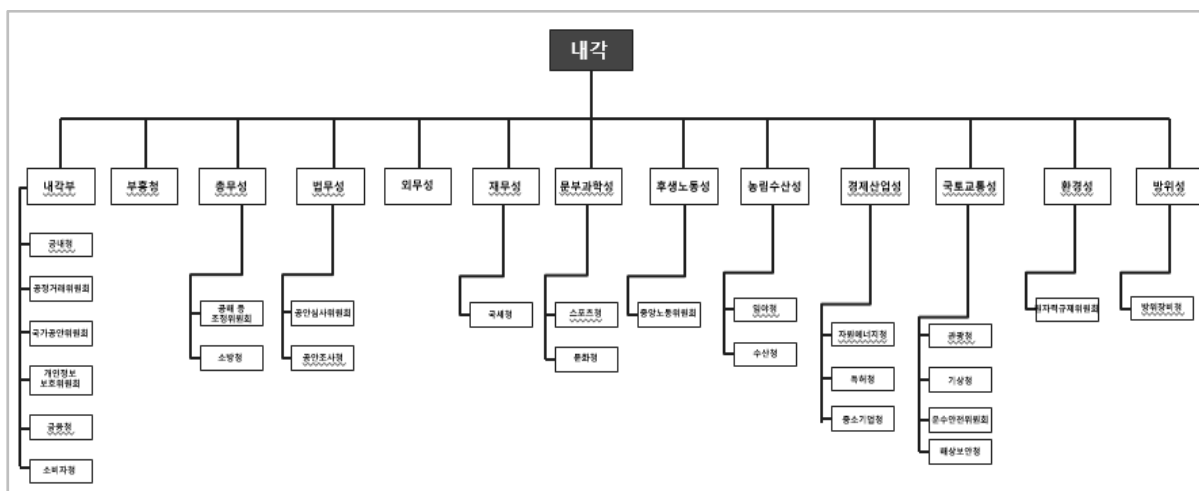
수입규제 관련 관세를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재무성에서는 산하에 총 4개의 직속 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이 중 관세/외국환을 전담하는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아래 관세분과회 및 특수 관세부회를 개설해 특수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종심의를 주도하고 있다. 담당 기능은 아래와 같다.

- ✓ 관세율 개정 및 기타 관세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심의
- ✓ 상계관세에 관한 사항처리

③ 산업소관성청

실제로 조사를 주도하는 재무성과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덤핑 대상 화물에 대한 인식과 당해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한 면이 있어 실제 당해 화물의 수입이 속한 산업을 소관하는 성청이 조사담당자단으로 참여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규명하도록 되어 있다. 내각부를 포함해 일본 내각에 포함되어 있는 성은 총 13개이며 하위에 각각 청을 두어 내각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도표 **내각 성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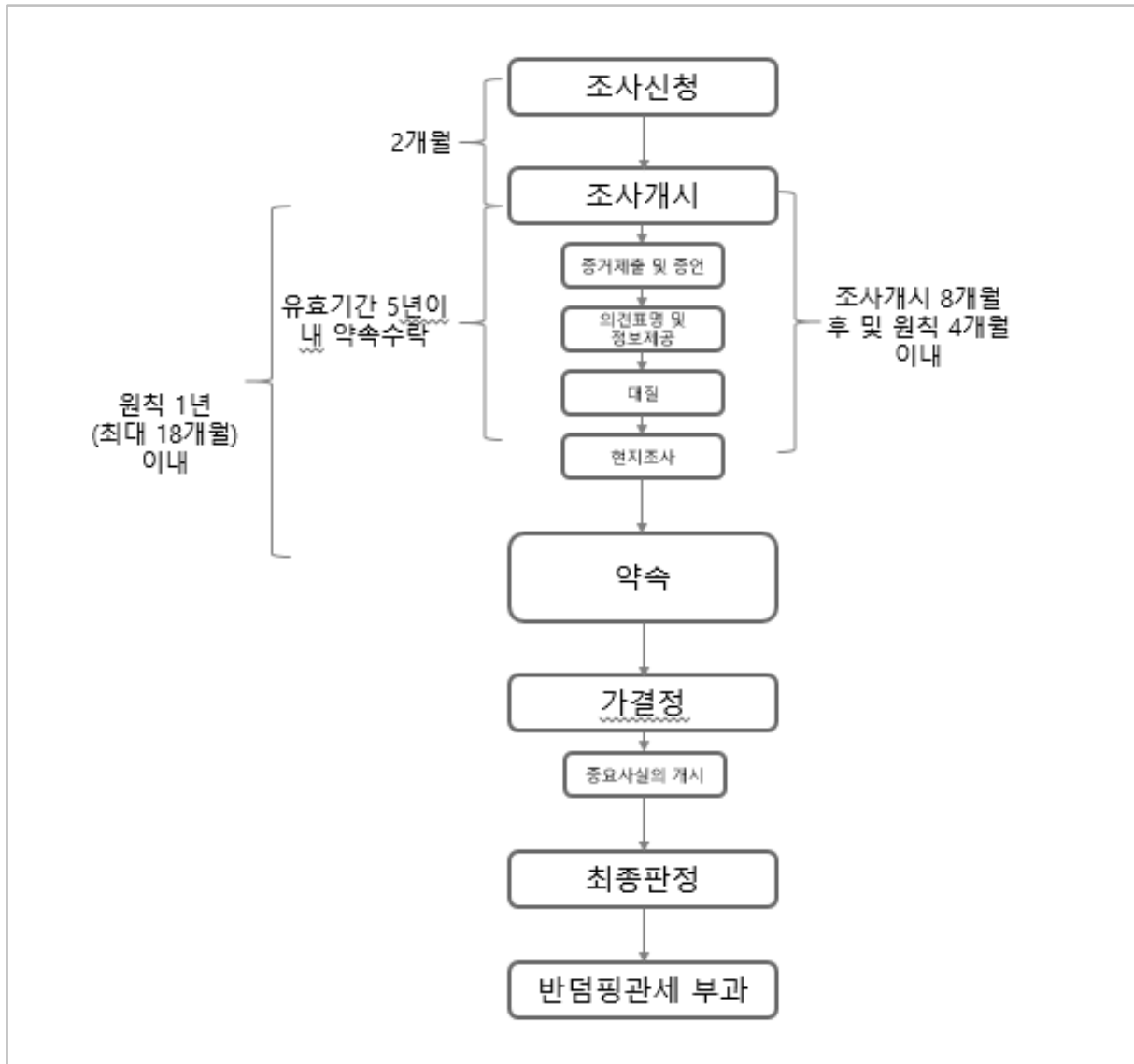
각 성칭 별 구체적인 소관사업은 아래와 같다.

도표 **성칭 별 소관사업 일람**

내 각	소 관 사 업
재무성	귀금속(금속제품 제외)의 판매 또는 수출입/주류, 담배 또는 소금의 제조, 판매 또는 수출입/통관업
농 립 수산성	<p>농림수산(축산 포함)/농림수산물(축산물 포함)의 판매, 수출입 다음에 관련한 제조(기기, 가공진주, 목재칩 또는 나무통·나무통재료), 판매(기기, 가공진주 또는 목재칩), 또는 수출입, 리스</p> <p>－ 식료품, 음료(주류는 미포함)(음식점은 후생노동대신과 공관, 풍속영업은 내각총리대신과 공관) · 식용아미노산 · 글루타민산소다 · 이스트 또는 효모제 · 동식물유지 · 사료 · 얼음 · 비료 · 농약(후생노동대신과 공관) · 동식물용의약품 · 동식물용의료기기 · 농업용기계 · 농업용트랙터 · 농기구· 온실 · 원예용품 · 생사 · 삼연사 · 목재 · 목제품(목재칩, 나무통·나무통재료 포함, 도장한 단판·합판 미포함) · 진주(양식·가공제 포함) · 장신구(진주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영양식품(후생노동대신과 공관) · 건강식품(후생노동대신과 공관) · 염색 전 가족 · 정세 전 익모 · 식품첨가물(후생노동대신과 공관) · 식육가공제품(후생노동대신과 공관)</p> <p>농림원예용 시설의 자재의 제조판매/목재약품 처리업/조원업/토지개량사업(국토교통대신과공관)/급식판매중개(후생노동대신은 불요)/동물혈청·혈액의 수출입, 정제, 가공(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과 공관)</p>
후 생 노동성	<p>다음에 관련한 제조, 판매, 리스, 수출입</p> <p>－ 의약품(동,식물용 제외) 의약품의 원재료, 약초(재배 등은 농림수산대신과 공관) · 의약부외품 · 화장품 · 화장용·약용비누 · 독극물(농업용은 농림수산대신과 공관) · 식품첨가물(농림수산대신과 공관) · 식육가공제품(농림수산대신과 공관) · 영양식품(농림수산대신과 공관) · 건강식품(농림수산대신과 공관) · 의료· 위생용 고무제품 · 의료용 기기(동물용 제외) · 안경, 콘택트렌즈 · 건강유지용품 음식점(농림수산대신과 공관, 풍속영업은 내각총리대신과도 공관)/여관, 호텔(국제관광여관, 호텔은 국토교통대신과 공관)/세탁/이용/ 미용/공중, 특수욕장/영화관/극장/흥행장/임상검사/사회보험, 사회복지사업(경정보호사업 미포함)/정보·조사 기타 보건, 의료, 위생에 관한 사업/노동금고, 노동금고연합회(내각총리대신<금융청>과 공관)/사영직업소개소 /인재, 요원의 파견 또는 알선(강사의 파견 포함)</p>
국 토 교통성	<p>운송/포장/철도/삭도/항만운송관련사업/운송대리점/운송의 중개/선박중립(대도·매매·운항위탁의 알선)/준설/폐유처리/구조/해사업무(검수·검량·감정 등)/급사서비스/선박, 박용기기의 제조, 매매, 수출입 또는 리스/철도차량, 동부품, 레일 기타 육운기기(컨테이너 포함, 자동차 또는 원동기 부착 자동차 제외)의 제조, 판매 또는 리스/자동차의 소매, 리스/자동차의 정비/자동차터미널/항공기의 소매, 리스/여행/관광사업/국제관광여관, 호텔(후생노동대신과 공관)/창고/보관/주차장/자동차의 경주장/유원지/기상관측·예보 등/건설업(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총무대신과 공관), 관공사, 철골공사, 도장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 조원공사)/실내장식업/토지개량사업(농림수산대신과 공관)/건설, 부동산건설턴트/건설설계/측량/자동차도사업/부동산의 개발, 판매 또는 임대, 관리</p>
경 제 산업성	<p>수출입, 판매, 리스 외 화물의 통관, 생산, 에너지의 생산, 물류, 역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사업으로, 기타 대신의 전관 또는 기타 대신 간의 공관의 사업 이외의 사업. 이 중 경제산업대신과 기타 대신과의 공관으로서 다른 대신의 소관사업의 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으로, 다음과 같음</p> <p>－ 항공기(제조, 도매, 수출입) · 자동차(제조, 도매, 수출입) · 무기(제조, 매매, 수출입) · 도장한 단판, 합판(제조, 매매, 수출입) · 필름(제조, 매매, 수출입) · 귀금속(액세서리)의 가공 · 신문업 · 인쇄업 · 신용카드업 · 오락장 · 유희장(풍속영업은 내각총리대신과 공관, 음식점병설의 건물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과도 공관) · 운동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테니스클럽, 애슬레틱클럽, 수영장, 볼링장 또는 경륜장(음식점 병설의 건물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과 공관) · 건강개발사업 · 스포츠프로모션 · 흥신소 · 광고, 선전 · 경영컨설팅턴트 · 컴퓨터 요원의 연수(경제산업대신전관) · 집금대행</p>
환경성	<p>폐기물처리업(사업내용에 의해 경제산업대신, 문부과학대신과 공관)</p> <p>반려동물/반려동물용품 소매업(반려동물 소매업은 환경대신/경제산업대신의 공관, 반려동물용품 소매업은 경제산업대신의 전관)</p>

다) 반덤핑 조사절차

도표 반덤핑 조사절차



① 조사신청

신청서가 재무대신 앞으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부가 조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를 개시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경제산업대신, 산업소관대신에게 상호 통지하고 원칙적으로 조사를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덤핑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정상가격」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등) 과 「수출가격」에 관한 데이터로서,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범위에서 덤핑의 사실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② 조사개시

정부는 덤핑 화물의 수입 사실 및 당해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러한 사실 유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재무대신은 조사개시가 결정된 때에는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의 위원에 통지함과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조사개시에 이르게 된 사실을 동 부회에 설명한다. 또한, 조사개시가 결정된 때에는 관세정률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경제산업대신과 협의하여 재무부, 당해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성 및 경제산업성의 관계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자단을 설치한다.

화면 조사개시 조회3

MENU		最近の調査開始・発動事例				
1	貿易救済措置とは /パンフレット	アンチ・ダンピング関税(AD)措置				
2	申請手続き・課税までの流れ	No.	品名	国名	調査状況	課税状況
3	モデル申請書	A007.1	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大韓民国	調査終了	課税中
4	アンチ・ダンピング関税(AD)措置	A007.2	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中華人民共和国	調査終了	課税中
5	相殺関税(CVD)措置	A006.1	高重合度ポリエチレンテレフタレート	中華人民共和国	調査終了	課税中
6	セーフガード(SG)措置	A005.1	水酸化カリウム	大韓民国	調査終了	課税中
7	ニュースレター	A005.2	水酸化カリウム	中華人民共和国	調査終了	課税中
8	最近の調査開始・発動事例	A004.1	トルエンジイソシアナート	中華人民共和国	調査終了	課税中
9	最近の制度改正	A003.1	電解二酸化マンガ	スペイン	調査中	課税中
10	よくある質問	A003.2	電解二酸化マンガ	中華人民共和国	調査中	課税中
11	説明会のご案内	A003.3	電解二酸化マンガ	南アフリカ共和国	調査中	課税中
12	リンク集	A003.4	電解二酸化マンガ	オーストラリア	調査中	課税終了
相談窓口		A002.1	カットシート紙	インドネシア共和国	調査終了	—
		A001.1	ポリエステル短繊維	大韓民国	調査終了	課税終了
		A001.2	ポリエステル短繊維	台湾	調査終了	課税終了
		相殺関税(CVD)措置				

MENU		최신의 조사개시·발동사례 事例				
1	무역구제지침/판플렛	반덤핑관세(AD)조치 (AD) 措置				
2	신청수속·과세까지의 흐름	No.	品名	国名	調査状況	課税状況
3	모델신청서	A007.1	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大韓民国	調査終了	課税中
4	반덤핑관세(AD)조치	A007.2	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中華人民共和国	調査終了	課税中
5	상계관세(CVD)조치	A006.1	高重合度ポリエチレンテレフタレート	中華人民共和国	調査終了	課税中
6	세이프가드(SG)조치	A005.1	水酸化カリウム	大韓民国	調査終了	課税中
7	뉴스레터	A005.2	水酸化カリウム	中華人民共和国	調査終了	課税中
8	최신의 조사개시·발동사례	A004.1	トルエンジイソシアナート	中華人民共和国	調査終了	課税中
9	최신의 제도개정	A003.1	電解二酸化マンガ	スペイン	調査中	課税中
10	자주있는 질문	A003.2	電解二酸化マンガ	中華人民共和国	調査中	課税中
11	설명회의 요망	A003.3	電解二酸化マンガ	南アフリカ共和国	調査中	課税中
12	링크집	A003.4	電解二酸化マンガ	オーストラリア	調査中	課税終了
相談窓口		A002.1	カットシート紙	インドネシア共和国	調査終了	—
		A001.1	ポリエステル短繊維	大韓民国	調査終了	課税終了
		A001.2	ポリエステル短繊維	台湾	調査終了	課税終了
		相殺関税(CVD)措置				

³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izen.html

조사는 개시 이후 1년 이내 종료되며 특별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개시 후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표준적인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가 개시된 이후 증거제출 및 증언은 3개월 이내, 의견표명 및 정보제공은 4개월 이내, 대질은 5개월 이내, 현지조사는 6개월 이내, 가결정은 8개월 이내, 중요사실의 개시는 10개월 이내, 그리고 최종판정은 1년 이내이다.

조사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조사가 개시되지 않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취소 결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

- ✓ 당해 조사와 관련한 화물의 수출 가격에서 차지하는 덤핑 차액의 비율이 2% 미만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덤핑 화물의 수입량이 당해 화물의 전체 수입량의 3% 미만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과세의 요구 등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 당해 과세의 신청이 취소되어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조사 절차의 진행을 정당화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조사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증거제출

재무대신은 증거의 제출, 의견표명 및 정보제공의 요구 시, 이해관계자 또는 산업 상의 사용자 등에 질문장을 송부할 때에는 당해 질문장의 회답 기한을 조사사안 별로 질문장에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질문장의 회답기한은 송부 후 40일 이내이다. 이처럼, 정부가 반덤핑의 필요성 판단에 근거가 되는 질문장은 조사대상화물의 생산 및 수출자에 대한 것과 수입자에 대한 것, 국내 생산자에 대한 것 및 산업 상의 사용자에 대한 것으로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2009년 4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질문장의 표준양식이 통일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들은 조사의 질문항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각 질문장의 구체적인 Section 별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도표 조사대상화물의 생산자 및 수출자에 대한 질문장 Section 별 구성요소

Section	Title	Sub Title
A	일반적 정보	기업개요 조사대상화물 및 동종의 화물 생산개황 구입개황 판매개황 관련기업개황
B	일본 향 수출가격	일본 향 수출판매개황 조정이 필요한 비용항목개황 일본 향 개별수출거래

Section	Title	Sub Title
C	국내 향 판매가격	국내 향 판매개황 조정이 필요한 비용항목개황 국내 향 개별거래
D	제3국 향 수출가격	제3국 향 수출판매개황 조정이 필요한 비용항목개황 제3국 향 개별수출거래
E	구성가격	원재료, 설비 등 제조공정 원가계산 재무회계 재무제표 제조원가 일반경비 이윤

도표 조사대상화물의 수입자에 대한 질문장 Section 별 구성요소

Section	Title	Sub Title
A	일반적 정보	기업개요 전체 조직도 및 조사대상화물 및 동종의 화물과 관련한 조직 거래처 관련 정보, 동종품, 대용품, 경합 상황 원산국별 특징, 중시하는 요소 세계, 주요국, 일본 수급 정보 경쟁, 거래관행 정보
B	조사대상화물의 수입거래에 관한 정보	구체적인 수입 정보 개별수입거래에 관한 정보
C	수입한 조사대상화물의 국내판매	국내 판매 개황 판매처, 판매실적 판매처와의 교섭 과정(플로차트)
D	수입 또는 구입한 조사대상화물 및 동종의 화물의 국내판매	가격결정 거래형태 및 계약에 관한 정보(정기판매 계약 및 단발 판매계약) 시장활동 및 시장상황에 관한 정보
E	조사대상화물 및 동종의 화물의 원산국별 정보	수입량, 구입량, 판매량, 자가소비량 및 재고에 관한 정보

④ 현지조사

제공된 정보의 확인 또는 더 상세한 정보를 입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수출국의 공급자에 대해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지조사 시 증거의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시만으로는 증거의 제출로 간주하지 않음
- ✓ 증거는 서면으로의 제출과 함께 전자적 기록 매체에 의한 임의의 제출을 요구함
- ✓ 현지조사 당일에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답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현지조사 시에 제출한 증거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현지조사 전에 밝혀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현지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상자에 대해 현지조사 중에 제출한 증거 목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현지조사 중에 제출을 요구한 증거에 대해서는 당해 목록을 사용하여 요구한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함
- ✓ 조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질의응답을 녹음함
- ✓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적절한 통역을 사용함
- ✓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혹은 대상자의 협력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 이 때 현지 조사를 종료 한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이 적용됨

⑤ 가결정

정부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 충분한 증거에 따라 덤핑화물의 수입사실 및 당해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결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발동된다. 이 때, 당해 화물의 정상가격으로 추정되는 가격과 덤핑 가격으로 추정되는 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 정령으로 정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4개월 이내이다. 다만, 잠정조치가 취해지는 화물의 수출자가 당해 수출의 대략 50% 이상을 점하고 있고 사전에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요청한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조사개시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가결정/잠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가결정에서 덤핑 화물의 수입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지만, 당해 수입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계속를 검토하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추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한다. 가결정의 통지 및 고시 관련, 정부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에 직접 관계하는 이해관계자에 한해, 회답기한을 정하고 증거의 제출 및 의견표명을 요구한다. 가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당해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화면 당해 안전에 대한 정령·고시·자료 등 조회4

경제産業省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貿易救済措置
Trade Remedy Investigation

경제産業省 トップページ ▶ 政策別に探す ▶ 対外経済 ▶ 貿易管理 ▶ 貿易救済措置 ▶ 最近の調査開始・発動事例
▶ 大韓民国及び中華人民共和国産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MENU

- 貿易救済措置とは / パンフレット
- 申請手続き・課税までの流れ
- モデル申請書
- アンチ・ダンピング関税 (AD) 措置
- 相殺関税 (CVD) 措置
- セーフガード (SG) 措置
- ニュースレター
- 最近の調査開始・発動事例
- 最近の制度改正
- よくある質問
- 説明会のご要望

大韓民国及び中華人民共和国産の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品目	関税率表第7307.93号に掲げる物品のうち炭素鋼製溶接式継手		
特徴	流体を必要な場所を運ぶ役割を果たす配管において管と管を接続する等の用途に使用される配管部材であり、鋼材の種類が炭素鋼で、継手と配管の接続方式が突合せ溶接式のもの。		

項目	日付	政令・告示・資料等
申請	2017年 3月 6日	申請者: 株式会社ベンカン機工 日本バンド株式会社 古林工業株式会社
調査開始	2017年 3月31日	報道発表資料 資料1 資料2 告示
仮の決定	2017年 12月 8日	報道発表資料 中間報告書 告示
暫定措置決定	2017年 12月22日	報道発表資料 告示
暫定措置発動	2017年 12月28日	政令 告示
調査結果報告書公表	2018年 3月14日	報道発表資料 調査結果報告書
確定措置発動	2018年 3月31日	政令 告示
確定措置満了	2023年 3月30日	

경제産業省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貿易救済措置
Trade Remedy Investigation

경제産業省 トップページ ▶ 政策別に探す ▶ 対外経済 ▶ 貿易管理 ▶ 貿易救済措置 ▶ 最近の調査開始・発動事例
▶ 大韓民国及び中華人民共和国産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MENU

- 무역구제 조치란? / 팜플렛
- 신청수속·과세까지의 흐름
- 모델신청서
- 반덤핑관세(AD)조치
- 상계관세(CVD)조치
- 세이프가드(SG)조치
- 뉴스레터
- 최신의 조사개시·발동사례
- 최신의 제도개정
- 자주있는 질문
- 설명회의 요망

대한민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산의 탄소강재맞대기용접식피팅 式継手

품목	관세율표 제 7307.93호에 속한 물품 중 탄소강재맞대기용접식피팅		
특징	유체가 필요한 장소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배관에서 관과 관을 접속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배관부재이며, 강재의 종류가 탄소강으로, 피팅 및 배관의 접속방식이 맞대기용접식인 것		

項目	日付	政令・告示・資料等
신청	2017年 3月 6日	신청자: 주식회사 벤칸기공, 일본밴드주식회사 FKK주식회사
조사개시	2017年 3月31日	보도발표자료 자료1 자료2 고시
가결정	2017年 12月 8日	보도발표자료 중간보고서 고시
잠정조치결정	2017年 12月22日	보도발표자료
잠정조치발동	2017年 12月28日	정령 고시
조사결과보고서표	2018年 3月14日	보도발표자료 조사결과보고서
확정조치발동	2018年 3月31日	정령 고시
확정조치만료	2023年 3月30日	

⁴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tsugite.html

⑥ 약속

조사가 개시된 이후, 수출자는 조사당국에게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당해 물품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약속의 신청은 중요사실의 개시일의 10일 후까지 가능하다. 수출업자는 재무대신에게 가격약속 및 조사가 종료될 것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충분한 증거에 따라 덤핑수입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제시한 가격약속이 수락된다. 약속이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것이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 ✓ 약속 이행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 ✓ 약속 준수상황의 감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 ✓ 기타 약속의 수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편, 약속을 수락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약속에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시점에서 최대한 입수 가능한 정보에 따라 즉시 잠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관세정률법 제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동 규정에 의하여 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약속의 유효기간과 관련, 당해 약속의 수락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약속으로 정하는 날을 경과하는 날에 만료한다. 또한, 약속의 이행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 자료의 확인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 ✓ 조사 대상 화물의 수출국에서의 국내 판매에 관련한 정보 및 제3국 향 수출에 대해서 수출거래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
- ✓ 조사에 관련한 화물의 생산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
- ✓ 약속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정보를 필요한 경우 제출할 것
- ✓ 반덤핑 화물의 제3국에 의한 국내로의 반덤핑수출 및 제3국을 통한 국내로의 우회수출을 최대한 방지할 것
- ✓ 제공된 정보 등의 진실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검증의 실시를 무조건 및 수시로 수용할 것
- ✓ 약속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할 것

⑦ 최종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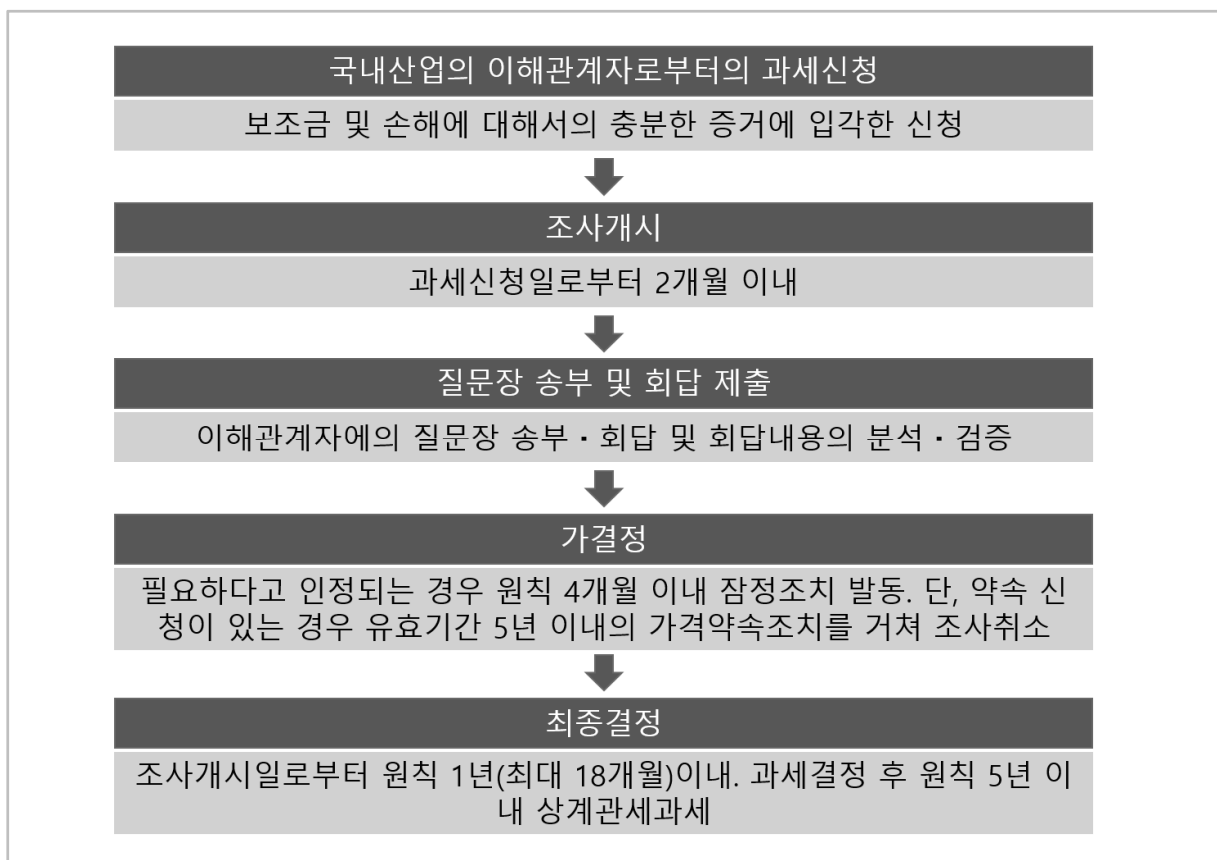
가결정 절차로부터 90~120일 이내에 조사가 종료하게 되며 조사종료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로부터 원칙 1년 이내(최대 18개월 이내)에 최종결정/관세부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전/조사내용에 따라, 과세까지의 기간은 다르다.

재무대신은 조사결과, 관세정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덤핑 관세를 변경하지 않음 또는 폐지하지 않음이 결정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취지 및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을 직접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당해 조사에 관련한 화물의 품명, 상표, 모델 및 특징
- ✓ 당해 조사에 관련한 화물의 공급자 또는 공급국
- ✓ 당해 조사에 의해 판명된 사실 및 이를 통해 얻은 결론
- ✓ 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

라) 상계관세 조사절차

도표 상계관세 조사절차



① 조사신청

상계관세의 조사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자격으로서는 먼저, 당해 수입화물과 동종화물의 국내생산자 또는 당해 화물의 국내생산자를 직접 혹은 간접의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들의 생산액 합계가 당해 화물의 국내 총 생산액의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수입화물과 동종화물의 국내생산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혹은 간접의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그 직접 혹은 간접의 구성원 중 당해 생산에 종사하는 자의 합계가 당해 생산에 종사하는 자 총 수의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부과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자 및 당해 화물의 기본사항을 포함한 정령 제4조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화물의 수입 사실 및 당해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여 이를 재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사개시

조사를 개시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령 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과세신청의 서면이 제출된 후 2개월 정도를 목표로 한다. 또한 당해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보정(증거의 추가를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개시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산업소관대신은 관계 생산자 등 또는 관계 노동조합⁵에 대하여 관세정률법 제7조 제5항, 제18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요구 등에 대한 지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지 측의 (1) 당해 화물의 국내 총생산 합계가 50% 초과, 또는 (2) 당해 생산 전체 종사자 대비 50% 초과 사실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지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대신은, 정령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 및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에 보고한다. 반덤핑 조사담당자단과 마찬가지로 재무대신은 조사개시가 결정된 때에는 관세정률법 제7조 제1항 및 정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경제산업대신과 협의하여 재무부, 당해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성 및 경제산업성의 관계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자단을 설치한다.

구체적인 조사수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지조사, 가결정, 중요사실의 통지, 최종결정의 경우 조사개시로부터 각각 6개월, 8개월, 10개월, 1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취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⁵ 수입화물과 동종의 화물의 국내생산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관계노동조합이라 일컬음(財務省関関局関関課特殊関関調査室, 2012)

- ✓ 관세정률법 제7조 제6항에 규정하는 조사과정에서 당해 조사와 관련한 화물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1 %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 ✓ 관세정률법 제7조 제5항, 제13항, 제18항, 제23항 및 제28항에서 준용하는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의 요구 등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당해 과세의 요구 등이 취하됨에 따라 조사지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조사수속의 진행을 정당화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 조사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울러, 정부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화물의 수입사실 및 당해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추정 할 수 있으며,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계관세를 보전하기 위해 당해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당해 보조금의 액수에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의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정부는 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된 담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증거제출

채무대신은 정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 정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명 및 정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의 요구 시 이해관계자 또는 산업 상의 사용자 등에 질문장을 송부하는 때에는 당해 질문장의 회답 기한을 조사사안 별로 질문장에 명시한다. 증거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제출과 동시에 이와 함께 전자적 기록 매체에 의한 제출을 요구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는 상계관세 관련 증거의 작성을 위한 양식과 기재요령 등을 게시해 놓았고 조사개시 전 및 후에 걸쳐 총 4가지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 과세 요구 등의 기재사항·기재요령 예시
- ✓ 과세 요구 등 시 첨부하는 증거의 제출양식 예시
- ✓ 비밀증거 등의 요약의 작성 예시
- ✓ 조사개시 후에 제출하는 증거의 제출양식 예시

자료 과세 요구 등 시 첨부하는 증거의 제출양식

(別添2) 課税の求め等に際し添付する証拠の提出様式例 (税関課税に關する法令等に基づき提出)

相殺関係調査に係る証拠の提出について
(〇〇を求める書面に添付する証拠)

相殺関係に関する政令(平成6年政令第415号)(以下「政令」という。)第4条第〇1項に規定する〇〇を求める書面に添付する証拠は、別添1のとおりです。

1. 証拠を秘密として取り扱うことを求めることの有無¹⁾

☐ A. 提出する証拠を秘密として取り扱うことは求めません。
(2. の書面等のうち、別紙1及び別添1を提出)

☐ B. 提出する証拠には秘密として取り扱うことを求める部分が含まれます。
(2. の全ての書面等を提出)

2. 提出する書面等²⁾

☐ 別紙1: 提出する証拠の資料名を記載した一覧表
(閲覧対象(別添2の提出があった場合には、閲覧対象外))

☐ 別紙2: 証拠を秘密として取り扱うことを求める旨及びその理由を記載した書面
(閲覧対象外)

☐ 別紙3: 提出する証拠の資料名を記載した一覧表(別紙1)の要約⁴⁾(閲覧対象)

☐ <別添1>: 提出する証拠(閲覧対象(別添2の提出があった場合には、閲覧対象外))

☐ <別添2>: 提出する証拠の秘密扱いを要しないもの及び要約⁵⁾(閲覧対象)

3. その他

- 上記でチェックした提出する証拠等の電磁的記録については、別紙4(証拠等の電磁的記録一覧表)に記載してあるとおりです。
- その他、特に記載すべき事項がありましたら適宜記載してください。

(別添2) 과세 요구 등 시 첨부하는 증거의 제출양식례 (상계관세에 관한 법령 등 4조에 근거한 증거의 제출)

상계관세조사에 관한 증거의 제출에 대해서
〇〇을 요구하는 서면에 첨부하는 증거

상계관세에 관한 법령(平成6년 법령 제415호)(이하「정령」이라 함.) 제4조 제〇항에 규정하는 〇〇을 요구하는 서면에 첨부하는 증거는 별첨1과 같습니다.

1. 증거를 비밀로써 취급함을 요구하는 것의 여부¹⁾

☐ A. 제출하는 증거를 비밀로써 취급함을 요구하지 않음
(2. 의 서면 등 중, 별지1 및 별첨1을 제출)

☐ B. 제출하는 증거에는 비밀로써 취급함을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2. 의 전체 서면 등을 제출)

2. 제출하는 서면 등

☐ 별지1: 제출하는 증거의 자료명을 기재한 일람표
(열람대상(별지2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대상외))

☐ 별지2: 증거를 비밀로써 취급함을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열람대상외

☐ 별지3: 제출하는 증거의 자료명을 기재한 일람표(별지1)의 요약(열람대상)

☐ <별첨1> 제출하는 증거(열람대상(별지2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대상외))

☐ <별첨2> 제출하는 증거의 비밀취급을 요하지 않는 것 및 요약(열람대상)

3. 기타

- 상기에서 체크해 제출한 증거 등의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는, 별지4(증거 등의 전자적 기록 일람표)에 기재된 대로입니다.
- 기타, 특히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기재해 주십시오.

④ 현지조사

제공된 정보의 확인 또는 추가 정보 입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상계조치협정 12.6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공급자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수출국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미리 조사일정의 조정이 이뤄지는데 현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현지조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그리고 현지조사의 수용에 동의한 대상자와 일정을 조정하고 수출국 정부의 대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를 통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일정이 결정된 후 대상자에게 통지문서 및 현지조사에 관한 설명문서를 송부한다. 수출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상세한 조사항목을 이들 문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현지조사가 실시된 후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요사실의 개시를 통해 당해 조사결과와 관련한 기업에 대해 조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단, 중요사실의 개시 전이라도 당해 조사결과와 관련한 기업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⑤ 가결정

가결정의 통지 및 고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내용에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여 회답 기한을 정하여 정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정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명을 요구한다. 또한, 산업 상의 사용자 등에 관한 의견표명에 대해서도 이해 관계자에 관한 의견표명과 마찬가지로 최종결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재량이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가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당해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⑥ 약속

보조금을 교부 받은 화물의 수입 사실 및 당해 수입이 일본의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조사대상자로부터 수출가격인상 등 자발적인 약속이 있을 경우 관세정률법 제7조 제9항에 규정된 약속을 수락할 수 있는데 당해 약속의 수락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약속으로 정하는 날을 경과하는 날에 만료한다.

또한, 약속의 이행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 자료의 확인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 ✓ 보조금의 교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
- ✓ 조사에 관련한 화물의 생산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
- ✓ 약속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정보를 필요한 경우 제출할 것
- ✓ 보조금을 교부 받은 화물의 제3자에 의한 국내로의 수출 및 제3국을 통해 국내로의 우회수출을 최대한 방지할 것
- ✓ 제공된 정보 등의 진실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검증의 실시를 무조건 및 수시로 수용할 것
- ✓ 약속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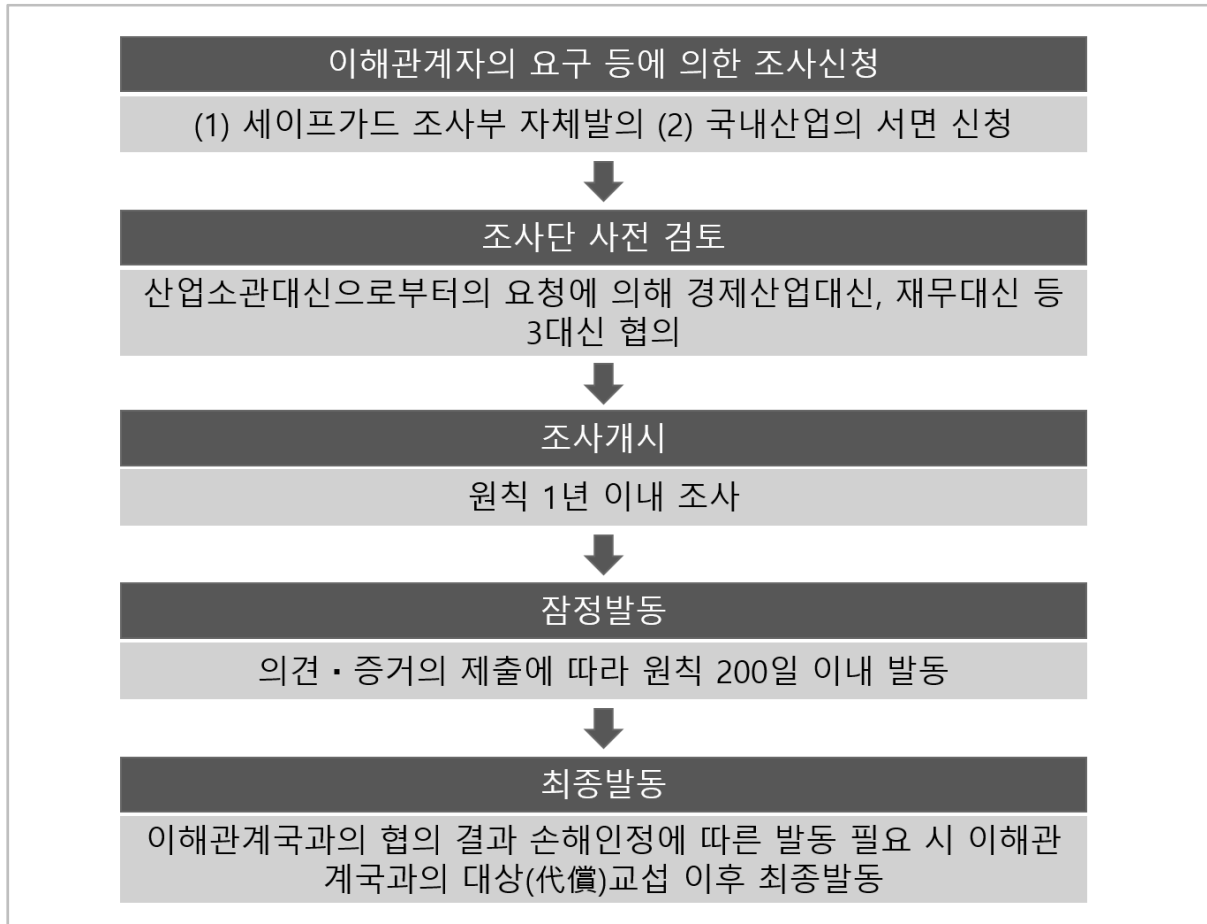
⑦ 최종결정

최종결정 전, 재무대신은 관세정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상계관세를 변경(동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간의 변경을 포함) 혹은 폐지 여부의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당해 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재무대신은 최종적으로 조치가 결정되었을 때 신속하게 그 취지 및 아래에 열거된 사항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화물의 품명, 상표, 모델 및 특정화물의 공급자 또는 공급국
- ✓ 지정기간
- ✓ 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과 이를 통해 얻은 결론
- ✓ 부과 대상이 되는 화물 및 그 결정 이유
- ✓ 기타 참고가 되는 사항

마)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도표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① 조사개시

세이프가드 조사부의 자체발의 또는 국내산업의 서면 신청에 따라, 수입 증가의 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 또는 그 우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한다. 주로 농수산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이 때 농림수산성의 소관이 되므로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 및 농림수산성의 합동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재무대신은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의 위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조사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을 동 부회에 설명한다. 재무대신은 긴급관세정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동 부회에 보고한다. 여타 수입규제조치와 마찬가지로 재무대신은 관세정률법 제9조 제6항 및 긴급관세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조사개가 결정된 때에는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경제산업대신과 협의하여 재무성, 당해 산업을 소관하는 성 및 경제산업성의 관계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자단을 마련한다.

조사에 의해 발동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조치에 대해서는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심의회에의 자문을 거쳐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② 질문장 송부

재무대신은 긴급관세정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명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는, 신속하게 이해관계자(긴급관세정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해관계자를 지칭) 또는 산업 상 사용자 등 또는 당해 조사에 관련한 화물의 주요 소비자단체(긴급관세정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 상의 사용자 등 또는 당해 조사에 관련한 화물의 주요 소비자단체를 지칭)에 질문장을 송부하여 당해 질문장의 회답 기한을 조사사안 별로 질문장에 명시한다.

③ 공청회 개최

재무대신은 긴급관세정령 제9조에 규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동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관세정률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경제산업대신과 협의하여 당해 공청회의 의제 등을 설정한다.

또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의제, 개최일시, 개최장소, 기타 참고사항을 이해관계자 또는 산업 상 사용자 등 또는 주요 소비자단체 중 설정된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청회의 개최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공고한다.

④ 잠정발동

충분한 증거에 의해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에의 중대한 손해 등의 사실에 대해 추정할 수 있고, 국민경제 상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세인상에 한해 원칙적으로 200일 이내로 잠정발동을 취할 수 있다.

⑤ 최종발동

정부는 최종발동에 앞서 이해 관계국과의 협의 등을 실시하여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중대한 손해가 인정되어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세할당을 포함한 관세인상 및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수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출과 관련 관세인상, 관세양허의 정지 등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조치가 세이프가드 협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발동 이후 처음 3년 간에 대해서는 수출국은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 수입의 절대적 증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관세양허의 정지 등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의 증가, 국내산업에 대한 중대한 손해 또는 그 위험, 양자의 인과관계, 국민경제 상 긴급한 필요성 등 발동요건을 충족할 경우, 잠정발동을 포함하여 최장 4년 이내, 연장할 경우 합계 8년까지 조치할 수 있다.

3

사례 및 시사점

가)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 (A005.1)

2015년 4월 3일, 일본의 칼리전해공업회(아사히글라스, 다이소 등 4개사 회원)가 제출한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에 따라 동년 5월 26일 조사가 개시되었고 2016년 4월 잠정조치에 이어 8월 9일 확정조치가 취해졌다.

한국기업은 조사절차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조사당국이 1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내용과 사전자료에 대한 증거 모두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일부 회답서에서 연장 신청을 거절하는 등 절차 상의 불합리한 결정을 했으며 이것은 AD협정 6.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① 공급자질문장회답서의 제출기한 4주 연장 신청에 대해 Section A는 연장불가, Section B~G는 2주 연장 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한국기업이 회답한 추가적인 증거와 설명을 완전히 거부하는 등 방어에 대해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② 조사당국이 일부 항목(국내가격, 제조원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당사에 입증·반론 등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AD협정 6.2조 및 6.7조 및 협정 부속서 I 7.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관한 절차의 위반이며, ③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D협정 6.6조 위반여지가 있고 ④ 조사당국으로부터 현지조사 항목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일부 항목에 대해 문의하는 질의 의견서를 보냈는데 조사당국이 이를 반송해 온 것은 부당한 거부 행위이며, AD협정 부속서 I 8.에 위배되고 ⑤ 한국기업이 공급자질문장 및 추가질문장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음(A4용지 900~1,000페이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협정 부속서 II 6.8에 규정하는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⑥ 또한 전수 데이터의 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했으며, 결국 이 외부 자료를 1) 각 거래처로부터 받아 2) 보안 상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3) 일본어 번역 등을 통해 A4용지 500~600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본어 번역 시간을 고려하면 당초의 질문장 및 기타 추가질문장에 대한 답변 제출 기한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기업의 주장에 대해 조사당국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하였다. 공급자질문장에 대해 37일의 답변 기간을 마련했고, 그 후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 그 신청대로 Section B~G에 대해 2주 동안의 답변 기간 연장을 인정했으며, 그 결과 한국기업은 Section A를 제외한 51일 간의 답변 기간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사당국이 공급자질문장의 답변 기한의 연장에 대해

"절차 상 불합리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한국기업의 주장은 사실 오인에 근거한 것이며, Section A는 회사의 개요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8페이지 정도의 질문장이며, 첨부 서류도 감사를 마친 재무 제표, 조직도 및 제품 브로셔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작성에 시간을 요하는 항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Section A의 연장불가는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한국기업은 조사당국이 일부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입증·반론 등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장·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왔고,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질문장 등을 송부해 증거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답변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인정해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조사개시 후 4개월 간(125일차까지)은 자발적인 증거 등의 제출을 인정하고 5개월 간 (153일차 까지)은 당해 조사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상반되는 이해관계자와의 대질 기회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6개월 간 (183일차까지)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표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조사개시 시 기한에 대해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모두 활용하여 증거의 제출, 의견표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국기업으로부터 우송된 질의의견서와 관련해서는 전날 1월 19일 동 사 대리인에 의해 조사당국에 질의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연락이 왔던 것에 대해, 조사당국으로의 의견표명 기한은 이미 지났다는 취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송되어 온 것이었으므로, 반송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배달 증명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면이 배달된 사실이 증명되는 것, 즉 조사당국이 당해 서면을 접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도하고 우송된 것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그 서면의 내용은 동 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사당국이 현지조사의 대상으로 한 수출가격에 관한 현지조사와 관련한 「정중한 문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조사당국은 당해 질의의견서를 현지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출가격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한 질문이 아닌 제조원가 및 국내 판매 가격에 대한 한국기업의 의견표명이라고 이해했는데 동 의견표명의 고시된 기한은 지났기 때문에, 가결정 전에 당해 의견에 대한 재요청을 한국기업에만 대해 실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결정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일부 이해관계자에만 통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형평성의 논리를 앞세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결정이 이뤄지면 한국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가결정의 내용에 대해 반론하고 그 반론에 대해 재반론할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한국기업이 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의견표명 기간이 지나 있다는 취지 전달」, 「의견표명이 가능한 경우 통지하기 때문에 그 때 의견을 표명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통지문과 함께 우송된 질의의견서를 한국기업에 반송한 조사당국의 대응」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공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거부 행위」에는 맞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한국기업은 일본어 자료를 번역하는 부담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조사당국은 양식과 첨부 자료와 같은 서류의 일본어 번역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추가질문장의 답변에서, 질문장 작성의 유의점으로, 전표 등에 대해 동일한 양식을 이용한 전표라면 전부를 번역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끔 했기 때문에 번역 부담의 경감을 도모했다고 답변하며 한국기업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동 수산화칼륨 사례 외에도 탄소강제관연결구류 사례에서도 수입규제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기업에게 짧은 시간에 다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적절한 시기 안에 답변 제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일본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기존 수입규제 조사과정 및 질의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요구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가 개시될 경우 즉각적인 답변서 작성 및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IV

베트남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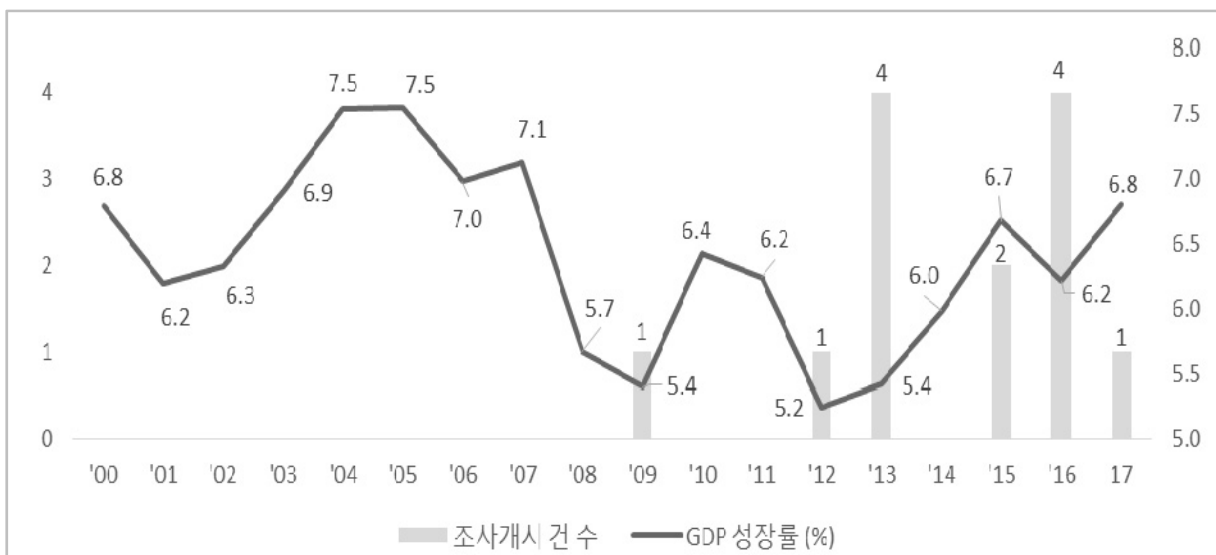
1. 주요 개요
2. 제도 및 절차
3.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개요

베트남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7건의 반덤핑, 6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하였다. 1990년대 전후부터 베트남은 GDP 성장률 최대 9.5%로 큰 폭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09년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처음으로 개시하였다.

이 후 경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12~'13년 다시 GDP 성장률이 5%대로 하락 하였으며, 이 시기에 4건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발생하였다.

도표 베트남 GDP 성장률과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 수



출처: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베트남은 WTO에서 규정하는 기본 원칙 준수 약속 및 국내법적 무역제도 기반을 갖추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 되었는데¹. 특히, 수입규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는 WTO 회원국 신청 국가의 내국법적, 기관적 집행 체계 및 제도가 갖추어 있는지 여부가 WTO 가입 절차² 중 필수적으로 확인돼야 하는 항목³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은 WTO 반덤핑 협정, 상계관세

¹ 베트남 WTO 가입 과정 절차 Timeline.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a1_vietnam_e.htm

²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국의 가입신청서 제출, 가입작업반 설치 및 검토, 양자협상 진행, 복수협상 진행, 다자협상 진행, 그리고 WTO 일반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a1_vietnam_e.htm

³ WTO 가입 절차 과정에서 제출하는 문서인 DWPR (WT/ACC/SPEC-series)는 WTO 멤버로의 가입을 신청한 국가가 동의한 이행 약속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다.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a1_vietnam_e.htm

협정 및 세이프가드 협정을 기반으로 2002년~2005년 내국법 제정 및 국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수입규제 관련 베트남 내국법을 WTO 기준에 맞추는 절차 이후, 2007년 WTO에 가입이 승인되었고, 2009년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도표 베트남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7~2017)

(단위: 건)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계
반덤핑	-	-	-	-	-	-	-	-	-	-	-	-	-	-	-	-	4	-	-	3	-	7
상계관세	-	-	-	-	-	-	-	-	-	-	-	-	-	-	-	-	-	-	-	-	-	-
세이프가드	-	-	-	-	-	-	-	-	-	-	-	-	1	-	-	1	-	-	2	1	1	6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WTO 출범 이래, 베트남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받은 국가는 중국이며 전체 7건 중 3건, 43%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이 각 1건씩,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 조사대상국별 베트남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7)

(단위: 건)

국 가	중국	한국	말련	인니	대만	총계
건 수	3	1	1	1	1	7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도표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번 호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규제시작일
1	착색아연도금강판 (Pre-painted Galvanized Steel Sheet and Strip)	AD (조사 중)	2018-10-30	
2	비료 (Certain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SG (규제 중)	2017-05-12	2018-03-07
3	착색아연도금강판 (Pre-painted Galvanized Steel Sheet and Strip)	SG (규제 중)	2016-07-06	2017-06-15
4	도금강판 (Coated steel sheets)	AD (규제 중)	2016-03-10	2017-03-30
5	반가공 합금 철강재(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SG (규제 중)	2015-12-25	2016-07-18
6	글루탐산소다 (Monosodium glutamate)	SG (규제 중)	2015-09-01	2016-03-10

2

제도 및 절차

가) 베트남 국내법

①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베트남은 1995년 WTO 가입 신청 후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적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WTO 협정에 의거한 반덤핑 칙령 (Ordinance No.20/2004/PL-UBTVQH11)의 베트남 국회 (National Assembly)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비준이 2004년 4월 29일 완료 되고, 2004.5.12 법 명령 (Order No.08/2004/L-CTN)을 통해 공포하였으며, 2005.7.11. 법령 (Decree No.90 /2005/ND-CP)을 통해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다.

상계관세법 조례 (Ordinance No. 22/2004/PL-UBTVQH11) 또한 2004.8.20. 공포하고 2005.7.11. 법령 (Decree No. 89/2005/NP-CP)을 통해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후 2017.6.12. 베트남 정부는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 (The Law on Foreign Trade Management, Law No. 05/2017/QH14)을 통하여 베트남의 무역규제 제도를 좀 더 효율적이고 WTO 수입규제 협정에 준수하도록 개정하였고, 해당 신규 법령은 2018.1.1. 발효 되었다. 신규 법령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 칙령 (Decree No. 10/2018/ND-CP)은 2018. 1.15에 공포 및 발효 되었다.

도표 베트남 수입규제 신규 법령

No.	규제 구분	법령	공포 일자	유효 여부
1	AD, CV, SG	Law No. 05/2017/QH14	2017-06-12	신규 적용
2	AD, CV, SG	Decree No. 10/2018/ND-CP	2018-01-15	신규 적용

신규 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신설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표 신규 법령 주요 개정사항⁴

No	분 류	변경 전		변경 후	
		내 용	법 령	내 용	법 령
1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청원 규정 중, "자국산업을 대표하는 청원자"의 정의	청원자는, 1) 동종제품 자국산업 생산량의 25% 차지, 또는 2) 생산자 중, 지지자의 수가 반대자의 수 보다 커야 함	세이프가드 법령 Chapter II. Article 10. (Ordinance No.42/2002/P L-UBTVQH10)	청원자는 1) 신청자 및 지지하는 생산자 (국내)가 국내 동종물품 생산량의 25% , 또는 2) 생산자 중, 지지자의 수가 반대자의 수 보다 커야 함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 Chapter IV. Article 79, 87. (Law No.05/2017/QH14)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의 세부 시행규정 Chapter III. Article 46 (Decree No. 10 /2018/ND-CP)
2	반덤핑 조사기관 권한 중, "Trade Remedy Council"에 대한 권한	조사기관이 조사를 마치면 Trade Remedy Council에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Council이 검토 후 최종 조치 결정 및 MoIT에 제언	반덤핑 법령 Chapter II. Article 11-13. (Decree No.90/ 2005/ ND-CP)	조사기관이 직접 MoIT에 조사결과 제출 및 조치 제언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 Chapter IV. Article 73. (Law No.05/ 2017/QH14)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중, "조사 시작 결정 후 예비판정까지의 기간"	조사 시작 결정 후 90 일 내 예비판정 결과 보고서 발행	반덤핑 법령 Chapter III. Article 31. (Decree No. 90/2005/ND-CP)	조사시작 결정 후 최소 60 일 이후 예비판정 보고서 발행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의 세부 시행규정 Chapter II. Article 37. Clause 3. (Decree No. 10/ 2018/ND-CP)

⁴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Law No.05/2017/QH14) 및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의 세부 시행규정 (Decree No. 10/2018/ND-CP).

도표 신규 법령 신설 규정⁵

No.	분 류	신 설 규 정	법 령
1	재심 기간 중 신규 수출자에 대한 심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기간에 수출을 하지 않았으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의해 반덤핑 관세 납부 대상인 신규 수출자에 대한 심사 - 신규 수출자는 아래 요건 충족 시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음: 1) 조치부과 대상 수출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 2) 첫 조사기간 이후부터 수출 시작 3) 재심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량이 수출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량임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 Chapter IV. Article 82.3. (Law No.05/2017/QH14)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의 세부 시행규정 Chapter IV. Article 65. (Decree No. 10/2018/ND-CP)
2	우회덤핑 조치	국내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부과를 할 수 있음 - 판단 요건: 1)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이 국내에서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 2) 관세 부과 조치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 부품 등의 1 차적 수입 목적이 조치대상 제품을 만들기 위함임 3) 조사시작 직전 또는 직후에 베트남에서 생산량과 조립량이 급증 4)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조달된 원자재 또는 부품이 전체 원자재 또는 부품에 60% 이상 차지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 Chapter IV. Article 72. (Law No.05/2017/QH14)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의 세부 시행규정 Chapter V. Article 73. (Decree No. 10/2018/ND-CP)
3	수입규제 제외조치 품목	개인 또는 단체가 수입규제 조치 제외 신청서를 제출 가능 1) 제출 후 7 일 내 추가자료 요청, 2) 완전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45 일 내 제외 적용 여부 통지 3) 추후 제외적용 조건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외조치 적용이 해제될 수 있음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의 세부 시행규정 Chapter I. Article 7. (Decree No. 10/2018/ND-CP)

⁵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Law No.05/2017/QH14) 및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의 세부 시행규정 (Decree No. 10/2018/ND-CP).

나) 유관기관

① 무역구제국 (TRAV, Trade Remedies Authorities of Vietnam)⁶

무역구제국 전신인 경쟁관리국은 2003년 당시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⁷) 산하 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ttee) 라는 이름으로 처음 구성되었다. 이후 2004년 경쟁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경쟁행정부가 설립되었고, '05.7.1 베트남 경쟁법 (Competition Law)이 발효되었으며, 2006년 법령 Decree No.04/2006/ND-CP에 따라 경쟁관리국이 최초 설립되었다. 해당 법령은 경쟁관리국의 기능,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18.1월, 산하 조직인 경쟁관리국을 경쟁분야와 수입규제 분야로 이원화 하였고, 이에 따라 수입규제 분야만을 담당하는 무역구제국(Trade Remedies Authorities of Vietnam)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기존 경쟁관리국의 수입규제 관련 권한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는데, 무역구제국은 크게 수입규제 조사담당 기관으로서 상무부가 수입규제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제언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구제국은 별도의 법인격(Legal Person)이 인정되고 별도의 국가 인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권한으로는, 수입규제 관련 법령을 작성하여 산업무역부에 제출할 수 있고, 수입규제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 및 시행을 주관하며, 결정된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 청원서를 받고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종료 후 산업무역부장관에 예비/최종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판정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제언한다. 조치 적용 이후 수입규제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Review)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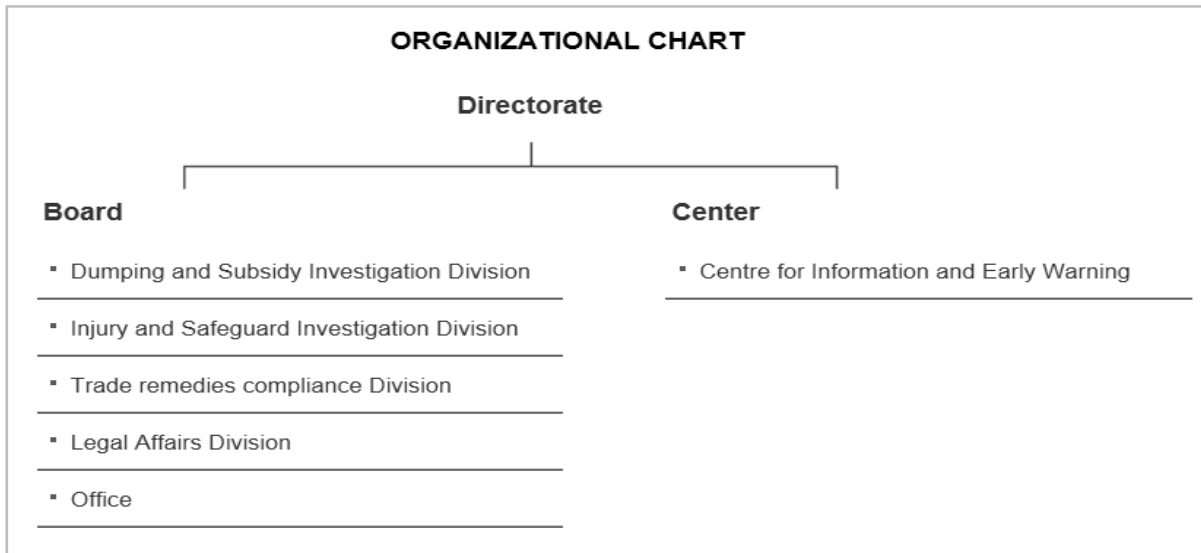
한편, 무역구제국은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관리하며, 베트남 기업이 제소를 당할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해 지원하고 대응할 의무가 있다. 수입규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합의를 위한 양자, 복수, 다자간 협상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무역구제국의 국장은 산업무역부에서 선임 및 해임하며, 역할, 권한 및 조직구성도 산업무역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⁶ 구 경쟁관리국 (VCA, 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⁷ 현재의 산업무역부 (Mol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도표 베트남 경쟁관리국 조직도



출처: 베트남 무역구제국. (<http://www.trav.gov.vn/Organization.aspx?CatelD=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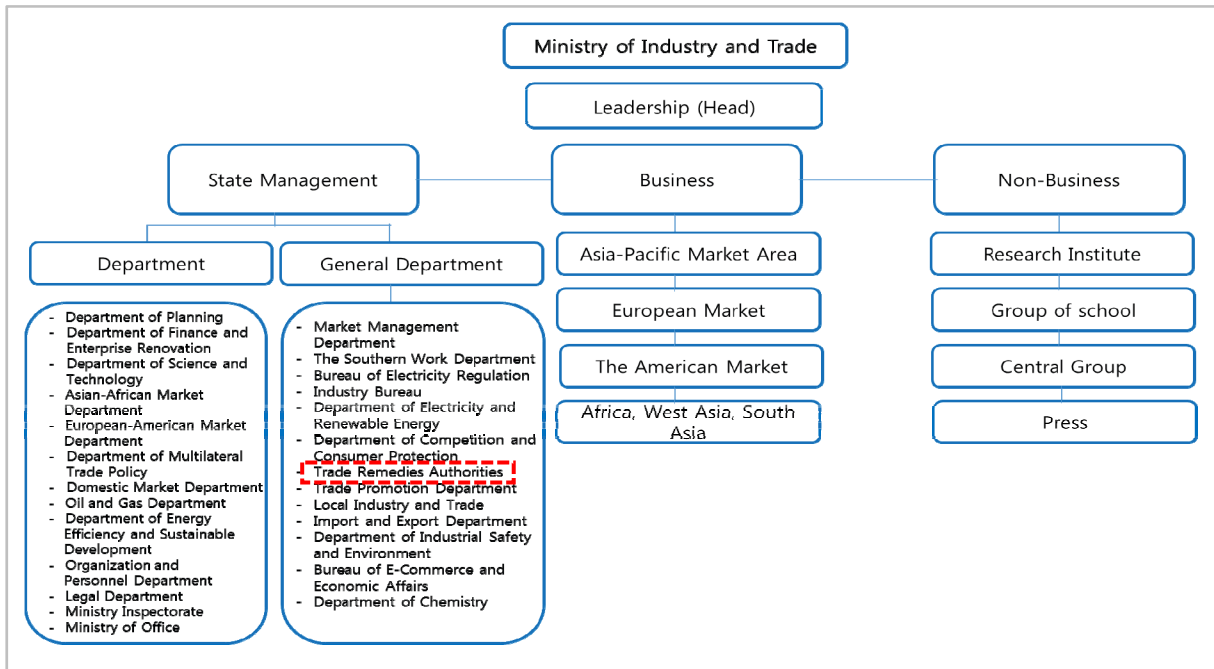
② 산업무역부 (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베트남의 무역구제국(TRA)은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이며 무역구제국의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조치 결정권한은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있다. 따라서 산업피해 조사와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은 하나의 정부기관(산업무역부)에서 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해외 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조치 결정에 대해서 대응할 의무와 권한도 가지고 있다.

산업무역부는 방대한 산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각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산업 및 업무와 관련된 법안을 중앙 정부에 제출하고, 운영 계획 등을 국무총리 또는 중앙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또한, 산하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법률 결의안, 시행령, 지침 등을 공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MoIT는 베트남을 대표하여 국제 무역 협상에 참여하거나 이를 주도할 권한이 있고 대외무역 관리 관련 조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정부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베트남 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의무가 있으며, 최종 국제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하여 자국에 설명, 홍보, 전파, 안내,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의무가 있다.

도표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조직도



출처: 산업무역부, MoIT. (<http://www.moit.gov.vn/web/guest/co-cau-to-chu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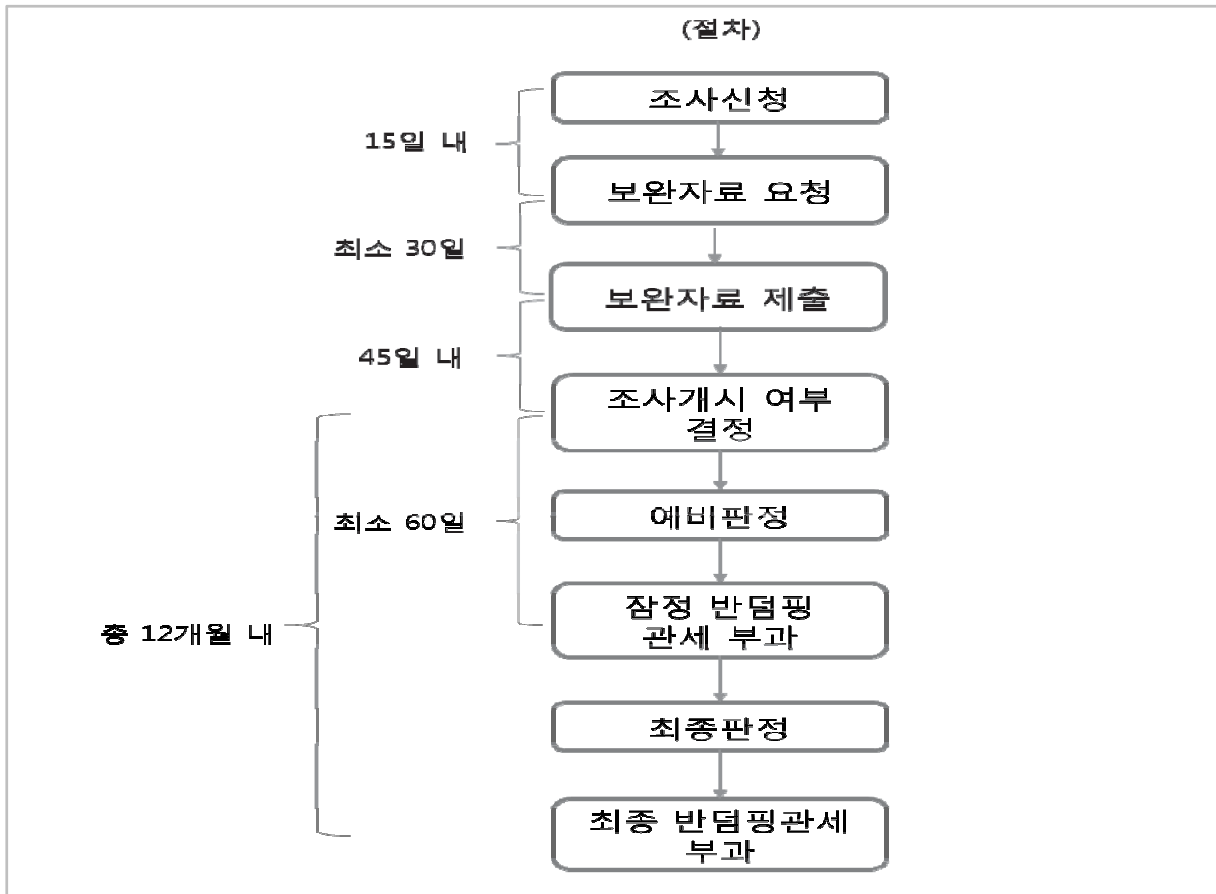
③ 관세청 (Vietnam Customs)

베트남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통관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은 MoIT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에 따른 잠정관세 조치 결정을 내리면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시 수입자에게 관세를 직접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후, 최종판정에 따른 이전 관세 과납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다) 반덤핑 조사절차

베트남의 반덤핑조사는 다음과 같이 산업무역부(MoIT) 산하 무역구제국(TRAV)이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대해 산업무역부가 승인 및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 베트남의 반덤핑 조사절차는 반덤핑 법령 (Law No. 05/2017/QH14)에 규정되어 있다.

도표 베트남의 반덤핑 조사절차⁸



① 조사 신청

자국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나 개인은 TRAV에 반덤핑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신청자(Applicant)는 2가지 조건이 충족할 때 자국 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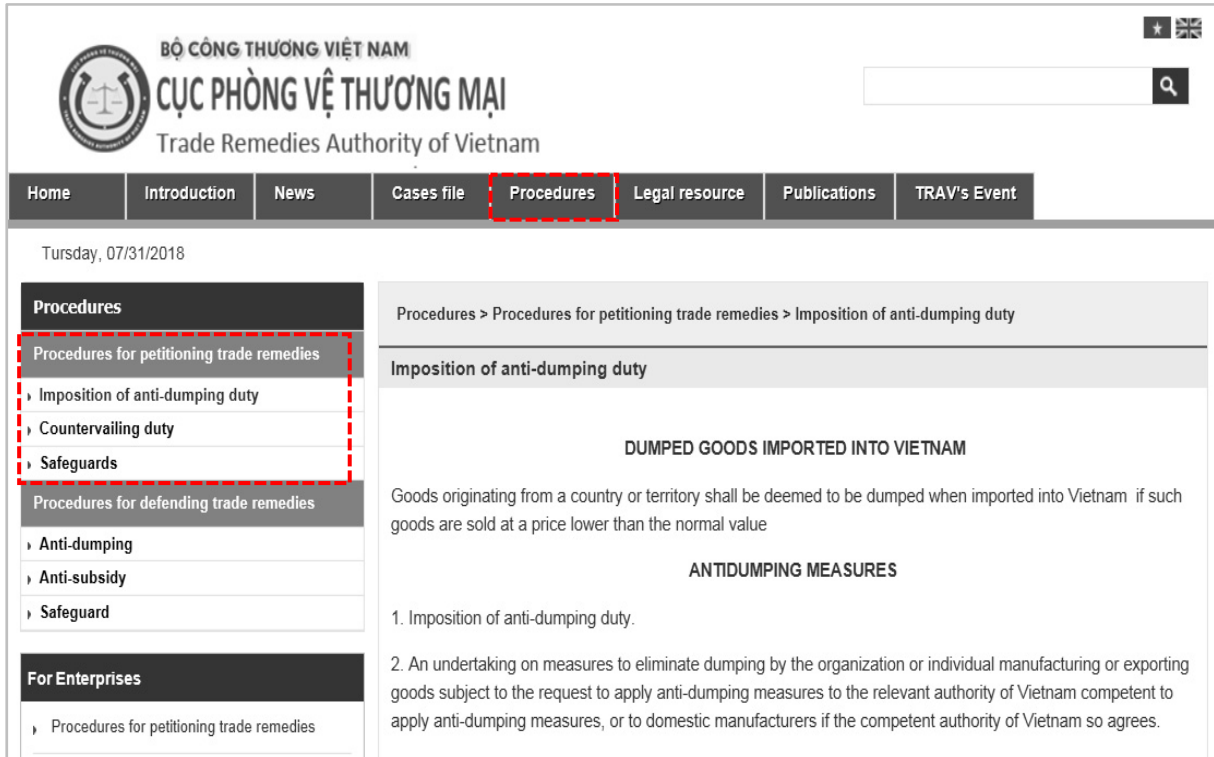
- ✓ 신청자 및 지지하는 동종물품 생산자가 국내 동종물품 생산량의 25% 이상을 생산할 때
- ✓ 반덤핑 조치를 찬성하는 자국 생산자의 제품의 규모(Volume), 수량, 또는 가치가 반덤핑 조치를 반대하는 유사 상품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규모(Volume), 수량, 가치보다 클 때

MoIT는 조사 신청서의 정보가 불충분 할 시, 조사 신청자에게 조사 신청일 이후 15일 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이여야 하며, 반덤핑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 전에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자가 속한 국가나 지역의 주무 정부 부처에 베트남의 반덤핑 법령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세부 조사 신청 절차는 TRAV 홈페이지¹⁰에 안내되어 있다.

⁸ 베트남 대외무역관리에 관한 법령. (Law No. 05/2017/QH14)

⁹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의 세부 시행규정(Decree No. 10/2018/ND-CP)

¹⁰ 무역구제국 (TRAV, Trade Remedies Authorities of Vietnam)



② 조사개시

TRAV는 모든 서류가 완비된 반덤핑 조치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기관은 조사 개시 결정이 있는 후 15일 내 질문서 (Questionnaire)를 아래 수신처에 송부해야 한다.

- ✓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 ✓ 수출자 또는 수출자를 대표하는 사람
- ✓ 조사대상 제품의 수출국의 베트남 내 외교 기관
- ✓ 조사대상 제품 수출국의 베트남 대표부
- ✓ 기타 연관된 관계자

질문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내 질문서의 수신자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입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조사기간 동안 조사당국에 관련된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이 신청할 경우 의견을 조정(Consult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및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http://www.trav.gov.vn/ProceDetail.aspx?CatelD=255&ID=47>)

공청회(Public Consultation)를 개최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조사대상물품을 베트남 영역으로 수출하는 해외 단체 및 개인
- ✓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단체나 개인
- ✓ 해외 협회 또는 단체 (회원의 과반수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출)
- ✓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관련 당국
- ✓ 조사 청원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개인
- ✓ 동종상품 생산하는 국내 단체 또는 개인
- ✓ 국내 협회 또는 단체 (회원의 과반수가 동종상품을 생산)
- ✓ 조사와 법적 관련이 있거나 조사절차를 지원하고 있는 기타 단체 또는 개인

조사 당국은 주요 조사 내용¹¹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 정상가격 결정
- ✓ 수출가격 결정
- ✓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를 통한 타당한 덤핑 마진 결정
- ✓ 중대한 산업피해 또는 중대한 산업 피해의 위협 여부를 판단
- ✓ 덤핑과 산업피해와의 연관성
- ✓ 반덤핑 조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기간은 조사 결정 발표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조사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판정 및 잠정관세 부과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이후부터 조사기간(12개월) 내 언제든지 조사기관은 예비판정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잠정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관세 적용 기간은 예비판정일로부터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다.

④ 덤핑 최종판정 및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당국은 덤핑 최종판정 결과 보고서를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내 MoIT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관세율은 최종 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관세부과는 관세부과 결정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¹¹ 베트남 대외무역관리에 관한 법령. (Law No. 05/2017/QH14)

⑤ 재심(Review)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일 이후 1년 뒤 MoIT 장관은 부과된 반덤핑 관세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재심기간은 재심 결정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MoIT 장관은 5년 간의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종료 1년 전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종료심사를 할 수 있는데, 종료재심 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종료재심 결과는 총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관세부과를 연장, 둘째,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이다.

또한, 신규법령에 따른 새로운 조항으로 신규 수출자 재심 제도¹²가 도입되었는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기간에 수출을 하지 않았으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의해 관세 납부 대상이 된 신규 수출자는 아래 요건 충족 시 별도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규 수출자 재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조치부과 대상 수출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 ✓ 첫 조사기간 이후부터 수출을 시작했을 때
- ✓ 재심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량이 수출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량일 때

반덤핑 조사 및 조치 사례

[도표]는 한국산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베트남 VCA(현 TRAV)의 실제 조사 일정을 나열한 것이다. TRAV 홈페이지에는 예비/최종판정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되어 있으나, WTO 회원국은 WTO에 6개월 단위로 반덤핑 조치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아래와 같이 세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도표 Case No. AD02-KOR 사건 반덤핑 조사 일정			
AD02-KOR	절 차	내 용	비 고
'16.3.3	조사개시	제소장 접수 후 60일 내에 조사개시	-
'16.9.1	MoIT예비판정	VCA가 덤핑사실 없음 판결 시 케이스 종료	-
'16.9.16	잠정관세 부과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최소 60일 이후~최대 120일 까지 부과 가능 (120일 부과 결정)	POSCO: 12.4% 기타 한국수출자: 19%
'17.3.30	MoIT최종판정	조사 완료 시	-
'17.4.15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12개월 내	POSCO: 7.02% 기타 한국수출자: 19%

출처: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또한, 하단의 [도표]와 같이 베트남의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와 관련한 정보들을 TRA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¹²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의 세부 시행규정 Chapter IV. Article 65. (Decree No. 10/2018/ND-CP)

도표 반덤핑 조사 예비/최종판정 관련 정보 조회 화면

라) 상계관세 조사절차

베트남은 2018년 현재까지 상계관세 조사를 시행한 사례가 없으나, 규정 상 상계관세 조사절차는 반덤핑 조사절차와 동일하다. 반덤핑 조사 기관과 동일한 기관인 산업무역부(MoIT) 산하 무역구제국(TRAV)이 상계관세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① 조사 신청

단체나 개인이 상계관세 조치를 신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 TRAV는 조사 개시여부를 검토한다. 조사 신청자는 자국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개인 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단체 또는 개인과 지지자(국내 생산자)의 동종 제품 생산 규모, 수량, 가치가 베트남 전체 생산 규모, 수량, 가치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상계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생산자가 반대하는 생산자보다 많아야 한다. 또한, MoIT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입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거나, 해당 수입품이 베트남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조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보조금이란 수출자의 정부 및 정부산하 기관이 수출 제조 기업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수출기업이 이익을 향유한 경우를 말한다. 베트남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¹³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정부가 개인 및 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자본을 이전하거나 미래에 자본 또는 채무가 이전되는 경우
- ✓ 정부가 단체 또는 기업에게 징수해야 할 것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 ✓ 정부가 공용 시설 외에 자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 정부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산 경우
- ✓ 정부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 경우
- ✓ 정부가 자금지원(Funding)의 개념으로 사설 기관에 신탁, 배정, 지시, 요청하여 a~e를 하도록 현금을 지원한 경우
- ✓ 어떠한 형태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원을 한 경우
- ✓ 위의 종류 외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국제 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판단 된 보조금

② 조사 개시

MoIT는 모든 서류가 완비된 상계관세 조치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기관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후 15일 내 질문서(Questionnaire)를 아래 수신처에 송부해야 한다.

- ✓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 ✓ 수출자 또는 수출자를 대표하는 사람
- ✓ 조사대상 제품의 수출국의 베트남 내 외교 기관
- ✓ 조사대상 제품 수출국의 베트남 대표부
- ✓ 기타 연관된 관계자

질문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내 질문서의 수신자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진행되는데, 첫째, 보조금 대상 수입품 및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고, 둘째, 자국산업의 피해 및 피해 위험 대하여 조사하고, 셋째, 보조금 지원대상 수입품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조사한다.¹⁴

¹³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 Chapter IV. Article 84. (Law No.05/2017/QH14)

¹⁴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 Chapter IV. Article 88. (Law No.05/2017/QH14)

③ 예비 판정 및 잠정관세 부과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이후부터 조사기간(12개월) 내 언제든지 조사기관은 예비판정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잠정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보조금 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관세 적용 기간은 예비판정일로부터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다.

④ 최종 판정

조사 종료 후 조사 당국은 확정판정 결과 및 주요 근거들을 공지해야 하며, 최종 결과와 주요 근거를 적절한 매체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최종관세 부과

최종판정 결과와 상계관세 조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MoIT 장관은 최종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최종 상계관세 부과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당국은 최종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매체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⑥ 재심

상계관세 부과 결정일 이후 1년 뒤 MoIT 장관은 부과된 상계관세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재심 기간은 재심사 결정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MoIT 장관은 5년 간의 상계관세 부과기간 종료 1년 전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는데, 종료재심 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재심 결과는 총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상계관세 부과기간 연장, 둘째, 상계관세 부과 종료이다.

또한, 신규법령에 따른 새로운 조항으로 신규 수출자 재심 제도¹⁵가 도입되었는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기간에 수출을 하지 않았으나,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의해 상계관세 납부 대상이 된 신규 수출자는 아래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상계관세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규 수출자 재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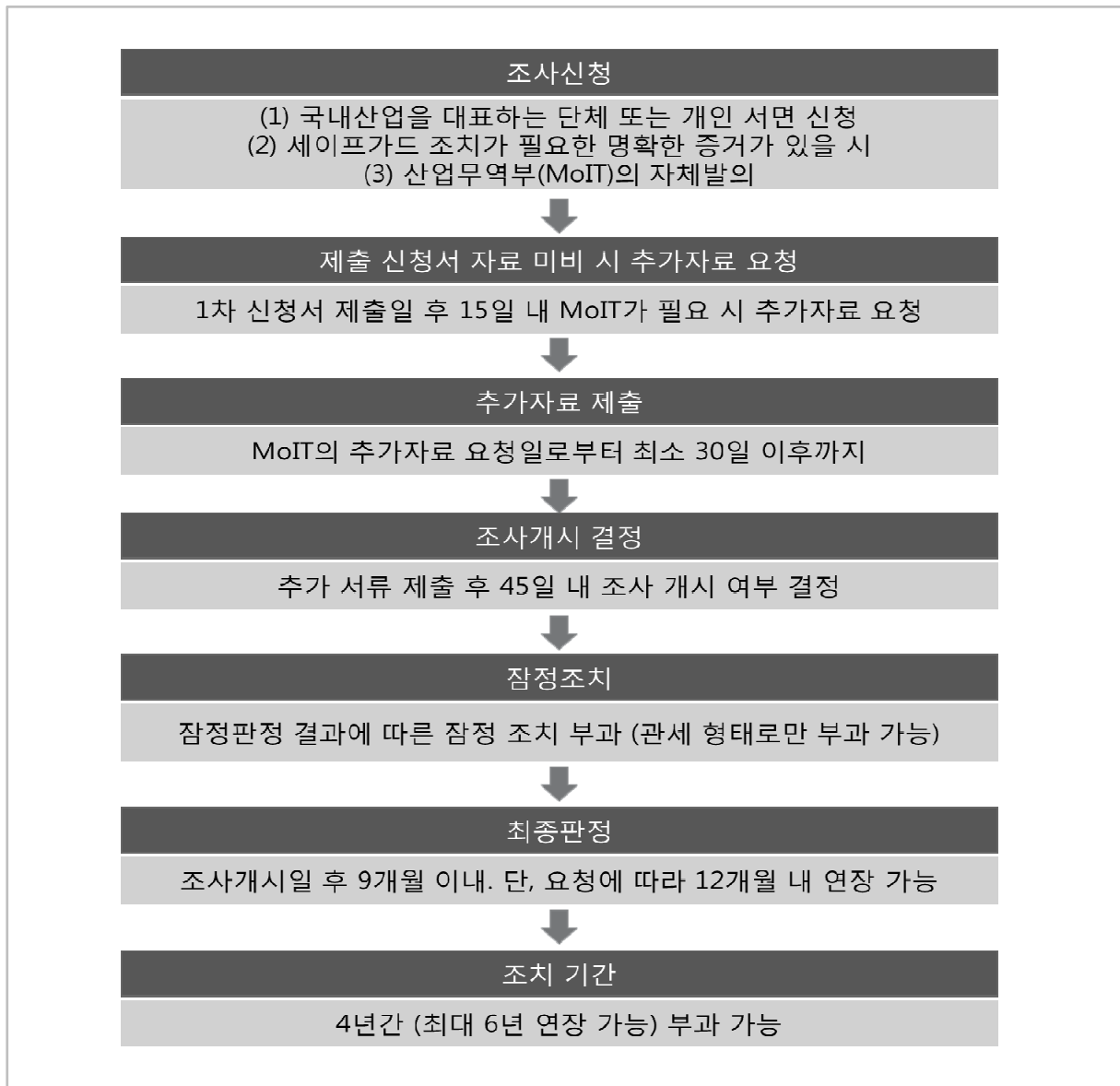
- ✓ 조치부과 대상 수출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
- ✓ 첫 조사기간 이후부터 수출 시작
- ✓ 재심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량이 수출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량임

¹⁵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의 세부 시행규정 Chapter IV. Article 65. (Decree No. 10/2018/ND-CP)

마)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세이프가드 발동의 법적 근거인 칙령 (Ordinance No. 42/2002/PL-UBTVQH10)은 2002.5.25. 베트남 국회의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비준을 완료하고 명령 (Order No. 12/2002/L-CTN)을 통해 공포되었으며, 법령 (Decree No. 150/2003/ND-CP)에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다. 세이프가드 역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기관과 동일한 베트남 무역구제국 (TRAV)에서 담당하며, 최종 결정 권한은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장관에게 있다. 이후 2017.6.12. 공포된 베트남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령(Law No.05 /2017/QH14)에 따라 세이프가드 법령이 개정 되었다. 해당 법령에 따른 베트남 세이프가드 조사절차는 아래와 같다.

도표 베트남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① 조사신청

세이프가드 조사는 일반적으로 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나 기업 등 이해당사자에 의해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나, 조사기관인 MoIT의 자체 발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산업체를 “대표”함의 기준은 첫째, 단체 또는 개인의 동종제품 생산량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지하는 생산자가 베트남 내 총 생산량의 25% 이상이거나, 둘째,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지하는 생산자가 반대하는 동종제품 생산자보다 많을 경우이다.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 청원서에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산업피해를 입히거나 산업피해 위협을 야기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사개시

산업무역부는 모든 서류가 완비된 세이프가드 조치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조사대상 제품의 수입량 증가 여부 및 증가량
- ✓ 중대한 산업피해 또는 산업피해 위협 여부
- ✓ 수입량의 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

수입의 증가가 중대한 산업피해를 입혔거나 산업피해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은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다:

- ✓ 수입량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동종상품 대비) 증가
- ✓ 예상하지 못한 이유에 따른 수입품의 증가
- ✓ 수입품의 가격이 자국 생산 동종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 ✓ 증가한 수입량이 자국 동종상품의 아래 요소에 미치는 영향

③ 세이프가드 판정

세이프가드 판정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9개월 내 결정되어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아래의 형태로 발동 된다:

- ✓ 수입관세 부과 또는 상향
- ✓ 수입 쿼터
- ✓ 관세 쿼터
- ✓ 수입 허가증
- ✓ 기타 세이프가드 조치

그러나 세이프가드 발동이 지연될 시 중대한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피해 발생 시 추후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MoIT는 최종판정 이전에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잠정조치는 MoIT가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만 취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는 수입관세 상향의 형태만 허용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산업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때 까지만 적용할 수 있으며, 조치 시작일로부터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 판정결과에 따라 확정조치가 적용되고 확정 조치는 4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재심 결과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재심(Review)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이 3년 이상 지속되면 MoIT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중간 재심(Mid-term Review)을 진행하여야 하며,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심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전, 해당 조치의 연장을 원하는 국내 생산자 또는 단체는 종료 재심(Period-end Review)을 요청할 수 있다. 종료재심 시, 조치 연장 청원자는 국내산업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와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가 심각한 산업피해 또는 산업피해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료재심 결과에 따라, MoIT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종료 또는 연장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연장하기로 결정할 시에는 원심 시 부과되었던 조치의 종료 직전 조치보다 높을 수 없다.

3

사례 및 시사점

가) 한국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AD02-KR)

① 조사 개요

베트남 경쟁관리국(VCA)은 2016년 9월 1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홍콩포함)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공표하고, 동월 16일,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POSCO 12.4%, 기타 한국기업 19%). 이듬 해 3월 30일, 최종판정에서는 POSCO 7.02%, 기타 한국기업 19%로 최종 결정되었다.

조사기간 중 한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20% 증가한 반면, 동종상품의 국내 생산제품의 판매량은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격 측면에서는, 수입품 가격이 3년 전 대비 50% 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베트남 국내 생산자의 동종제품 가격은 30% 하락하였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저가 수입물량의 급증에 따라 국내 생산품의 판매증가 폭이 둔화되고 가격 하락 압력 역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조사기간 초기 2년 동안의 국내 생산품의 판매가격과 원가 간 격차는 판매가격 대비 약 2~30% 수준이었으나, 조사기간 후반기로 가면서 생산원가가 판매가격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중국 기업 대비 낮은 율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 이상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된 중국 기업들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조사에 응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대응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타겟 시장의 위치와 생산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생산기지를 여러 국가에 포진시켜 놓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도 선택적이다. 단일 생산기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성실히 조사에 응하거나 시장 자체를 포기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하는 데 반해, 여러 생산기지를 확보한 기업의 경우 대응에 따른 비용-효익 분석을 통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OEM/ODM 방식 혹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Factory as a Service 방식을 활용하는 등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것도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도표 한국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국 가	생산·수출 기업	잠정관세율	확정관세율
중 국 (홍콩포함)	1. Yieh Phui(China) Technomaterial Co., Ltd	4.02%	3.17%
	2. Bazhou Sanquiang Metal Products Co., Ltd	7.20%	26.36%
	3.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 Co., Ltd	38.34%	38.34%
	4. Bengang Steel Plates (Bengang)	34.77%	27.36%
	5. Tianjin Haigang Steel Coil Co., Ltd	11.87%	26.32%
	6. Hebei Iron & Steel Co.,Ltd, Tangshan Branch	20.76%	38.34%
	7. Wuhan Iron and Steel (WISCO)	25.63%	33.49%
	기타 중국 기업	38.34%	38.34%
한 국	1. POSCO	12.40%	7.02%
	기타 한국 기업	19.00%	19.00%

나) 수입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AD02-KR)

① 조사 개요

베트남 철강업계 4개사 (Hoa Phat, Southern Steel, Thai Nguyen Iron & Steel, Vietnam Italy Steel)는 반가공 철강재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베트남 동종 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수입 철강괴와 철강봉 12개 품목에 대해 각각 45%와 3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베트남 정부에 청원했고, 이에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15년 12월 25일)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이 후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16년 3월 7일, 반가공 철강재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동하였다. 2016년 7월 18일,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판정결과를 공표하였다. 최종 결정에 따라 철강괴와 철강봉에 각 23.3%, 15.4%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01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었다. 동 관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도표 베트남의 수입 반가공 합금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일정

(단위: %)

기 간	세이프가드 관세율	
	철강괴	철강봉
'16.3.22.~'16.8.1.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 23.3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 14.2
'16.8.2.~'17.3.21.	23.3	15.4
'17.3.22.~'18.3.21.	21.3	13.9
'18.3.22.~'19.3.21.	19.3	12.4
'19.3.22.~'20.3.21.	17.3	10.9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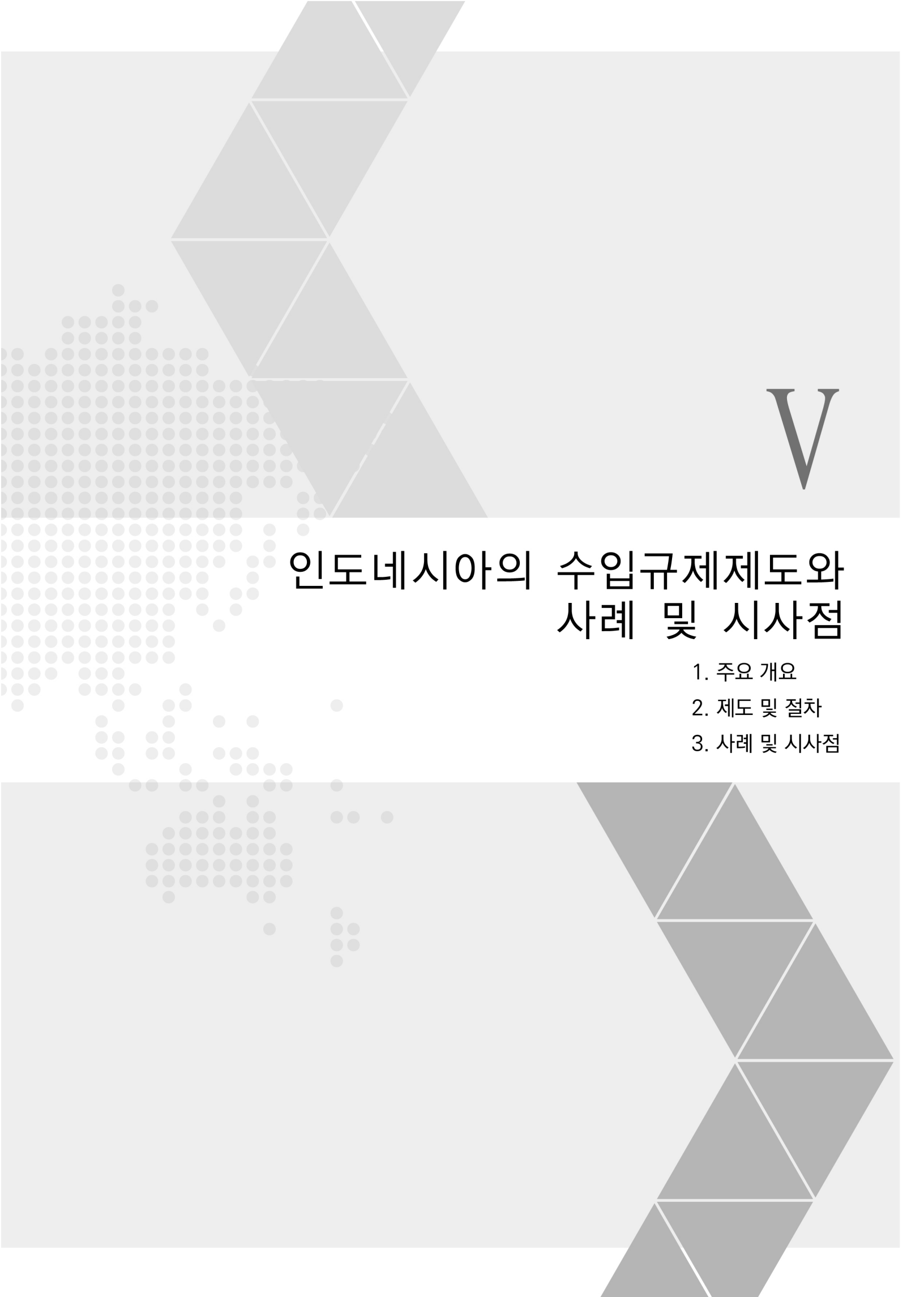
베트남 정부는 최근 철강 및 금속류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반가공 철강재에서 아연도금제품, 페인팅, 플라스틱코팅 강판까지 철강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입 급증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지 업체도 늘고 있어 베트남의 수입규제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반덤핑 제소절차보다 비교적 제소절차가 간단한 세이프가드 청원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⁶

반덤핑 조사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관세율이 결정되는 데 반해, 세이프가드 조사는 고율의 관세율이 차등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출국가들 간에는 경쟁력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 물론 국내산업과의 경쟁력에는 치명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세이프가드협정 2조 2항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국가)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수의 사례에서 FTA국가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시켜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협정 위배 판정이 내려졌다. 별도 판단 없이 FTA 체결국만 빼주는 것은 병행주의(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대상(2.1조)과 적용대상(2.2조)은 모두 동일하게 "product being imported"란 용어를 사용하므로 양자는 동일한 수입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다를 수 없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우리기업은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한국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사의 징후가 확인되면,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전대응을 통해 한국을 조사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¹⁶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http://news.kotra.or.kr>)



V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개요
2. 제도 및 절차
3.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개요

인도네시아는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써,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로는 WTO 국가 중 2위이며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로는 세계 13위 국가이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2004년 첫 조사 개시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말까지 총 27건의 조사를 개시하였고 이는 인도(43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반덤핑의 경우, 199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136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12위인 한국(142건) 다음으로 많은 조사를 개시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도표 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5~2017)

(단위: 건)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계
반덤핑	11	5	8	8	3	4	4	12	5	-	5	1	7	7	3	6	7	14	12	6	7	1	136
상 계 관 세	-	-	-	-	-	-	-	-	-	-	-	-	-	-	-	-	-	-	-	-	-	-	0
세이프 가 드	-	-	-	-	-	-	-	-	1	1	1	-	2	-	7	4	7	-	3	1	-	-	27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WTO 출범 이래 인도네시아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써, 전체 반덤핑 조사 136건 중 27건(20%)에 달한다. 두 번째 대상 국가는 한국으로 19건(14%)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그 뒤를 인도 15건(11%), 대만 14건(10%)이 잇고 있다.

도표 조사대상국별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7)

(단위: 건)

국 가	중국	한국	인도	대만	말련	태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아랍	러시아	터키	베트남	기타	총계
건 수	27	19	15	14	11	10	5	4	4	4	3	3	3	14	135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도표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구 분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규제시작일
1	알루미늄 호일 (Aluminum foil)	SG (조사 중)	2018-10-16	
2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AD (규제 중)	2016-08-22	2018-02-19
3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AD (규제 중)	2015-06-01	2016-11-24
4	광택지 및 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SG (규제 중)	2014-06-20	2015-09-07
5	I-H형 합금강 (I and H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SG (규제 중)	2014-02-12	2015-01-21
6	비합금 평판 강판 (flat 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SG (규제 중)	2012-12-19	2014-07-22
7	석도강판 (Tin plate)	AD (규제 중)	2012-06-25	2013-10-01
8	냉연코일 (Cold Rolled Coil)	AD (규제 중)	2011-06-24	2013-03-19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s://www.wto.org/>),
ITA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http://antidumping.kita.net>)

2 제도 및 절차

가) 인도네시아 국내법

인도네시아는 관세법¹ 및 무역법²에 근거하여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한 요건 및 절차는 시행령(Government Regulation)을 통해 정하고 있다. 또한 조치별 관세율은 무역부 장관령(Decree)을 통해 법제화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i. 인도네시아 관세법(Law No.17/2006 concerning Customs Affairs)³
- ii. 인도네시아 무역법(Law No.7/2014 concerning Trade)
- iii.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시행령(Government Regulation No.34/2011 concerning Antidumping measure, Countervailing measure and Safeguard measure)
- iv. 반덤핑 관세부과 및 보상 조치를 위한 조사절차에 대한 무역부장관령(Decree of Minister of Trade No.53/M-DAG/PER/9/2013)⁴
- v.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 절차 및 요건을 다룬 산업통상부 장관령(Decree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85/MPP/Kep/2/2003)

세이프가드 관련 최초의 법령(Decree)은 수입 증가의 영향에 따른 내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⁵으로, 2002.12.16일에 공포되었다. 이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절차 및 요건을 다룬 산업통상부 장관령⁶이 2003.02.17일에 공포되었다. 이후,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시행령⁷으로 대체되었다.

각각의 법령은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이하 "KADI")

¹ 무역구제제도 관련 사항은 관세법 '제 4장 덤핑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세, 보복관세 제 18조~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Law No.17/2006 concerning Customs Affairs의 영문 번역본은 부록을 참고할 것

² 무역구제제도 관련 사항은 무역법 '제9장 무역보호 제 67조~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Law No.7/2014 concerning Trade의 영문 번역본은 부록을 참고할 것

³ 관세법 Law No.10/1995에서 개정됨

⁴ 무역부 장관령 Decree of Minister of Trade No.76/M-DAG/PER/12/2012에서 개정됨

⁵ Presidential decree No.84/2002

⁶ Decree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85/MPP/Kep/2/2003

⁷ Government Regulation No.34/2011

웹사이트 ⁸ 의 “INFORMASI(information)” 메뉴 “REGULASI(regulatio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도표 인도네시아 무역구제 관련법 원문 검색방법

KADI
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TENTANG KAMI BERITA **INFORMASI** DOWNLOAD F.A.Q KONTAK KAMI

PERKEMBANGAN KASUS TINDAKAN PENGENAAN **REGULASI** REFERENSI

INTERNASIONAL PERATURAN MENTERI PERATURAN **UNDANG-UNDANG**

Regulasi

No.	Update	Title
1	2017-08-27	PMK No 6/PMK.010/2017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2	2017-08-27	PMK No 6/PMK.010/2017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3	2015-09-23	Undang-Undang No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4	2015-09-17	PERMENDAG 53/M-DAG/PER/9/2013
5	2015-04-09	Tata Cara Pemungutan dan Pengembalian Bea Masuk Dalam Rangka Tindakan Antidumping, Tindakan Imbalan, dan Tindakan Pengamanan Perdagangan

무역부 장관령 53/M-DAG/PER/9/2013

KADI Memulai Penyelidikan Sunset Review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I dan H Section
Kamis, 01 Februari 2018

KADI Memulai Penyelidikan Sunset Review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Kamis, 01 Februari 2018

KADI Memulai Penyelidikan Sunset Review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Tin Plate
Kamis, 01 Februari 2018

INFORMASI TERKINI

Pengenaaan BMAD Frit: PMK No. 170/PMK.010/2017
Jumst, 01 Desember 2017

출처: 인도네시아 KADI (<https://kadi.kemendag.go.id>)

⁸ <https://kadi.kemendag.go.id>

나) 유관기관

인도네시아의 무역구제 관련 기관은 총 3개로, 무역방어국, KADI, 세이프가드위원회 (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이하 “KPPI”)가 있다. 무역방어국에서는 무역 장벽의 모니터링과 무역 안보 관련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시하며 무역기술장벽, 덤핑, 보조금 그리고 세이프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⁹ KADI와 KPPI는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조사 업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부(Ministry of Trade)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무역부는 검토 결과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송부하며, 재무부는 산업 피해 여부,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① 반덤핑위원회(KADI; Komite Anti Dumping Indonesia)¹⁰

KADI는 무역부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1996년 WTO 협정 이행과 덤핑 제품 및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KADI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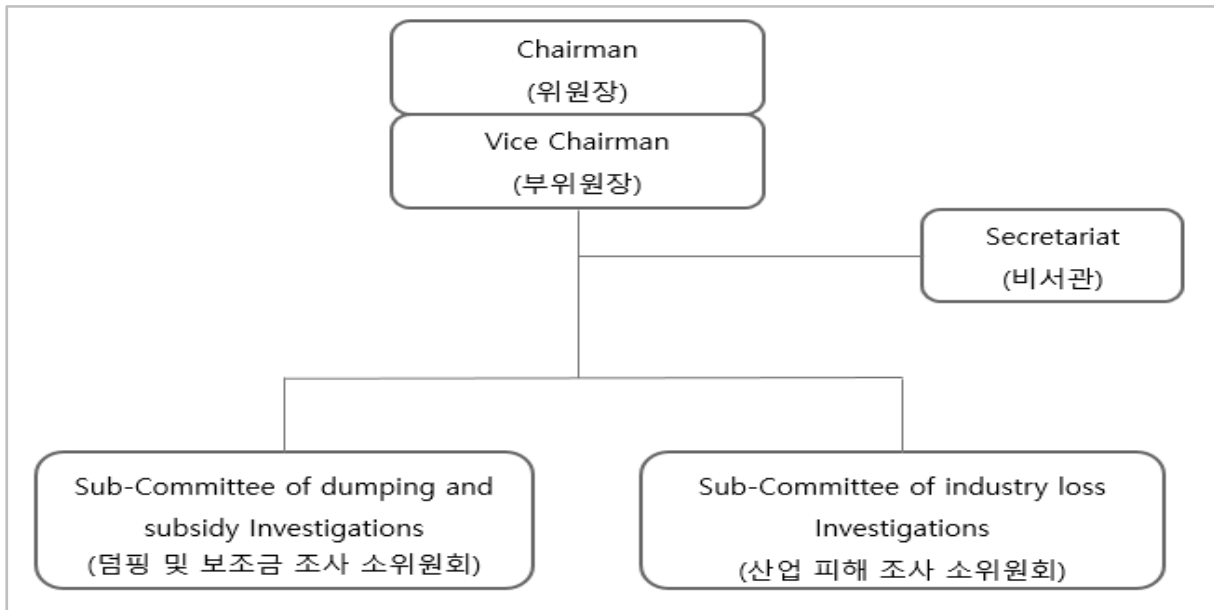
- i. 덤핑 및 불공정 보조금 지급, 내국 산업 피해의 진위 여부 조사 수행
- ii. i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 및 정보 수집, 조사 및 처리
- iii. 덤핑 제품 및 불공정 보조금 지급받은 제품에 대한 보고서 작성
- iv. 무역부 장관에게 제출할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권고안 작성
- v. 장관이 부여하는 기타 관세 부과 이행

KADI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비서관 그리고 두 개의 조사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덤핑 및 보조금 조사 소위원회는 덤핑 제품 및 보조금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 피해 조사 소위원회는 산업 피해 증거를 수집하고 덤핑 제품 혹은 보조금을 포함하는 제품과 국내 산업 피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각각의 소위원회는 최대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조사 업무는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⁹ 2017.12.14,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한-인니 무역구제정책 간담회’ 결과 보고

¹⁰ KADI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설명은 ‘Decree of Minister of Trade No.33/M-DAG/PER/6/2014’에서 확인할 수 있음

도표 KADI 조직도



출처: 인도네시아 KADI(<https://kadi.kemendag.go.id>), Decree of Minister of Trade No.33/M-DAG/PER/6/2014

② 세이프가드위원회(KPPI; 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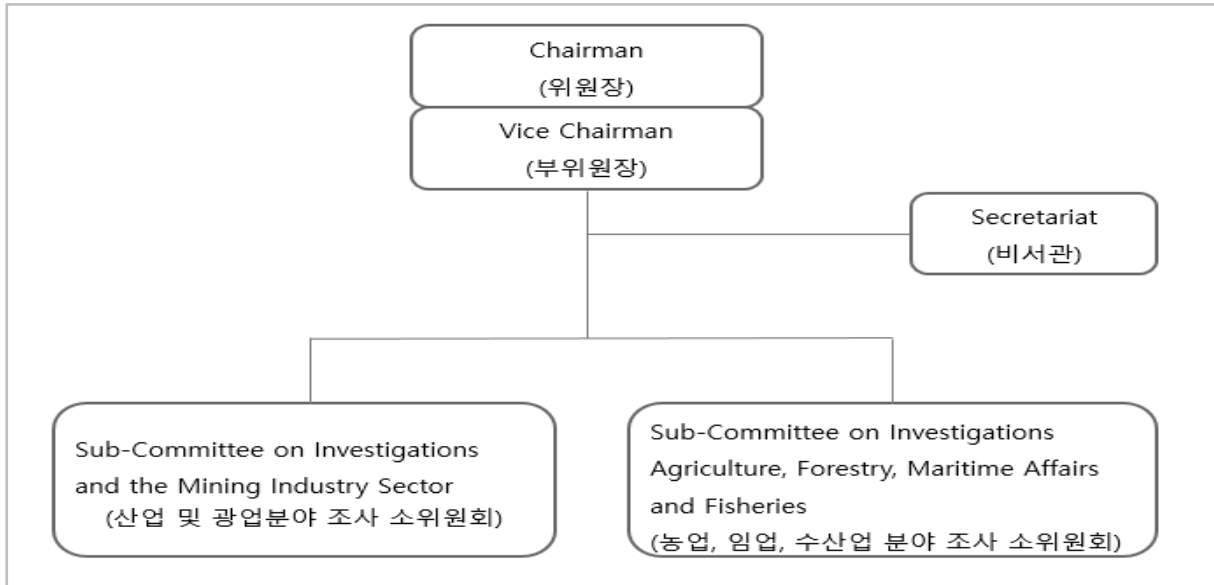
KPPI 역시 무역부 산하의 독립된 기관으로, 2003년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o.84/2002)에 따라 설립되었다. KPPI는 수입량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방지하고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KPPI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i. 동종품 수입 증가의 결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및 피해 위협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 수행
- ii. i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 및 정보 수집, 조사 및 처리
- iii.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iv. 무역부 장관에게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권고
- v. 장관이 부여하는 기타 관세 부과 이행

KPPI는 반덤핑위원회와 동일하게, 위원장과 부위원장, 비서관 그리고 두 개의 조사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두 개의 조사 소위원회는 산업 분야에 따라, 산업 및 광업분야 조사 소위원회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 조사 소위원회로 나뉘어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한다.

¹¹ KPPI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설명은 'Decree of Minister of Trade No.83/M-DAG/PER/10/2014' 및 'Government Regulation No.34/2011'에서 확인할 수 있음

도표 KADI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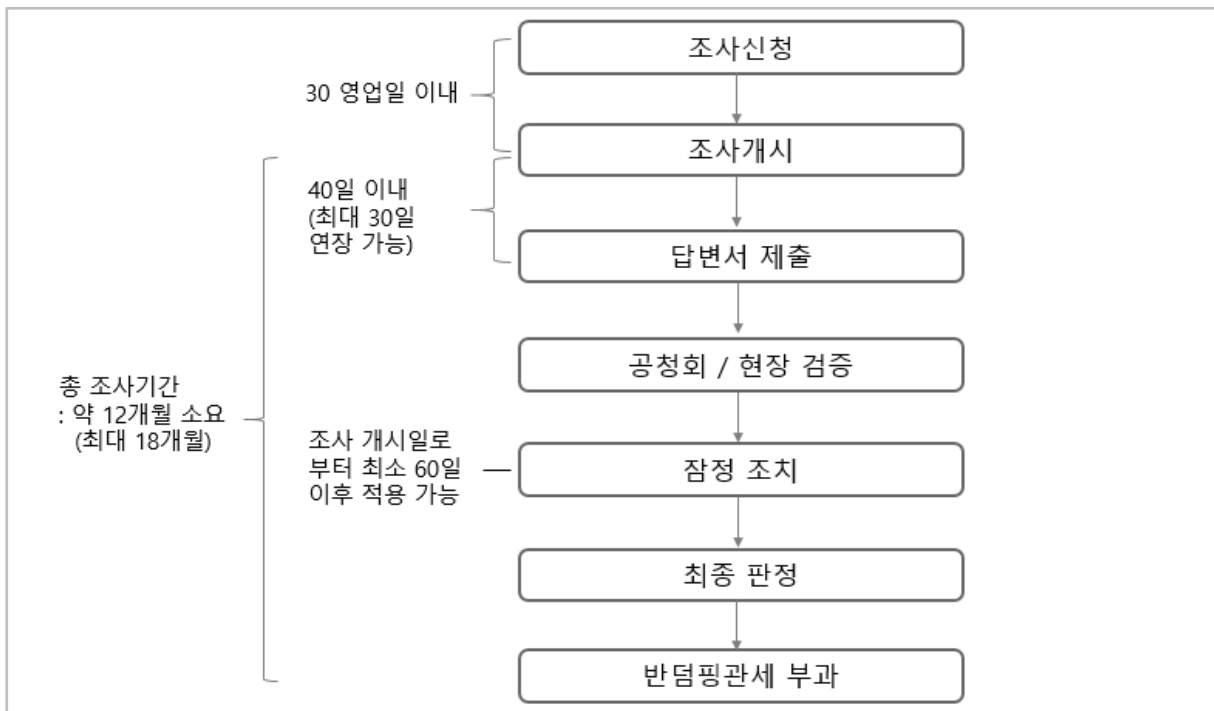


출처: 인도네시아 KPPI(<https://kppi.kemendag.go.id>), Decree of Minister of Trade No.83/M-DAG/PER/10/2014

다) 반덤핑 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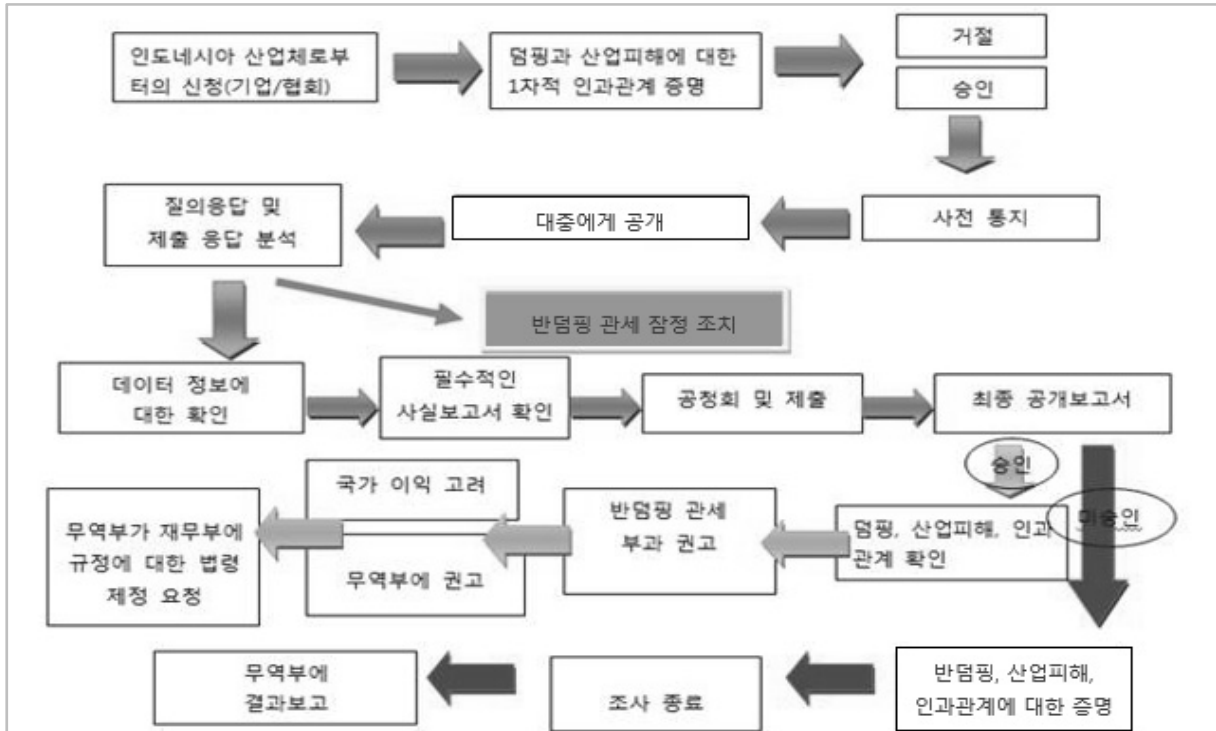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조사는 KADI에 의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도표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조사절차



출처: 반덤핑 관세 부과 및 보상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Decree of Minister of Trade No.53/M-DAG/PER/9/2013)

도표 KADI 반덤핑 조사 상세 절차



출처: 인도네시아 KADI(<https://kadi.kemendag.go.id>), ‘한-인니 무역구제정책 간담회’ 결과 보고 (2017.12.14,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① 조사 신청

조사 신청은 덤핑 제품으로 인해 산업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KADI의 자체적인 발의 또는 국내 생산자 혹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생산자의 협회의 제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국내 생산자 혹은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협회가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국내 산업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며

- i. 제소자와 조사 반대 국내 생산자의 총 생산량 합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경우
- ii. 제소자 및 제소를 지지하는 생산자들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자(제소자, 지지자, 조사 반대자를 모두 포함)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수행된다.

- i. 제소장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제소자의 생산 혹은 제소자 및 제소 지지자의 생산이 국내 산업 동종 물품 총 생산량의 25% 이상인 경우
- ii. KADI의 자체적인 의견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제소 지지자의 생산이 국내 산업 동종 물품 총 생산량의 25% 이상인 경우

또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

- i. 덤핑 마진율이 수출 가격의 2% 미만인 경우
- ii. 한 국가의 덤핑 물품 수입량이 동종물품 국내 수입량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 수입량 합계가 전체 동종물품 수입량의 7% 이하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덤핑 제품, 산업 피해, 덤핑 제품과 신청자가 겪은 산업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소장이 접수되면 KADI는 제소장 접수 사실을 수출국 정부에게 알린다. KADI는 제소자에 의해 제출된 일차적 증거의 충분성 및 정확성을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사 개시

제소장이 승인되면, 공고와 함께 조사가 시작된다. 반덤핑 조사 개시 공고 및 조사 관련 사항은 KADI 웹사이트(<https://kadi.kemendag.go.id>) "BERITA(news)" 메뉴의 "PENYELIDIKAN (investigatio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표 조사 개시 관련 사항 조회 방법

KADI 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NAVIGATION: TENTANG KAMI | BERITA | INFORMASI | DOWNLOAD | F.A.Q | KONTAK KAMI

SUB-NAVIGATION: FOTO | VIDEO | BIMBINGAN TEKNIS | **PENYELIDIKAN** | BERITA KADI | BERITA WTO | AGENDA

Penyelidikan

No.	Update	Title
1	2018-02-01	KADI Memulai Penyelidikan Sunset Review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I dan H Section
2	2018-02-01	KADI Memulai Penyelidikan Sunset Review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3	2018-02-01	KADI Memulai Penyelidikan Sunset Review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Tin Plate
4	2018-02-01	KADI Memulai Penyelidikan Sunset Review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Hot Rolled Coil
5	2018-02-01	KADI Memulai Penyelidikan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Spin Drawn Yarn

BERITA TERKINI

KADI Memulai Penyelidikan Sunset Review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I dan H Section
Jumat, 01 Februari 2018

KADI Memulai Penyelidikan Sunset Review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Jumat, 01 Februari 2018

KADI Memulai Penyelidikan Sunset Review Anti Dumping Atas Barang Impor Tin Plate
Jumat, 01 Februari 2018

INFORMASI TERKINI

Pengenaan BMAD Frit: PMK No. 170/PMK.010/2017
Sabtu, 01 Desember 2017

출처 : 인도네시아 KADI(<https://kadi.kemendag.go.id>)

KADI는 조사 공고와 함께, 조사 개시 사실을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생산자(직접 혹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수출국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 제소자(KADI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제소자 대신 국내 산업)에게 알리고 질문서를 발송하여 답변 제출을 요청한다. 인도네시아 반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특별한 경우 조사 기간은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기간 중 언제라도 덤핑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는 즉시 종결된다. 이 경우, KADI는 조사 종결 사실을 무역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출자 혹은 생산자에게(직접 혹은 수출국 정부를 통해서) 수출국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 제소자 혹은 국내 산업 그리고 수입자에게 이를 알린다. 또한 KADI는 조사 종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덤핑 제품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를 종결하였음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답변서 제출

답변서는 질문서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최대 30일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답변서가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답변서는 기밀(Confidential) 버전과 이해 당사자들의 검토를 위한 기밀이 아닌(Non-confidential) 버전 두 가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다른 당사자들이 해당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밀 정보에 대한 요약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기밀이라고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모든 질문의 답변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증빙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인도네시아 반덤핑 질문서는 'Introduction(도입)'을 시작으로 '답변 작성에 필요한 일반 지침사항' 그리고 A~H까지 8개의 질문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 부분에서는 질문서 요청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 회사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질문서 작성을 위한 일반 지침'에서는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제품 및 HS Code를 비롯하여 문서 형식, 글꼴 등 형식적 요건, KADI 조사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표 인도네시아 반덤핑 질문서(Anti-dumping questionnaire) 구성

SEC.	Title	Sub Title
	Questionnaire for exporter(s)/producer(s) 수출자/생산자용 질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 질문서 작성을 위한 일반 지침
A	General information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정보(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FAX) • 법적 대리인 정보 • 기업 정보 • 일반 회계 정보
B	Product description 제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범위 • 제품 특징 • PCN(Product Control Numbers, 제품통제번호)
C	Operating statistics 경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 손익계산서 • 생산 및 생산 능력 데이터 • 재고 • 고용 • 투자 • 유통 채널
D	Domestic sales of the product concerned 내수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정보 • 관계사/비관계사로의 판매 • 내수 판매 관련 직접 비용 • 내수 판매 관련 조정
E	Export sales of the product concerned to Indonesia and other market 인도네시아 혹은 기타 시장으로의 수출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정보 • 관계사/비관계사로의 판매 • 인도네시아로의 판매 개발 • 수출 관련 직접 판매 비용 • 수출 판매 관련 조정
F	Cost of goods sold and operational expenses 매출원가 및 운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시스템 및 정책 • 제조 공정 및 제조 원가 • 직접 재료/기타 주요 부품 구매 • 매출원가 및 운영 비용
G	Computerized information required 컴퓨터 파일 제출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ROM 용 일반 설명 • 제품 설명 관련 파일 설명 • 내수 판매 관련 파일 설명 • 인도네시아 수출 판매 관련 파일 설명 • 기타 시장 판매 관련 파일 설명 • 매출원가 및 운영 비용 관련 파일 설명
H	Check list 체크리스트	
Annex	I. GLOSSARY II. GUIDELINES FOR COMPLETING THE QUESTIONNAIRE VERSION INTENDED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RTIES III. EXCHANGE RATES IV. NATIONAL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PRODUCT CONCERNED	I. 용어설명 II. 관계사 조사를 위한 질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III. 환율 IV.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④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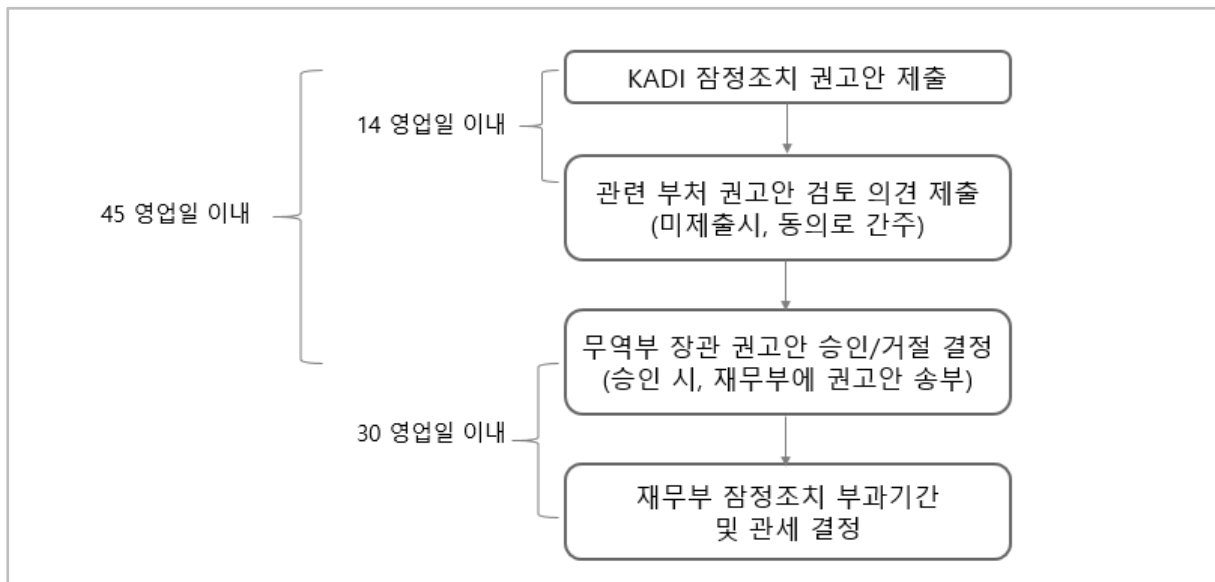
KADI는 수출자, 생산자 등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와 증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공청회에서 언급한 정보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KADI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⑤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

잠정조치란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판결이 나기 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KADI가 조사 초기, 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덤핑 제품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예비 결정을 내리고 무역부 장관에게 잠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안을 받은 무역부 장관급 혹은 다른 정부부처들은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만약 14일 이내에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KADI의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무역부 장관은 KADI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권고안 승인 혹은 거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역부 장관이 권고안을 승인하면, 권고안은 최종 결정을 위해 재무부로 송부된다. 재무부는 이를 검토하여 수취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및 관세율을 결정한다.

도표 반덤핑관세 잠정조치 부과절차



출처: 반덤핑 관세 부과 및 보상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Decree of Minister of Trade No.53/M-DAG/PER/9/2013) Article 18

잠정조치는 최대 4개월 동안 적용되며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조사대상 제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기간은 6개월까지 연장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잠정 관세가 덤핑마진보다 낮게 부과되는 경우, 잠정조치는 6개월 혹은 최대 9개월 동안 적용될 수 있다.

KADI 최종 조사 결과 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덤핑 물품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역부 장관은 잠정조치의 종결을 결정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종 판정은 재무부의 역할이므로 무역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KADI의 보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에게 알린다. 무역부의 의견을 받은 재무부 장관은 무역부 장관의 보고를 수취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잠정조치의 종결을 규정한다. 잠정 반덤핑 관세 납부 방법, 환불 절차 등은 재무부 장관령을 따른다.

⑥ 현장검증(On-the-spot visit)

질문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KADI는 정보 혹은 문서의 정확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제소자 혹은 국내 산업에 대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수출자 혹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내 수출국 정부 대표에게 검증 사실을 알린다.

⑦ 반덤핑 관세 부과

반덤핑 관세 부과는 앞서 설명한 [도표]의 잠정조치 부과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KADI는 조사 결과 반덤핑 권고안을 무역부 장관급 혹은 다른 정부부처들에 검토를 요청하고, 이후 재무부 장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및 관세율을 최종 결정한다. 조사를 받지 않은 수출자 혹은 수출자의 생산자로부터 수출된 물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다음을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i. 조사 대상인 선별된 수출자 혹은 생산자로부터 수취한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된 덤핑 마진의 가중평균, 또는
- ii. 선별된 수출자 혹은 생산자 물품의 정상 가치의 가중평균과 조사를 받지 않은 수출자 혹은 생산자의 수출가격의 차이

반덤핑 관세는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 간 유효하며, 다음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덤핑 관세는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일 이전 90일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i. 반덤핑관세의 산업피해 구제 효과를 훼손할 만큼의 대량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단기간 내에 유입될 경우, 또는
- ii. 수입자들이 덤핑물품을 수입해 옴에 따라 피해를 유발할 경우

⑧ 중간재심(Interim Review)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후 최소 12개월이 경과한 후, 반덤핑 관세율에 대한 중간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중간재심은 KADI의 자체적인 판단 혹은 아래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신청서 제출로 시작된다.

- i. 반덤핑 관세 부과 종결을 요청하는 수출자, 생산자 혹은 수입자
- ii. 반덤핑 관세 부과 이전에 덤핑 물품 수출을 진행한 이력이 없는 수출자, 생산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함)
- iii. 반덤핑 관세율 개정을 요청하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제소자 혹은 국내 산업

중간재심 신청서 처리 및 조사 절차는 앞서 설명한 반덤핑 조사 절차와 동일하다. 중간재심 조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 철회 혹은 유지, 그리고 반덤핑 관세율 변경이 적용될 수 있다.

⑨ 일몰재심(Sunset Review)

일몰재심은 반덤핑 관세 부과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수출자, 생산자 등 이해 관계자의 신청 혹은 KADI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시작된다. 일몰재심 신청서 및 KADI의 일몰재심 개시 의사는 반덤핑 관세 부과 만료일 15개월 전에는 제출되어야 한다. 일몰재심 조사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고,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사 절차와 동일하다. KADI는 일몰재심 조사에서 아래의 사항들을 검토한다.

- i. 덤핑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지속적 존재 가능성
- ii. 반덤핑 관세 철회 후, 덤핑 및 피해의 재발 가능성

반덤핑조사, 중간재심, 일몰재심의 결과는 KADI 웹사이트의 "INFORMASI(information)" 메뉴의 "TINDAKAN PENGENAAN(The act of imposi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표 반덤핑 관세부와 결과 관련 재무부 장관령 조회 방법

KADI
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PERKEMBANGAN KASUS
PMK BMI PMK BMAD

No.	Update	Title
1	2017-12-01	Penaan BMAD Frit: PMK No. 170/PMK.010/2017
2	2017-01-24	Penaan BMAD BOPET: PMK No. 1/PMK.010/2017
3	2016-05-26	Penaan BMAD Polyester Staple Fiber: PMK No. 73/PMK.010/2016
4	2016-04-15	Penaan BMAD Hot Rolled Plate: PMK No. 50/PMK.010/2016
5	2016-01-08	Penaan BMAD BOPET: PMK No. 221/PMK.010/2015
6	2015-12-31	Penaan BMAD H Section dan I Section: PMK No. 242/PMK.010/2015

INFORMASI TERKINI
Penaan BMAD Frit: PMK No. 170/PMK.010/2017
Sabtu, 01 Desember 2017

출처 : 인도네시아 KADI(<https://kadi.kemendag.go.id>)

라) 상계관세 조사절차

상계관세는 수입 관세에 더해 부과되는 것으로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입된 상품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부과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이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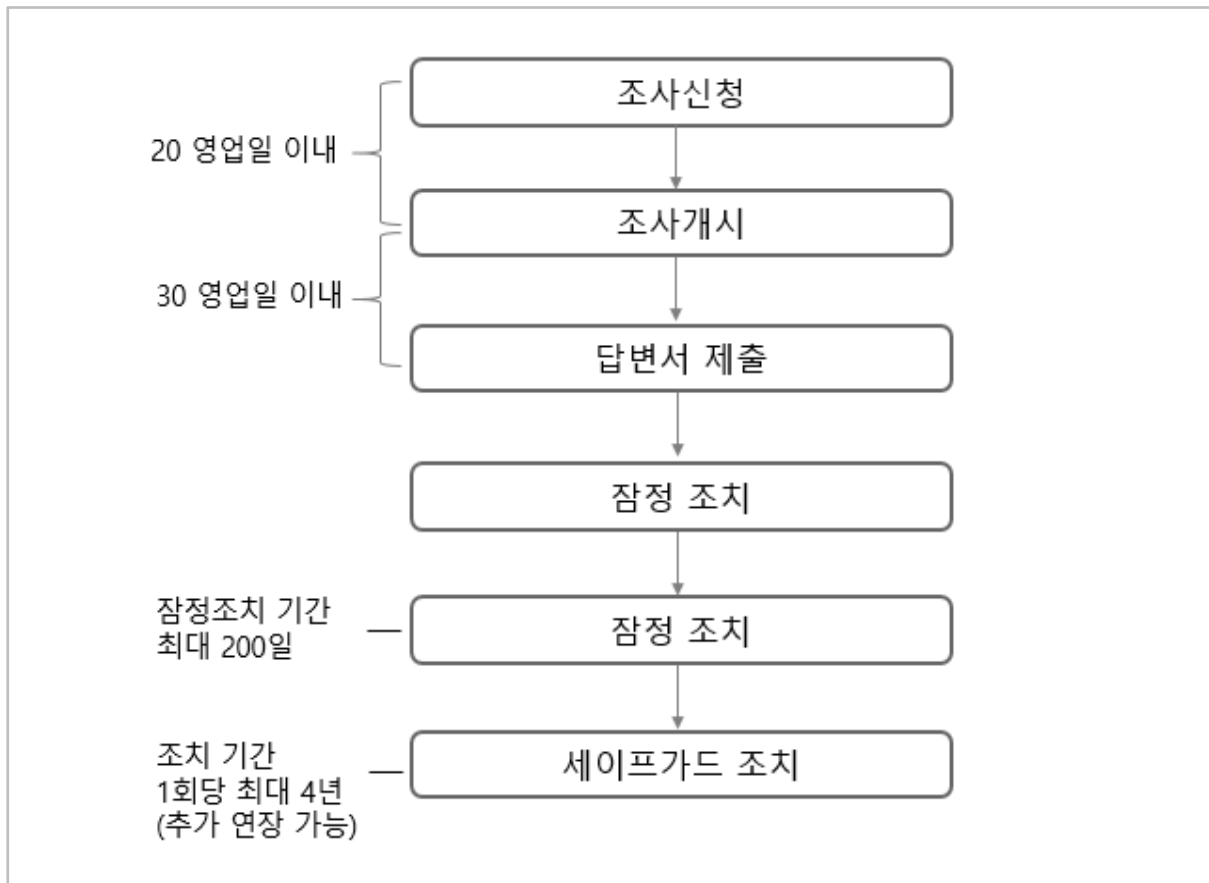
상계관세 조사 접수, 개시, 잠정 조치, 중간재심 및 일몰 재심 절차 등은 반덤핑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단, 아래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계관세 조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조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즉시 종결된다.

- 보조금 비율이 종가세(ad valorem)의 1% 미만인 경우
- 실질적 혹은 잠재적으로 보조금을 포함해 수입된 물품의 양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마)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세이프가드 조사는 KPPI에 의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도표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출처: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 절차 및 요건을 다룬 산업통상부 장관령
(Decree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85/MPP/Kep/2/2003)

① 조사 신청

세이프가드 조사는 국내 산업의 신청 또는 KPPI의 자체 발의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하는 국내 산업 관계자들은 KPPI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동종 물품 혹은 직접 경쟁 물품과 동일한 제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KPPI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토하여 거절 혹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사 개시

조사는 공표되는 시점에 시작된다. 신청서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KPPI는 조사 개시 사실을 제소자와 수입자 협회에 알린다. KPPI 자체 발의에 의한 조사의 경우, 국내 산업 관계자와 수입자 협회에 이를 알린다.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 및 물품 정보는 KPPI 웹사이트의 "BERITA(news)" 메뉴의 "DAFTAR PENYELIDIKAN(Investigation 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표 | 세이프가드 조치 물품 정보 조회 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KPPI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header with the KPPI logo and the text '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Below the header i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TENTANG KAMI', 'BERITA', 'KONTAK KAMI', 'FAQ', 'DAFTAR PENYELIDIKAN', 'BERITA WTO', and 'BERITA KPPI'.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DAFTAR PENYELIDIKAN'. Below the banner, there is a section titled 'Daftar Penyelidikan' which contain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No.	Jenis Produk	Jumlah
1.	Produk yang telah dikenakan TPP berupa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BMTP)	16 Produk
2.	Produk yang telah dikenakan TPP berupa kuota	1 Produk
3.	Produk yang sudah dikenakan TPP dan diperpanjang	4 Produk

To the right of the table, there is a section titled 'BERITA TERKINI' (Latest News) with the following text: 'KPPI Mulai Melakukan Penyelidikan Perpanjangan BMTP Atas Produk Impor Canai Lantain Dari Besi Atau Baja Bukan Paduan' dated '23 Januari 2017'. Below this, there is a link to 'Siaran Pers KPPI Hentikan'.

출처: 인도네시아 KPPI(<http://kppi.kemendag.go.id>)

③ 자료 요청 및 공청회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KPPI는 제소자, 수입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관련 정보와 문서를 요청한다. KPPI로부터 정보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KPPI는 생산자, 수출자, 제소자, 국내 산업, 수입자, 수출국 정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자료 및 의견을 수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해 당사자들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5일까지 관련 증거 및 답변을 서면 제출할 수 있다.

④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

잠정조치란 세이프가드 부과 조치 지연으로 인해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KPPI가 최종 판결이 나기 전 잠점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권고안을 받은 무역부 장관급 혹은 다른 정부부처들은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만약 14일 이내에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KPPI의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무역부 장관은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 금액과 기간을 결정하여,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무부에 송부하여 최종 결정을 요청한다. 이 때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재무부는 수취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수취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승인 시, 관세율 및 기간을 재무부 장관령을 통해 발표한다.

⑤ 세이프가드 조치

KPPI의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함을 권고하는 경우 잠정 조치와 동일하게 KPPI의 권고안은 무역부 장관 혹은 다른 정부부처들의 검토를 거쳐 재무부 장관에게 전달된다. 재무부 장관은 무역부 장관으로부터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관세 혹은 쿼터, 조치 기간에 대한 결정을 내려 재무부 장관령을 통해 공표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추가적으로 최대 4년, 마지막으로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다. 최초 발동된 세이프가드 조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기간 동안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중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중간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KPPI는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혹은 세이프가드 관세율 감소 혹은 쿼터량 증가를 무역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경우에는, 조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능하다. 단, 예외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일 후 1년 경과하고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5년동안 2번 이상 같은 물품에 대해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80일 이하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허용될 수 있다.

3

사례 및 시사점

가) 중국, 한국 및 말레이시아산 PET에 대한 반덤핑

① 쟁점사항: 제소자 적격 여부

동 사건의 제소자인 PETNESIA RESINDO("PNR")와 IPPI의 제소자 자격이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다. 제소자들이 조사대상 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다로 제소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제소자인 PNR은 조사대상국 수출자인 Toray Korea가 지분 46.3%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자이므로 제소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조사당국은 Mitsui Chemical사가 이보다 더 많은 47.07%를 보유함으로써 조사대상 수출자인 Toray Korea와 PNR 간에는 지배-종속 관계가 없으므로 제소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IPPI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자인 Guangdong의 임원 중 한 명이 IPPI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자 부적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조사당국은 IPPI가 Guangdong 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모회사에 의한 간접 지배 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당해 모회사는 PET 사업분야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역시 제소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위 사례와 같이, 제소자 적격 여부에 대한 주장은 많은 수입규제 사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소기업의 특수관계에 대한 주장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소자 부적격 주장은 받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경우 제소기업의 국내산업 대표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반덤핑협정 5.4조는 제소자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대표성'을 규정하고 있다.

- i.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의 찬반 의사를 표한 국내산업의 국내 총생산량의 과반수(50% 초과)가 지지해야 한다
- ii. 그러나, 동 신청에 대해 찬성을 표한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물품의 수량이 국내산업이 생산한 동종물품의 전체 생산량의 2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 제소자가 국내산업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해 국가의 국내산업을 구성하는 기업 중 조사개시에 대해 반대 입장인 기업 또는 찬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아니한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소기업이 '국내산업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등 당해 조사를 철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VI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개요
2. 제도 및 절차
3.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개요

말레이시아는 국제무역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써, 특히 국내 제조 부문에 있어 외국 투자와 국제 경쟁에 개방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에 있어 국제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큰 역할을 했는데,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5년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최근 22년 동안 총 8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주로 철강분야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 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반덤핑조치 대상국가는 한국과 태국으로, 1995년에 PVC 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다. 특이한 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은 반덤핑조치를 단 한번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2007년 추산 2006년 GDP성장률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무역규모도 사상 최초로 RM 1조(약 260조원)를 돌파한 것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2012년 이전까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중심으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로 한국산 전기강판과 선재강 등 철강제품 관세율이 0%로 하락하면서 수입이 증가한 것을 계기로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다만, 한국보다 일본으로부터의 철강제품 수입이 더 많았음에도 일본산 철강제품에 대한 조사 개시 사례는 많지 않은데, 이는 말레이시아 주요 철강사의 지분 중 많은 부분을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표 말레이시아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5~2017)

(단위: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 계
반덤핑	3	2	8	1	2	-	1	5	6	3	4	8	-	-	-	-	-	11	8	8	14	-	4	88
상 계 관 세	-	-	-	-	-	-	-	-	-	-	-	-	-	-	-	-	-	-	-	-	-	-	-	0
세이프 가 드	-	-	-	-	-	-	-	-	-	-	-	-	-	-	-	-	1	-	-	1	1	2	-	5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Report 2017에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는데, 총 88건의 반덤핑 조사 중 한국을 대상으로 15건(17%)을 개시했고, 인도네시아 13건(14.7%), 중국 12건(13.6%), 태국 10건(11.3%)을 각각 조사 개시했다.

도표 조사대상국별 말레이시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1995-2017)

(단위: 건)

국 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대만	일본	베트남	EU	호주	홍콩	필리핀	기타	총계
건 수	15	13	12	10	9	4	4	3	2	2	2	12	88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도표 말레이시아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번 호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규제시작일
1	냉연스테인리스강 (Cold Rolled Stainless Steel)	AD (규제 중)	2017-05-15	2018-02-08
2	강선재와 변형된 코일철근 (Steel wire rod and deformed bar-in-coil)	SG (규제 중)	2016-05-29	2017-04-14
3	냉연코일 (Cold rolled coil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AD (규제 중)	2015-08-27	2016-05-23
4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AD (규제 중)	2014-06-17	2015-03-10

2

제도 및 절차

가) 말레이시아 국내법

①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말레이시아는 1959년 관세법(Customs Act 1959)을 통해 최초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률("Act 361")을 제정하였다. 수출가 결정, 공정 시장가격, 덤핑의 정의, 그리고 반덤핑 관세 면제 등 주요한 규정들은 GATT 1947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Act 361은 그 시행에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첫째,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둘째, 당시 재무부가 반덤핑관세를 결정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반덤핑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¹.

이후 케네디 라운드(1964-1967), 도쿄라운드(1973-1979),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4)로 인해 GATT 체제의 반덤핑 법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도 이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에는 기존의 Act 361을 폐지하고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에 관한 법 1993(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Act 504"를 도입하였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종료되면서 말레이시아는 1998년 또 한번 기존 Act 504을 개정하였는데, 그 당시 기본 원칙, 정의, 조사 절차 등 40개의 주요 조항들을 개선시켰다. 현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의 근본이 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다.

- ✓ Countervailing & Anti-Dumping Duties Act 1993 (1993년 7월 15일 발효)
- ✓ Countervailing &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 (1994년 4월 28일 발효)

②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 WTO 협정의 세이프가드 조항과 유사한 "세이프가드법 2006"을 제정했다.

- ✓ Safeguards Act 2006
- ✓ Safeguards Regulations 2007

¹ The International Trade Law Review - Edition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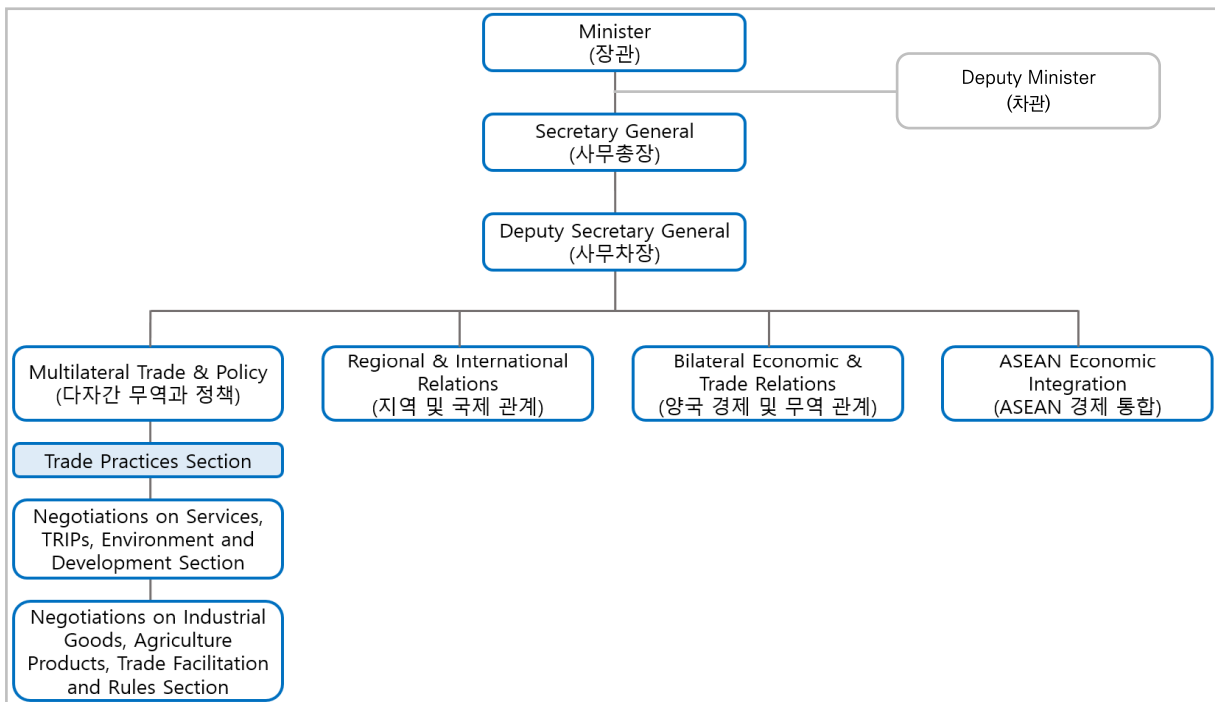
<https://thelawreviews.co.uk/edition/the-international-trade-law-review-edition-3/1148542/malaysia#footnote-071>.

나) 유관기관: 통상산업부(MITI;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상계 및 반덤핑에 관한 법 1993(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이 제정되면서 통상산업부 산하의 무역관행 담당 부서(Trade Practices Section)가 생겼는데, 무역구제조치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Trade Practices Section은 조사 실무와 그에 따른 판정을 담당하며, 최종 조치의 부과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 ✓ 무역구제정책 입법화, 시행 및 집행
-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 국내산업의 제소장 준비에 대한 조언
- ✓ 다른 국가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따른 국내산업 지원
- ✓ WTO 및 기타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무역구제에 관한 다자간 협상 참여
- ✓ 국내외 무역거래 불만 처리 및 조사

도표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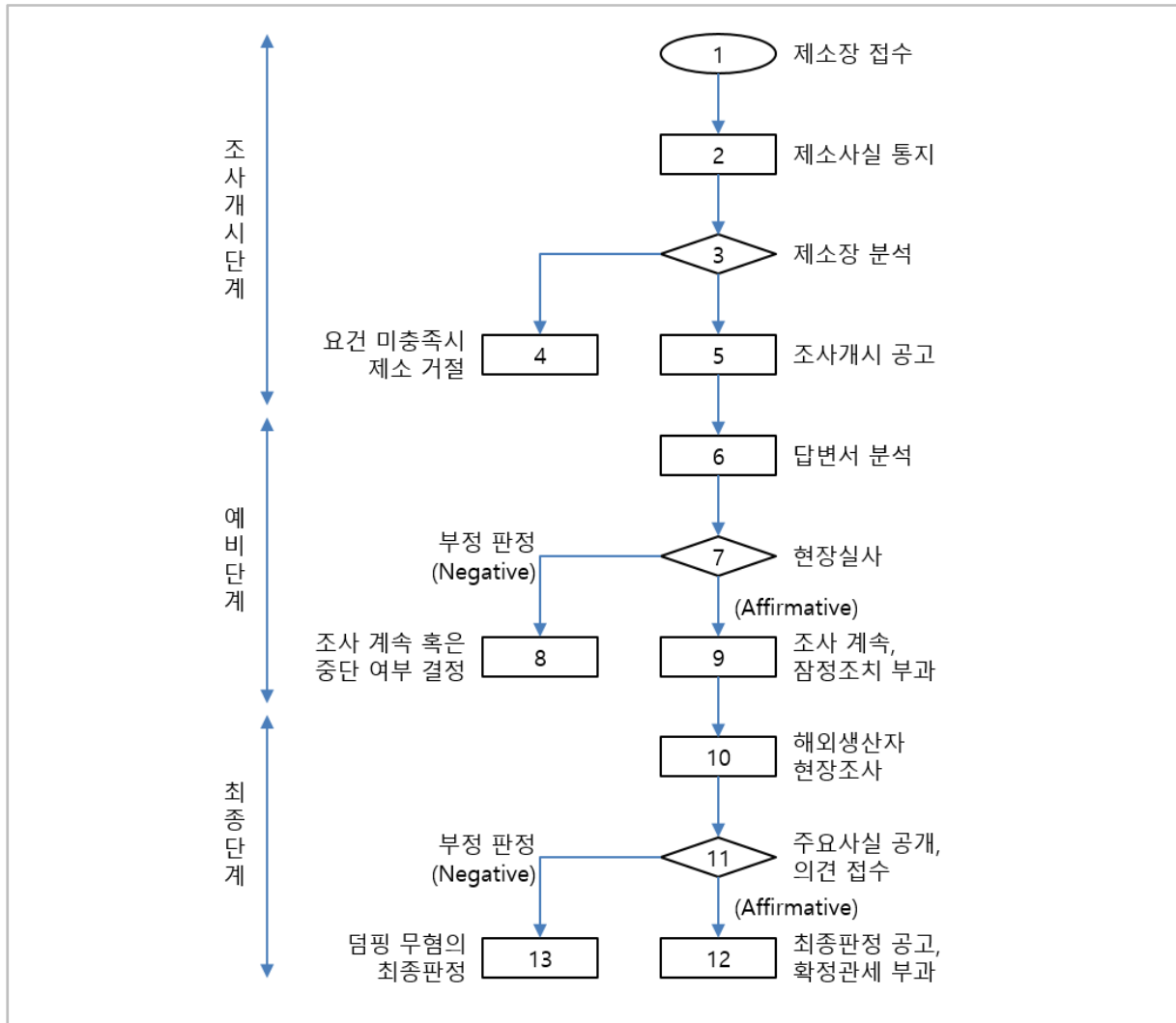


출처: MITI

최근 말레이시아 조사 당국은 질문서 간소화 등 조사절차를 개선 및 국내산업이 수입규제 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관들의 역량강화가 개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조직 차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사 팀 구성도 체계화하였다. 조사 경험이 많은 조사관과 신입 조사관을 함께 투입해 On the Job Training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계사와 관세 전문가까지 4인으로 팀을 구성토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기관, 관세청, 재무부, 정책 입안 부서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절차

도표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조사 절차



③ 제소장 접수

제소장은 조사대상물품과 동종 제품을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가 덤핑 혹은 보조금 지급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문서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소장에는 국내산업 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물량을 생산하는 자들의 찬-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찬성하는 자들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25%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량 기준의 제소 요건은 말레이시아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MITI의 홈페이지에 제소요건을 설명하는 자료에만 제시되어 있다.²

² <http://www.miti.gov.my/index.php/pages/view/2033?mid=169>

In this context the petitioner must show that the petition is supported by the domestic producers whose

④ 조사개시

제소장이 접수되면, 조사당국은 30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제소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조사개시 사실을 공고한다. 말레이시아 관보는 아래 링크에서 찾을 수 있다. Search by Act를 선택한 뒤, 반덤핑법 혹은 세이프가드법을 지정하여 조회하면 당해 법률과 관련된 공고문들이 모두 조회된다.

말레이시아는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국가여서, 아래와 같은 조사개시 공고문을 비롯해 모든 문서가 말레이어와 영어가 함께 표시된다.

도표 말레이시아 공식 관보(Official Gazette)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Portal e-Federal Gazette' website. The header includes the Malaysian coat of arms, the title 'Official Portal e-Federal Gazette', and the 'Attorney-General's Chambers' logo. Navigation tabs include HOME, T&C, LOH, SEARCH, FAQs, LINKS, CONTACT US, and FEEDBACK. A 'National Language' dropdown is on the right.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search result for 'Counteract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 Act 504'. A table lists several entries with columns for 'No.', 'Pub', 'Date of Publication', 'P.U. Number', 'Title', and 'Act'. The table includes entries for 'COURTS (MODES OF COMMENCEMENT OF CIVIL ACTIONS) ACT 2017 - ACT 790' and 'COURTS (MODES OF COMMENCEMENT OF CIVIL ACTIONS) ACT 2017 - ACT 790'.

No.	Pub	Date of Publication	P.U. Number	Title	Act
1	264	23-10-2012	R.U. (A) 343/2012	NOTICE OF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WITH REGARD TO IMPORTS OF STEEL WIRE RODS ORIGINATING OR EXPORTED FROM CHINESE TAIPEI,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TURKEY	PRINCIPAL
2	274	23-10-2012	R.U. (B) 332/2012	NOTICE OF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WITH REGARD TO IMPORTS OF STEEL WIRE RODS ORIGINATING OR EXPORTED FROM CHINESE TAIPEI,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TURKEY	PRINCIPAL
3	274	23-10-2012	R.U. (B) 333/2012	NOTICE OF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WITH REGARD TO IMPORTS OF STEEL WIRE RODS ORIGINATING OR EXPORTED FROM CHINESE TAIPEI,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TURKEY	PRINCIPAL

출처: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index.php>

collective output/production constitutes more than 50% of the total production of the domestic producers expressing either support or opposition to the petition and the domestic producers expressing support to the petition amount to 25% of the total production of the domestic industry.

 <p>15 Mei 2017 15 May 2017 P.U. (B) 255</p>	<p>WARTA KERAJAAN PERSEKUTUAN</p> <p><i>FEDERAL GOVERNMENT GAZETTE</i></p>
<p>NOTIS PEMULAAAN PENYIASATAN DUTI ANTI-LAMBAKAN MENGENAI IMPORT KELULI TAHAN KARAT GULUNGAN SEJUK DALAM BENTUK GEGELUNG, KEPINGAN ATAU APA-APA BENTUK LAIN YANG BERASAL ATAU DIEKSPORT DARI REPUBLIK RAKYAT CHINA, REPUBLIK KOREA, <i>CHINESE TAIPEI</i> DAN THAILAND</p> <p><i>NOTICE OF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WITH REGARD TO THE IMPORTS OF 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OTHER FORM ORIGINATING OR EXPORTE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KOREA, CHINESE TAIPEI AND THE KINGDOM OF THAILAND</i></p>	
<p>DISIARKAN OLEH/ PUBLISHED BY JABATAN PEGUAM NEGARA/ ATTORNEY GENERAL'S CHAMBERS</p>	

⑤ 예비판정

예비판정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내에 이루어지며, 30일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개시로부터 예비판정 전까지 질문서와 답변서가 반복되는 것은 타 국가와 동일하다. 수출자에 대한 현장 실사는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정 전에 이루어지나, 국내산업과 수입업자에 대한 실사는 예비판정 전에 이루어진다.

덤핑 혹은 보조금 지급사실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여 '긍정(affirmative)'의 예비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당국은 이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잠정조치는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 간 연장이 가능하다.

반대로 '부정(negative)' 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당국은 동 판정 이유를 공시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덤핑 혹은 보조금의 존재에 대한 예비판정 혹은 산업피해에 관한 예비판정 중 하나라도 부정 판정이 내려지면 즉시 조사를 종결시키는 데 반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부정 예비판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종결하지 아니한다. 대신, 최종판정 결과가 내려질 때까지 조사를 지속할지 또는 중단할지를 이 단계에서 결정한다.

⑥ 공청회

예비판정문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해당사자들은 공청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당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공청회 개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조사당국이 결정하면, 개최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공청회 개최 시간과 장소를 통지한다.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문서로써 참석을 신청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자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최종판정

최종판정은 예비판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20일 내에 내려지며, 현장실사가 이 기간 중 이루어진다. 현장 실사 이후 최종판정에 사용될 주요 사실을 공개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최종적으로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확정 관세가 5년 간 부과되며, 부정 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는 종결된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의 최종판정 공고문을 보면, 동일 제목으로 두 건의 공고가 동시 게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판정으로 하나는 '긍정 판정(Affirmative Determination)' 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 판정(Negative Determination)'이다. 두 공고는 같은 날 게재 되면서 번호만 달라 오해하기 쉽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긍정 판정'에서 전체 조사대상 기업들과 각각의 덤핑마진율이 공개되고, 그 중 미소마진(2% 미만) 기업들만 별도로 '부정 판정'을 추가로 게재하는 것이다.

도표 최종판정 공고문 예시최종판정 공고문 예시

No.	Publication Date	No. P.U.	Title	Status of Legislation	Related Legislation	Download
100	07-02-2018	P.U. (B) 67/2018	NOTICE OF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WITH REGARD TO THE IMPORTS OF 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OTHER FORM ORIGINATING OR EXPORTE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KOREA, CHINESE TAIPEI AND THE KINGDOM OF THAILAND ACT 504 -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PRINCIPAL		
101	07-02-2018	P.U. (B) 68/2018	NOTICE OF NEGATIVE FINAL DE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WITH REGARD TO THE IMPORTS OF COLD ROLLED STAINLESS STEEL IN COILS, SHEETS OR ANY OTHER FORM ORIGINATING OR EXPORTE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KOREA, CHINESE TAIPEI AND THE KINGDOM OF THAILAND ACT 504 -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PRINCIPAL		

⑧ 이행약속

덤핑 조사 및 보조금 조사 모두 이행약속(undertakings)을 허용한다. 이행약속은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및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국 혹은 수출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덤핑 조사의 경우 이행약속은 산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까지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보조금 조사의 경우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지급 규모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기로 약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⑨ 재심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말레이시아 역시 재심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재심은 확정 관세의 부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납부한 관세가 과도한 경우 환급을 위한 재심도 역시 가능하나 아직까지 신청 사례는 찾을 수 없다. 환급 재심은 실제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물품 통관 후 30일 이내 세관에 충분한 증거와 함께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청을 하는 대상 기간은 직전 12개월이며, 재심은 180일 내에 종결된다. 동 재심을 통해 덤핑마진을 재산정하고, 과거 12개월 간 납부한 관세가 동 덤핑마진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로이 결정된 덤핑마진은 이후에 통관되는 물품에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은 Countervailing &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의 제36조 7항이다. 환급재심을 통해 재산정된 덤핑마진이 과거 결정되어 납부한 관세보다 크다면, 차액을 수입자가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반덤핑관세 부과에는 두 가지 기초가 있는데, 반덤핑협정 9.3.1조의 소급적 기초(retrospective basis)와 9.3.2조의 전망적 기초(pro prospective basis)가 그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전망적 기초에 의하므로 반덤핑협정 9.3.2조³가 적용된다. 이에 '환급' 요청에 따라 덤핑마진을 재산정하고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덤핑마진이 오히려 높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반덤핑 협정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각 국가마다 재량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당해 조문이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납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정된 덤핑마진을 장래 적용하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이나, 과거 기간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추가 징수하는 상황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³ ADA 9.3.2 When the amount of the anti dumping duty is assessed on a prospective basis, provision shall be made for a prompt refund, upon request, of any duty paid in excess of the margin of dumping. A refund of any such duty paid in excess of the actual margin of dumping shall normally take place within 12 months, and in no case more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a request for a refund, duly supported by evidence, has been made by an importer of the product subject to the anti dumping duty. The refund authorized should normally be made within 90 days of the above noted decision.

⑩ 우회덤핑과 환적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회피를 위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조사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피를 위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적절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입규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음을 여러 포럼을 통해 알리고 있는 바, 우회덤핑 조치도 곧 실제 사례가 나오면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직접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해서 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경유지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보아 모든 규정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라)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① 제소장 접수 및 조사개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인도 국내업체는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소장이 제출될 경우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은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큰 경우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당국이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근거와 이유를 제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통지를 받은 제소자는 통지문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간은 제소장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반면, 제소자는 조사 개시 전 언제든지 제소장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와 달리 세이프가드는 조사당국의 직권으로도 개시가 가능하다.

② 질문서의 배포 및 답변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사당국은 필요한 정보의 입수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질문서를 배포할 수 있다. 답변을 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는 조사개시 공문이 공고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질문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답변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

조사당국은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30일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최종 판정까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판정에서 부정 판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로 부과된 관세는 즉시 환급토록 되어있다.

Safeguard Regulation 2007 10조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누락된 경우가 아닌 한, 조사를 계속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예비판정에서 부정 판정이 내려진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있다.

④ 확정판정

Safeguard Regulation 2007 제12조는 확정판정 기한을 '잠정조치 부과일로부터 200일 내'로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다음 정보가 포함된 결정문을 공고토록 하고 있다.

- ✓ 조사대상 물품의 정의와 품목분류 번호
- ✓ 국내 동종물품 혹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물품의 정의
- ✓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요소
- ✓ 수입증가가 어떻게 피해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설명
- ✓ 확정 세이프가드 관세 금액, 또는 수량 제한의 방식을 취할 경우 수출국들 간 쿼터의 분배와 그 기준
- ✓ 확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기간
- ✓ 확정 조치가 1년을 초과할 경우 동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일정표
- ✓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개도국 명단

가) 중국, 한국, 대만 및 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① 쟁점사항: 피제조국의 변경 및 재조사

말레이시아 국내 스테인리스 강판 생산자인 Bahru Stainless Sdn Bhd사의 제소에 따라 2017년 5월 15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동년 10월 12일, 한국 기업들은 모두 미소마진, 중국 14.64~23.95%, 대만 13.77~52.17%, 그리고 태국 24.88~111.61%로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2018년 2월 7일, 최종판정에서는 우리 기업 중 한 곳이 4.44%로 최종 결정되었고, 중국과 대만 기업들의 최종 덤핑마진율이 2%대로 하락하였다.

동 사례는 2015년 조사 개시 되었다가 산업피해 없음을 이유로 종결된 이력이 있다. 2017년 조사와 동일한 국내생산자가 제소하였고, 2015년 4월 28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동년 9월 22일 예비판정에서 산업피해가 없으므로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사대상국가는 대만, 핀란드, 프랑스, 홍콩,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그리고 베트남까지 총 9개국이었다. 그 중 대만, 중국, 한국에 태국을 추가하여 2017년 조사를 다시 개시한 것이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15년 9월 조사 중단 발표를 한 뒤, 불과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조장이 다시 제출된 사건이다. 제조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산업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던 사건을 재조사한다는 것은 조사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조장 접수 전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조사가 다시 개시되었고, 이번에는 산업피해가 존재한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조사가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조사대상 국가의 변동이다. 아래 조사대상 품목의 국가별 말레이시아 수입현황을 보면, 2013년 9백만 불에서 2016~2017년 7백만 불 수준으로 수입액이 안정화된 한국은 조사대상국가로 계속 지정한 데 반해, 한국과 비슷한 물량을 수입하는 일본은 대상에서 제외시켰음을 알 수 있다.

제조사인 Bahru Stainless Sdn Bhd사의 지분 중 67%는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Acerinox사가, 30%는 일본 기업인 Nisshin Steel, 그리고 나머지 3%는 Hanwa가 보유하고 있다. Nisshin Steel은 2009년 처음 지분 투자를 시작했는데, 2010년에 투자액을 늘린 뒤 현재 30%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위치에 있는 자는 국내산업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수 있으나, 30%와 같이 지배력이 없는 주주는 특수관계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산업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12~13년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급증한 해인데, 당시 제조자로 자주 등장한 Perusahaan Sadur Timah Malaysia사 역시 일본 JFE 그룹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사대상국으로 포함된 바 없었다. 수입규제 대응 시 국내외산업 자체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들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표 말레이시아 대상품목 수입 현황⁴

(단위: 천달러)

No.	수출국	'15년 조사대상	'17년 조사대상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 국	O	O	37,819	85,562	69,085	69,479	67,442
2	대 만	O	O	55,168	57,737	37,848	18,732	20,157
3	한 국	O	O	9,243	2,825	5,388	7,492	7,242
4	일 본	O	X	16,073	16,892	7,965	7,041	6,844
5	태 국	X	O	198	1,652	5,978	14,477	4,193
6	인도네시아	O	X	8,985	6,642	6,003	3,675	3,259
7	베 트 남	O	X	13,296	2,496	19	-	2,221
8	핀 란 드	O	X	17,555	4,715	4,799	8,665	545
9	싱 가 폴	X	X	797	1,133	1,188	1,425	479
10	독 일	X	X	935	713	2,233	3,523	360
전세계 합계				170,634	185,495	147,717	139,516	113,687

출처: Trademap

⁴ 기준 HS Code: 7219.33, 7209.34 (물량 및 금액 비중이 큰 대표 HS Code 2개를 선별하여 작성)

나)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① 쟁점사항: 수입규제의 남용

Megasteel사의 제소로 2015년 9월 10일 세이프가드가 조사 개시되었으나 2016년 1월 8일 예비판정에서 산업피해 없음으로 결정되면서 조사가 종결되었다. 이 사례는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2011년 Megasteel가 신청한 열연강판에 대한 말레이시아 최초 세이프가드 조사로 시작되었다. 열연강판은 철강 제품의 기본요소로 냉연강판, 도금강판, 파이프 등 하방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당시에도 재압연사들의 반발로 2011년 8월 22일 산업피해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2011년 세이프가드 조사와 2015년 조사 시 예비판정에서 산업피해 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 2011년 조사에서는 수입 증가가 있기는 하나 이것이 산업피해와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반면, 2015년 조사에서는 수입의 증가가 급격하고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2012.7월에는 Megasteel의 제소로 대만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으나, 제소를 철회함에 따라 '12.11월 조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Megasteel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 2014년 6월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4년 10월 16일 예비판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3.15~29.37%의 고율 덤핑마진이 결정되었는데, 2015년 2월 13일 최종판정에서는 수입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적다는 이유로 한국 전체가 최종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말레이시아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신청 개시가 증가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하방산업을 포함 경제 전체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입규제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기업들이 정부 및 협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조사당국을 설득한 것도 반덤핑 최종 조치에서 제외된 주요 요소로 분석된다. 2015년 11월 4일 공청회에 현지 공관에서 참석하였으며, 이를 뒤인 11월 6일에는 정부 명의로 서한을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공청회는 특히 조사당국의 의사결정자들을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 주장하지 못하는 전체 산업이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견을 개진해 줌으로써 기업의 주장을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